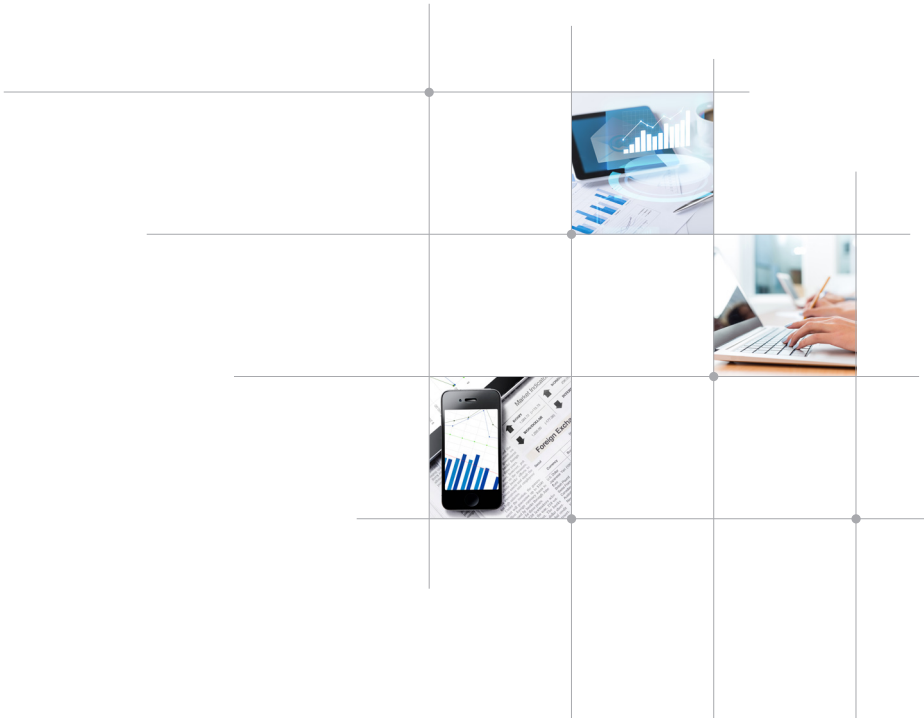




#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및 지원에 대한 연구

2023. 12.

김문정 · 정다운





#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및 지원에 대한 연구

2023. 12.

김문정 · 정다운



## 서 언

고용보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괄하여 노무제공자로 정의하고 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세법상 노무제공자와 유사한 개념이다. 취업 이후 정년이 보장되는 평생일자리 감소, 온디맨드(on-demand) 플랫폼 경제 활성화 등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전보다 흔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인적용역 사업자를 위한 각종 사회안전망 및 재정지원이 확대된 바 있다. 2021년 7월에는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인적용역 사업자 대상의 고용보험이 도입되었고, 관련 산재보험의 제도적·실질적 적용 범위도 크게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용역 사업자와 관련된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전통적인 전일제·상용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과세 및 지원제도에 도전과제를 안긴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해보았다. 하지만 검토하고자 하는 제도와 정책이 광범위하다 보니 여전히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주제가 많으며 여전히 미결인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책과 제도를 포괄적으로 검토한 본 보고서의 내용이 정책 실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게 저자들은 깊이 감사하고 있다. 특히 저자들은 본 과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의미 있는 자문의견을 주셨던 전병목 박사, 최인혁 박사, 안중석 가운조세정책연구소 소장,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이근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센터장 등 내·외부 자문위원, 그리고 자료 수집 및 정리 요청을 훌륭하게 소화해준 이재국 연구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본고에서 발견되는 모든 오류는 전적으로 저자들에게 있음을 밝힌다.

2023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재 진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 도입

고용보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괄하여 노무제공자로 정의하고 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세법상 노무제공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근로자와 자영자 중간에 위치한 취업형태에 놓여 있다. 취업 이후 정년이 보장되는 평생일자리 감소, 온디맨드(on-demand) 플랫폼 경제 활성화 등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전보다 흔해졌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전통적인 전일제·상용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과세 및 지원제도에 도전과제를 안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인적용역 사업자를 위한 각종 사회안전망 및 재정지원이 확대된 바 있다.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과약 인프라를 활용하여 2021년 7월에는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인적용역 사업자 대상의 고용보험(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도입되었고, 관련 산재보험의 제도적·실질적 적용 범위도 크게 확대된 바 있다. 이러한 제도와 정책의 변화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공식적인 과세 및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있음(혹은 포함되는 과정에 있음)을 함의한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적용역 사업자와 관련된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 2. 제도와 정책의 검토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과세제도의 분석대상은 소득세와 4대 보험이며, 지원제도의 대상에는 고용보험 급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장려세제 등을 고려하였다.

본고에서 연구자가 검토할 때 분석의 관건은 인적용역 사업자 관점에서 고용형태 다변화를 어떻게 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고용형태 다변화)과 인적용역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적용 및 부과 측면에 문제가 존재하는지(근로자와의 적용-부과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었다. 어떠한 제도가 고용형태 다변화를 포용하지 못하면, 고용형태별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검토결과, 소득세 제도의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관련된 매출을 과세 당국이 적절히 포착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경비율 제도 및 관련 관행에서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제도는 다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소득파악이 무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소득파악은 사실상 매출 파악이며, 실질적인 비용(경비) 측면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보다 보편화된 현 시점에서, 인적용역 사업매출에 대한 관대한 경비율이 적용되면 근로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회보험 제도의 경우, 다양한 취업형태를 포용하여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 유연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그러한 소득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높은 수준의 소득금액인 경우에만 반영하고 있다.

지원제도의 경우, 취약한 인적용역 사업자에의 포착 수준 및 제도 간 관련 기준의 정합성 측면을 검토하였다.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의 경우, 인적용역 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가구단위로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에서는 지원대상 인적용역 사업자를 개인단위에서 판별한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관련 재산 및 소득의 기준이 서로 상이한데, 이와 관련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한편 본 연구는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및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대상 고

용보험의 도입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정태적 이중차이법을 적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 효과가 존재하지만, 동태적 이중차이법을 적용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정태적 이중차이법 분석결과에 따르면, 실시간 소득과약 인프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대상 고용보험으로 인한 소득신고 및 고용보험 가입에의 순응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 3. 향후 정책방향

향후 정책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세당국은 인적용역 사업 소득자 관련 경비율 수준을 현실화하고, 인적용역형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업종코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보험공단의 보험료 적용·부과 행정은 과세당국의 과세자료(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기반하는 만큼, 과세당국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비율 조정이 갖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업종코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과세당국 자체적으로 업종코드를 판별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자 중에서도 인적용역 사업자 성격이 강한 경우를 판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경우, 개인의 취업소득의 합산소득에 기반하여 사회보험료가 부과·징수되면 고용형태 다변화를 가장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자격기준을 없애는 것이 어렵다면,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보험료 부과 대상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보험에서는 별도의 유형(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대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보험제도 중 가장 유연한 편이다. 그러나 상용직 일자리에의 복수취업이 여전히 금지되어 있고,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인적용역 사업업종이 일부 업종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미 월별 기준의 취업소득 과세자료를 과세당국으로부터 협조받고 있으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고용보험 적용 업종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경우, 현행 부과체계 개편의 방향대로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하고, 자산기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제도의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를 배타적인 고용형태로 간주하기 보다는, 다른 유형의 소득(특히 근로소득) 동반 발생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개인의 합산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과세자료를 통하여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발생이 다른 소득과 결부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즉 부수입의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인적용역 사업자'라는 고용형태를 배타적으로 간주하고 과세 및 지원제도를 설계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목 차

I. 서론 .....	17
1. 도입 .....	17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19
3. 경비율 제도의 중요성 .....	21
4. 주요 용어 .....	24
5. 본 보고서의 구성 및 연계성 .....	26
II. 최근 취업형태 특징 및 해외 사례 .....	28
1. 최근 취업형태(고용형태 다변화) .....	28
2. 해외 사례 .....	40
III. 인적용역 사업자 소득세 제도 .....	45
1. 제도 개관 .....	45
2. 경비율 제도 소개 및 검토 .....	59
IV.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사회보험 제도 .....	91
1. 고용보험 .....	91
2. 산재보험 .....	98
3. 국민연금 .....	102
4. 건강보험 .....	103
V. 인적용역 사업자 대상 조세·재정 지원 .....	115
1. 국민취업지원제도 .....	115
2. 직업훈련 지원제도 .....	116

3.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	118
4. 근로장려세제 .....	120
5. 소결 .....	125
<b>VI. 인적용역 사업자 소득파악 인프라 .....</b>	<b>129</b>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피보험자 수 통계를 활용한 효과분석 .....	129
<b>VII. 쟁점사항별 정책 함의 .....</b>	<b>155</b>
1. 소득세 과세 및 사회보험료 부과 측면 검토 .....	155
2. 급여 및 지원 제도 검토 .....	158
3. 소득파악 인프라 검토 .....	160
<b>VIII. 결론 .....</b>	<b>162</b>
<b>참고문헌 .....</b>	<b>165</b>
<b>부록 .....</b>	<b>172</b>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기존 연구 표 인용 .....	172
2. 경제활동인구조사 미시자료에 기반한 정량분석 .....	175
3. 노무제공자 경비 설문조사 .....	183

---

## 표목차

〈표 Ⅰ-1〉 본 보고서에서의 인적용역 사업자 유사 용어의 활용	25
〈표 Ⅱ-1〉 복수취업 현황(2022년 하반기 자체 설문조사 결과): 가구원 유형과 연령대별	29
〈표 Ⅱ-2〉 복수취업 현황(2022년 하반기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교육수준과 연령대별	31
〈표 Ⅱ-3〉 소득유형 발생조합의 연도별 추이	35
〈표 Ⅱ-4〉 소득유형 발생조합의 연도별 추이: 소득분위 1분위와 5분위	37
〈표 Ⅱ-5〉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의무부담 비용 격차	41
〈표 Ⅱ-6〉 인적용역 사업자 대상 취업지원 관련 해외 사례	43
〈표 Ⅲ-1〉 인적용역 사업자 유형 구분과 정의	46
〈표 Ⅲ-2〉 인적용역 사업소득 업종코드	48
〈표 Ⅲ-3〉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경비율 적용기준	57
〈표 Ⅲ-4〉 추계신고에 따른 가산세	61
〈표 Ⅲ-5〉 가장의무 및 경비율 기준 수입금액	61
〈표 Ⅲ-6〉 인적용역 사업자 (일부) 공제율(고용보험) 및 경비율	63
〈표 Ⅲ-7〉 인적용역 사업자 (일부) 연도별 변화: 기준경비율	64
〈표 Ⅲ-8〉 인적용역 사업자 (일부) 연도별 변화: 단순경비율(기본율)	64
〈표 Ⅲ-9〉 인적용역 사업자 신설 업종코드	65
〈표 Ⅲ-10〉 인적용역 사업자 연간 지급금액 및 소득세(원천징수) 금액	68
〈표 Ⅲ-11〉 인적용역 사업자의 1인당 연간 지급금액(2016~2021년)의 변동계수	70
〈표 Ⅲ-12〉 인적용역 사업자의 기준경비율(2018~2022년)의 변동계수	71
〈표 Ⅲ-13〉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2018~2022년)의 변동계수	71
〈표 Ⅲ-14〉 인적용역 사업자 수입금액 및 기준경비율	73
〈표 Ⅲ-15〉 근로소득공제율	75

〈표 III-16〉 총급여액, 소득공제금액, 공제율(2021년) .....	76
〈표 III-17〉 근로소득자의 연도별 총급여액과 소득공제율 .....	77
〈표 III-18〉 인적용역 사업자(일부) 단순경비율의 연도별 변화 .....	79
〈표 III-19〉 근로·자녀 장려금 적용 업종별 조정률 및 평균 단순경비율 .....	81
〈표 III-20〉 근로·자녀 장려금 적용 업종별 조정률 및 일부 인적용역 사업자 단순경비율 .....	81
〈표 III-21〉 업종별 장부기장 및 경비율 신고자(2021년 귀속) .....	83
〈표 III-22〉 설문조사: 조사 항목 .....	85
〈표 III-23〉 설문조사 결과: 경비율 인지 여부의 기초 통계 .....	86
〈표 III-24〉 설문조사 결과: 적정 경비율 수준 .....	87
〈표 III-25〉 설문조사 결과: 경비율 .....	88
〈표 IV-1〉 노무제공자 분류 .....	93
〈표 IV-2〉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과정 .....	93
〈표 IV-3〉 구직급여 기준 비교 .....	95
〈표 IV-4〉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지급기간 .....	96
〈표 IV-5〉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비교 .....	96
〈표 IV-6〉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노무제공자 필요경비 공제율 .....	100
〈표 IV-7〉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 기준보수 및 평균보수 고시 ..	101
〈표 IV-8〉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 .....	101
〈표 IV-9〉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업종별 산재보험, 고용보험,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적용시점 종합 .....	104
〈표 IV-10〉 고용형태별 명목 사회보험료 부담수준 비교(예시 1/재산 1억원) .....	106
〈표 IV-11〉 고용형태별 명목 사회보험료 부담수준 비교(예시 2/재산 1억원) .....	108
〈표 IV-12〉 고용형태별 명목 사회보험료 부담수준 비교(예시 3/재산 5억원) .....	110
〈표 IV-13〉 고용형태별 명목 사회보험료 부담수준 비교(예시 4/재산 15억원) ..	112
〈표 V-1〉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II 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116
〈표 V-2〉 근로장려세제의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 .....	122

---

〈표 V-3〉 자영업자 유형별 근로장려금의 신청 현황 .....	125
〈표 V-4〉 인적용역 사업자 재정지원 .....	127
〈표 VI-1〉 유형별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의 내용 .....	131
〈표 VI-2〉 고용보험 당연적용 단순노무제공자 .....	132
〈표 VI-3〉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의 기대 효과 .....	139
〈표 VI-4〉 실시간 소득파악 도입의 효과 .....	148
〈표 VI-5〉 실시간 소득파악 도입의 효과(Static) .....	149
〈표 VI-6〉 동태적 이중차분법 결과 .....	152
〈표 VII-1〉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과세 및 부과 현황 .....	156
〈표 VII-2〉 소득세 과세 및 사회보험료 부과 측면 정책 함의 .....	158
〈표 VII-3〉 급여 및 지원 측면 정책 함의 .....	159
〈표 VII-4〉 소득파악 인프라 관련 정책 방향 .....	161

## 그림목차

[그림 Ⅰ-1] 과세당국의 경비인정 제도와 사업자의 과세부담 간의 관계	22
[그림 Ⅰ-2] 과세당국 경비를 제도의 사회보험 부과수준에의 영향	23
[그림 Ⅱ-1] 2013~2022년 기간 1~3분기 평균 전체 부업자 및 가구주 부업자 수 추이(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29
[그림 Ⅱ-2] 단일소득유형 발생확률의 변화	32
[그림 Ⅱ-3] 거주자의 사업소득 연도별 통계: 인원, 지급액, 평균 지급액	39
[그림 Ⅲ-1] 인적용역 사업소득 간편장부 서식 예시	56
[그림 Ⅲ-2] 인적용역 사업자 장부기장 및 경비율 기준	60
[그림 Ⅲ-3] 1인당 연간 지급금액,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변동계수	72
[그림 Ⅲ-4] 단순경비율 신고비중 및 기준별 차이	84
[그림 Ⅳ-1] 고용형태 및 자격유형에 따른 사회보험 부담수준 비교	114
[그림 Ⅴ-1] 가구유형 및 총급여액별 근로장려금	121
[그림 Ⅴ-2] 90% 업종조정률 구간(인적용역 사업자 포함) 근로장려금의 신청 현황	123
[그림 Ⅴ-3] 재정 및 조세지출 지원제도의 자격기준의 도식화	127
[그림 Ⅵ-1]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월별 현황	135
[그림 Ⅵ-2]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연도별 산재보험 적용 비율	137
[그림 Ⅵ-3] 인적용역 사업자 직종별 실시간 소득파악 및 고용보험 적용 시점의 변이	141
[그림 Ⅵ-4] 인적용역 사업자 직종 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월별 추이 비교 1	144
[그림 Ⅵ-5] 인적용역 사업자 직종 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월별 추이 비교 2	145

---

[그림 VI-6] 동태적 이중차분법 적용 .....	150
[그림 VI-7] 실시간 소득파악 적용의 동태적 효과 .....	153



---

# I. 서론

---

## 1. 도입

인적용역 사업자란 특고(특수형태종사자)나 플랫폼노동자 등의 노무제공자와 상당히 유사한 세법상의 용어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특고나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고 사회안전망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법령이나 제도상의 혁신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사료된다. 이는 사회보험 자체가 ‘사업주’를 특정하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산재보험 외에는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 자체도 일부 특고 업종에 국한된 것이었고, 이조차도 특고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가능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특고 및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마침 특고 및 예술인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를 2017년 당시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포함시킨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특고 및 플랫폼노동자들이 ‘특고 고용보험’이라는 별도의 고용안전망에 포함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및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함의하는 바가 크다. 첫째, 특고 및 예술인의 경우 적어도 고용보험 측면에서의 ‘근로자성’을 사실상 인정받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

험은 일부 근로자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동일 업종 내에서 다양한 사업주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특고 및 예술인과 관련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각각 50%씩 부담하게 된 것은 상당한 수준의 노·사·정 간 사회적 협의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적용 업종 기준 특고 및 예술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인정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둘째, 특고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관리당국이 적시의 소득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기에 도입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특고 및 예술인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실직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며, 실직 개념이 명시된다 하더라도 실직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지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사업장 및 근로자의 신고에 기반하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특고의 경우 특고의 ‘소득의 변화’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판가름하게 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국세청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지원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이로 인해 특고의 세법상 소득유형인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관련된 신원정보를 포함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연간에서 매월로 단축되었다. 월별로 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그 이전에 시도된 적이 없었던 과업이었다는 점에서, 또한 이러한 주기 단축은 2024년 1월부터 인적용역형 기타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의 경우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셋째,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은 (적어도 적용대상 업종에 대하여) 과세당국 및 고용보험 당국이 특고 및 예술인들의 소득을 공신력 있는 자료로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오래 짐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미 원천징수의무 이행의 과정을 통하여, 소득(수입)지급자에 의하여 특고 및 예술인의 소득이 상당부분 이미 과세당국에 보고된 바 있고, 이러한 사항을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을 계기로 확인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전 국민 고용보험 및 실시간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은 특고 및 예술인의 소득을 조세 및 사회보험 당국이 공신력 있게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큰 의미가 있다.

##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본고에서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제도권으로 공식적으로 편입(혹은 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소득세, 사회보험, 재정지원의 개선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와 다른 본 연구만의 차별성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전 국민 고용보험 및 실시간 소득과약 인프라'의 구축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동안 이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를 입수하거나 구축하기 어려워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물론,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하여 관련 성과가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을 통한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플랫폼 업종 적용 시행 100일 만에 25만명이 가입하였고(고용노동부 2022년 4월 15일 보도자료),<sup>1)</sup> 인적용역 사업자의 고용보험이 실시된 1년 동안 인적용역 사업자 67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성과가 보고되었다(국세청 2022년 9월 20일 보도자료). 행정자료에 의한 강제적 신규가입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 자체도 전 국민 고용보험 및 실시간 소득과약 인프라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의 효과는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의 신고 행태, 인적용역 사업자라고 자발적으로 판단하는 집단에서의 고용보험 가입확률,<sup>2)</sup>

1) 국세청, 「「실시간 소득과약」(RTI) 시행 1년, 복지세정의 한 축으로」, 보도자료, 2022. 9. 2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01&bbsId=1028>, 검색일자: 2023. 10. 24.; 고용노동부,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 '25만명' 가입」, 보도자료, 2022. 4. 15., [https://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3432](https://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3432), 검색일자: 2023. 10. 24.

2) 현재는 제도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업종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업종 중 일부뿐이고, 적용 업종에서 해당 종사자를 100% 포착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광범위한 업종을 커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조사자료를 통해서 인적용역 사

중사상 지위의 이행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 측면의 고용보험 확률 변화도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를 통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신고주기가 단축되고, 국세청에 신고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되는 근로내역확인서의 교차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일용근로직의 실질적 사각지대 역시 축소되었다. 인적용역 사업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모두 일반적으로 취약한 취업집단으로 간주되고 있고, 노동공급자 관점에서 이러한 두 가지 취업형태 간의 노동이행이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부분 분석 범위에 같이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중심으로 과세제도와 사회보험을 동시에, 그리고 미시자료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연구로 김문정·안종석·정다운(2022), 이병희 외(2023), 심혜정(2020), 강신혁 외(2021)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김문정·안종석·정다운(2022)은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세제도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와 인적용역 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 연말정산 사업자와 일반 인적용역 사업자 등 업종별 과세 형평성 등을 검토하였다. 현황 파악과 정책제안을 위하여 김문정·안종석·정다운(2022)에서는 해외사례조사, 제도 시뮬레이션, 과세자료에 기반한 정량분석 등의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이때, 정량분석 수행 당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시행 이후의 시점을 반영할 수 있는 과세자료는 활용하기 어려웠고,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세제도만 고려하였다. 한편, 이병희 외(2023)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과제로서 소득기반 사회보험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조세행정인프라, 사회보험료 지원 방향 등의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병희 외(2023)는 인적용역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용직·전일제 임금근로자를 모두 아우르는 사회보험 제도의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비단 인적용역 사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으며, 과세제도보다는 사회보험에

---

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3)</sup> 마지막으로 심혜정(2020)과 강신혁 외(2021)는 임금 근로자와 인적용역 사업자 간의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을 근로자와 사업자, 정부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 하지만, 2021년 이후의 전 국민 고용보험과 실시간 소득과약 시행으로 인하여 크게 변화한 인적용역 사업자를 둘러싼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형태별 평균 통계량을 중심으로 분석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인적용역 사업자 간 업종별 이질성, 개인과 가구의 이질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세와 사회보험의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먼저 미시자료를 통해 인적용역 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실증적으로 관찰되는지 검토한다. 미시자료를 이용한 제도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여, 사회보험 제도와 소득세 제도의 변화에 따른 세부담 등을 검토한다.<sup>4)</sup>

### 3. 경비율 제도의 중요성

특히 본 연구는 제도 측면에서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비율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량분석상에서는 실시간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 및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의 효과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비율 제도가 중요한 정책 함의를 갖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그림 I-1]에서 과세당국의 경비인정제도가 사업자의 과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도식화하였다. 해당 그림의 첫 번째 그림은 실제 사업자의 실제 매출(주황색+파란색)과 경비 수준

3) 이병희 외(2023)에 수록된 김문정·고창수의 「소득기반 사회보험의 인프라 구축」 챕터에서는 소득세 제도와 조세행정 차원에서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이 역시 인적용역 사업자에 국한된 논의는 아니었다.

4) 이러한 시뮬레이션 모형은 김문정·최인혁(2022)에서도 유사하게 구축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 분석의 초점은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이 파악되었을 때,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와 정부 지원금의 변화방향에 대한 것이었으며, 제도상 쟁점사항을 검토한 것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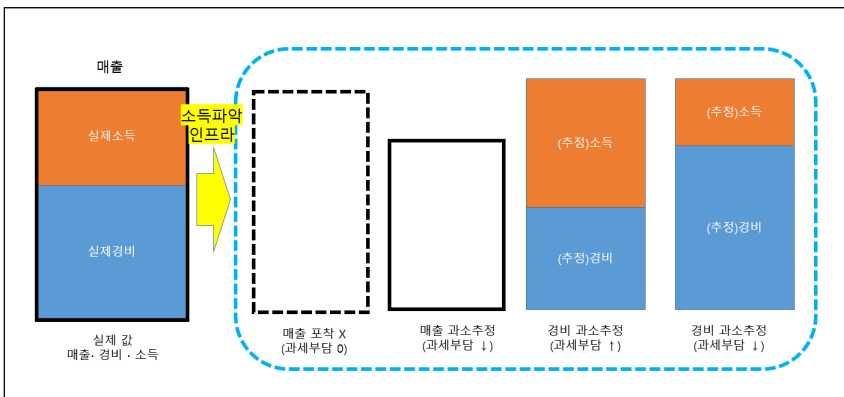
(파란색)을 보여준다고 가정한다.

먼저 사업자의 매출을 고려하면, 과세당국이 입수하는 소득파악 인프라 수준에 따라 매출규모가 과대추정 혹은 과소추정될 수 있다. 사업자의 매출 규모가 아예 포착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자의 소득세부담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사업소득이 현금거래로만 이루어져 있고, 관련한 거래액이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의 매출규모가 과세당국에 의해 제대로 포착된다고 하더라도, 과세당국은 경비수준을 추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림 I-1]에서 마지막 두 개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실제 경비보다 경비수준이 과소추정되거나, 실제 경비보다 경비수준이 과대추정된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사업자의 '경비'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은 곧, 사업자의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비수준의 과소추정'은 '소득수준의 과대추정'을, '경비수준의 과대추정'은 '소득수준의 과소추정'을 각각 의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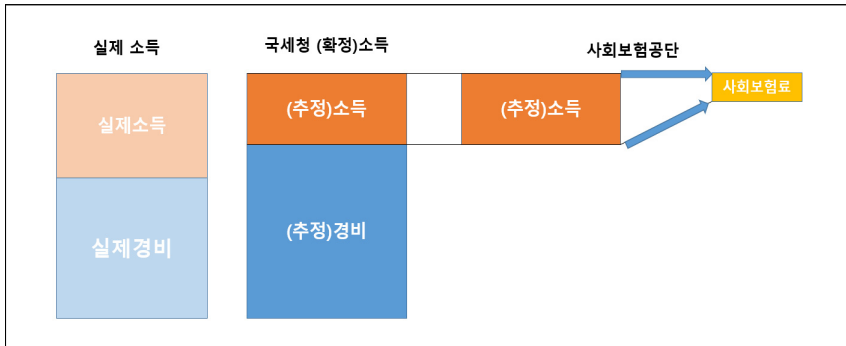
[그림 I-2]는 과세당국의 경비율 제도의 사회보험 영향을 도식화한 것이다. 사업자에 매출, 경비 규모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일정 수준의 금액을 각각 확정하게 되면, 이러한 정보가 사회보험공단에 전달된다. 사회보험료 부

[그림 I-1] 과세당국의 경비인정 제도와 사업자의 과세부담 간의 관계



과 및 징수과정에 해당 정보가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이러한 사업자의 ‘추정된’ 소득수준에 대하여 사회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과세당국이 사업자의 경비인정제도를 관대하게 운영하면, 소득세의 수입금액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사회보험료 수입금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와 같은 경비인정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경비인정제도가 관대할수록 근로소득자와의 소득세나 사회보험료(특히 건강보험료)의 과세 및 사회보험료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림 I-2] 과세당국 경비율 제도의 사회보험 부과수준에의 영향



자료: 저자 작성

단, 두 가지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이러한 경비율 제도의 사회보험 제도상의 함의가 비단 인적용역 사업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비율 제도는 ‘사업자’ 일반에게 적용되며, 인적용역 사업자는 그중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앞서 [그림 I-1]~[그림 I-2]에서 도식화하였던 경비율 제도의 정책 함의는 일반적인 사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겠다. 둘째, [그림 I-2]에서는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보험공단에서 과세당국이 확인한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활용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예외 사례로서 고용 및 산재보험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고용 및 산재보험에서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매출’(수입)자료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 제도상으로 규정한 별도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요컨대,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인적용역 사업자와 관련한 과세제도의 중요한 쟁점으로 경비율 제도를 고려하고자 한다.

#### 4. 주요 용어

본 연구에서 ‘과세제도와 지원’이라고 할 때, ‘과세’란 소득세와 준조세 역할을 하는 사회보험료를 모두 의미함을 밝힌다. ‘지원’제도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조세지출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같은 재정지원을 포괄한다.

또한, 인적용역 사업자와 관련된 용어도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 ‘인적용역 사업자’라고 지칭하되, 특정 제도를 설명할 때에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 등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인적용역 사업자와 관련된 고용보험을 도입할 때에는 ‘특고 고용보험’이라고 명명하였다가, 이후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저자가 이해하기로는 ‘노무제공자’란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고’는 보통 보험설계사, (요구르트 등) 음료배달원, 학습지도사 등 특고-사업자 간의 종속성이 대체로 높은 취업형태를, 프리랜서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등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자간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취업형태를 일컫는 용어로 각각 이해된다. ‘플랫폼 노동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취업형태를 일컫는 것으로 이해된다. 깃 경제(Gig economy)의 온디맨드(on-demand) 성격의 노무를 제공하는 취업형태를 ‘깃 노동자’라고 말하는데, 플랫폼 노동자가 깃 노동자와 가장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된다.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노무를 제공하는 이와 플랫폼 간의 종속성은 약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플랫폼상의 알고리즘에 의하여 종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sup>5), 6)</sup> 노무제공자는 이러한 다양한 개념을 모두 포

5) 『경향신문』, 「플랫폼 알고리즘은 알고 계신대, 누가 '말 잘 듣는' 라이더인지...」,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1021511001#c2b>, 검색일자: 2023. 11. 15.

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무제공자’와 ‘인적용역 사업자’의 개념은 상당히 유사하지만, 본고에서는 소득세법 및 과세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할 것이므로 ‘노무제공자’라는 용어 대신 ‘인적용역 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이지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업종을 고려할 수 있고,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이지만,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가 아닌 업종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현실에서는 고용보험이나 세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업종에서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표 I-1〉 본 보고서에서의 인적용역 사업자 유사 용어의 활용

구분	활용 시점
‘특고’, ‘노무제공자’	- 관련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소개할 때 해당 용어를 사용함 -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정의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는 특정 직종에만 국한하고 있음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서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의로 소개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노무제공자 혹은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부 유형을 논의할 때 언급하고 있음
‘인적용역 사업소득’, ‘인적용역 사업자’	- 세법(「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정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미함 -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 중의 하나로 ‘인적용역’을 소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인적용역을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소득세법」 제127조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이 경우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자료: 저자 작성

6) “플랫폼 노동은 이른바 알고리즘(algorithm)에 의한 경영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외견상 비교적 자유로워 보이지만 경제적 종속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종속노동으로 볼 수 있다.”(이다혜, 2020)

보고에서의 ‘인적용역 사업자’란 행정상의 업종의 구분 없이,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물리적 장소를 임대하지 않으면서 타인 혹은 플랫폼 등과 계약을 맺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는 의미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

## 5. 본 보고서의 구성 및 연계성

제Ⅱ장에서는 취업형태 특징 및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장의 첫 번째에 고용이나 취업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조사자료 및 행정자료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는 이유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노동시장에서의 ‘주요 수입원’이라기보다는 ‘부수입원’의 기능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먼저 복수의 취업형태 혹은 취업소득원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을 같이 취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에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이전보다 보편화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발생한 인원과 관련 금액이 시간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실제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발생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Ⅱ장의 두 번째 내용인 해외 사례에서는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해 주요 국가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각 노동자(gig worker),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한 것이 아니며, 해외에서도 이에 대한 세법상 정의 및 소득과약 방안이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

제Ⅲ장에서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와 관련된 소득세 제도를 검토한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정의를 먼저 제시하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업종코드로 포착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 및 소득금액 결정 방식을 소개한다. 소득금액 결정 방식이 특례업종의 경우 나머지 업종에 비해 다를 수 있음을 추가로 설명한다.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그림 I-1), [그림 I-2 참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소득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제도는 경비율 제도이다. 이에 제Ⅲ장 제2절에서는 경비율 제도를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비율 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율이나 근로·자녀 장려금의 업종별 조정률 등을 검토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사회보험료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노무제공자와 관련된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해당 제도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별도로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적용역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사회보험료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했다.

제Ⅴ장에서는 재정지원과 조세지출지원제도를 고려하고 있다. 인적용역 사업자가 적용되는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하였고, 자격대상 등을 표로 정리하여 정책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제Ⅵ장에서는 소득과약 인프라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도입되었으므로 관련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은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과세당국에 월별로 수입금액을 보고하는 조치가 시행된 것과 같이 맞물려 운영되었다. 요컨대, 과세당국에의 수입금액 보고 및 고용보험 사회보험료 부담 등을 꺼리는 사업자가 많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고용보험 자격자 수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 본 실시간 소득과약 인프라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compliance(순응성)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Ⅶ에서는 정책 함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세 제도, 사회보험 제도, 소득과약 인프라 측면으로 쟁점사항을 구분하여 정책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

## II. 최근 취업형태 특징 및 해외 사례

---

### 1. 최근 취업형태(고용형태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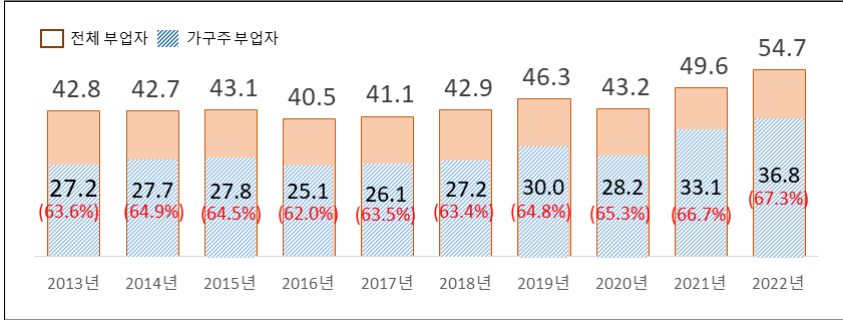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취업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모두가 체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플랫폼을 통한 소득활동이 이전보다 더 보편화되고,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일도 흔해졌다. 본 장에서는 먼저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적 증거를 수집하고자 한다.

#### 가. 복수일자리에 종사할 확률

먼저 부업에 종사하는 경제활동인구의 규모가 늘어났다. 부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그림 II-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그림에서 전체 그래프는 총 부업자를 의미하고,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그중에서도 가구주에 해당하는 부업자를 의미한다. 그래프의 붉은 표시 숫자에서 알 수 있듯이, 가구주 부업자의 비중이 2018년 이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단, 경제활동인구에서 파악된 부업 규모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상당히 적은 숫자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는 2013년 2,400만명, 2022년 기준 2,800만명이기 때문에, 부업비율은 각각 1.78~1.95%에 해당한다.

[그림 II-1] 2013~2022년 기간 1~3분기 평균 전체 부업자 및 가구주 부업자 수 추이(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만명)



주: 괄호 안은 전체 부업자 중 가구주 부업자 비율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업 근로자 추이 및 특징 분석」, 보도자료, 2022. 12. 20., [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4809&category=ST](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4809&category=ST), 검색일자: 2023. 10. 13.

<표 II-1> 복수취업 현황(2022년 하반기 자체 설문조사 결과):  
가구원 유형과 연령대별

(단위: 명, %)

연령 유형	가구원 유형	표본	일자리 개수=1		일자리 개수=2		일자리 개수=3		복수 일자리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18~29	가구주	401	356	88.78	36	8.98	9	2.24	11.22
30~39	가구주	535	495	92.52	34	6.36	6	1.12	7.48
40~49	가구주	561	521	92.87	37	6.60	3	0.53	7.13
50~59	가구주	597	554	92.80	39	6.53	4	0.67	7.20
60~64	가구주	245	217	88.57	25	10.20	3	1.22	11.43
18~29	배우자	41	39	95.12	2	4.88	0	0.00	4.88
30~39	배우자	166	150	90.36	15	9.04	1	0.60	9.64
40~49	배우자	258	238	92.25	19	7.36	1	0.39	7.75
50~59	배우자	323	295	91.33	26	8.05	2	0.62	8.67
60~64	배우자	104	99	95.19	4	3.85	1	0.96	4.81
18~29	미혼자녀	269	244	90.71	23	8.55	2	0.74	9.29
전체		3,500	3,208	91.66	260	7.43	32	0.91	8.34

주: 단독, 가구주+배우자 2인 가구, 가구주+배우자+30세 미만 미혼 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3,5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에 조사함. 2022년 8월 소득과 관련된 중사상 지위를 최대 5가지를 제시하도록 한 결과, 최대 3개의 일자리가 보고되었음

자료: 김문정·최인혁(2022)에서 조사되었던 비정형 취업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은 국가 통계와 더불어, 기관 자체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할 수도 있다. 최근의 본원 자체 설문조사(김문정·최인혁, 2022)에서는 2022년 8월 한 달 소득과 관련한 일자리를 3,500명 규모의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바 있다. 관련 있는 일자리를 최대 5개까지 응답할 수 있었는데, 최대 3개 일자리를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본 설문조사 문항에서 ‘일자리’는 ‘종사상 지위’ 개념으로 접근하였고, 구체적으로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 인적용역 사업소득<sup>7)</sup> 등이 제시되었다.<sup>8)</sup>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애초에 응답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표 II-1〉에서는 2022년 8월 소득과 관련된 응답자가 종사한 일자리 개수의 분포를 가구원 유형과 연령대별로 보여주고 있다. 가구주,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자녀 유형만 존재한 것은, 설문조사 응답대상을 ① 1인 독립가구, ② 가구주와 배우자, ③ 가구주,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미혼자녀 중에서는 18~29세만 설문대상임).

〈표 II-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복수일자리에 종사할 확률은 표본 기준 8.34%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된 수준(1.78~1.95%)의 4배 이상으로 나타난다. 가구주의 경우, 단일 일자리 확률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역U자형을 보이고, 배우자의 경우는 U자형을 보이는 등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8~29세 미혼자녀의 경우, 복수일자리 비중은 9.29%로 전체 평균보다는 높지만 18~29세나 60~64세 가구주(11.22~11.43%)의 비중보다는 낮게 나타난다.

〈표 II-2〉에서는 가구원 유형과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복수일자리 비중을 보여준다. 먼저 가구주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복수 일자리확률이 높아진다. 고졸 이하 가구주의 경우 해당 값이 11.63%인데, 4년제 이상 가구주(7.91%)에 비해 3.72%p 높다. 반면, 배우자의 경우는 전문대 졸업자의 복수일자리 비중(5.73%)이 고졸 이하(7.56%)나 4년제 대학 이상(8.90%)보다

7) 실제 설문문항에서는 ‘인적용역 사업자’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라는 보기 문항을 사용하였다.

8) ‘기타’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기재하게끔 하였으나, 실제로 주관식 응답을 한 경우는 없었다.

낮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18~29세 미혼 자녀의 경우는 배우자 가구유형과 다르게, 전문대 졸업자의 복수일자리 비중(10.26%)이 고졸 이하(4.76%)나 4년제 대학 이상(9.57%)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부업에 종사할 확률 혹은 복수일자리를 갖고 있을 확률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고졸 이하 가구의 경우, 괜찮은 보수를 지급하는 단일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동일한 연령대라 하더라도 가구주가 미혼 자녀 대비 복수일자리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1인 가구 혹은 2인 이상의 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감 때문일 수 있다. 한편, 미혼 자녀의 경우, 학업이나 훈련 중인 경우,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졸

〈표 II-2〉 복수취업 현황(2022년 하반기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교육수준과 연령대별

(단위: 명, %)

교육수준	가구원 유형	표본	일자리 개수=1		일자리 개수=2		일자리 개수=3		복수 일자리 비중(%)
			비중 (%)	비중 (%)	비중 (%)	비중 (%)			
고졸 이하	가구주	258	228	88.37	26	10.08	4	1.55	11.63
전문대학	가구주	424	389	91.75	28	6.60	7	1.65	8.25
4년제 이상	가구주	1,657	1,526	92.09	117	7.06	14	0.84	7.91
고졸 이하	배우자	172	159	92.44	12	6.98	1	0.58	7.56
전문대학	배우자	192	181	94.27	10	5.21	1	0.52	5.73
4년제 이상	배우자	528	481	91.10	44	8.33	3	0.57	8.90
고졸 이하	미혼 자녀	21	20	95.24	1	4.76	0	0.00	4.76
전문대학	미혼 자녀	39	35	89.74	4	10.26	0	0.00	10.26
4년제 이상	미혼 자녀	209	189	90.43	18	8.61	2	0.96	9.57
전체		3,500	3,208	91.66	260	7.43	32	0.91	8.34

주: 단독, 가구주+배우자 2인가구, 가구주+배우자+30세 미만 미혼 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3,5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에 조사함. 2022년 8월 소득과 관련된 종사상 지위를 최대 5가지를 제시하도록 한 결과, 최대 3개의 일자리가 보고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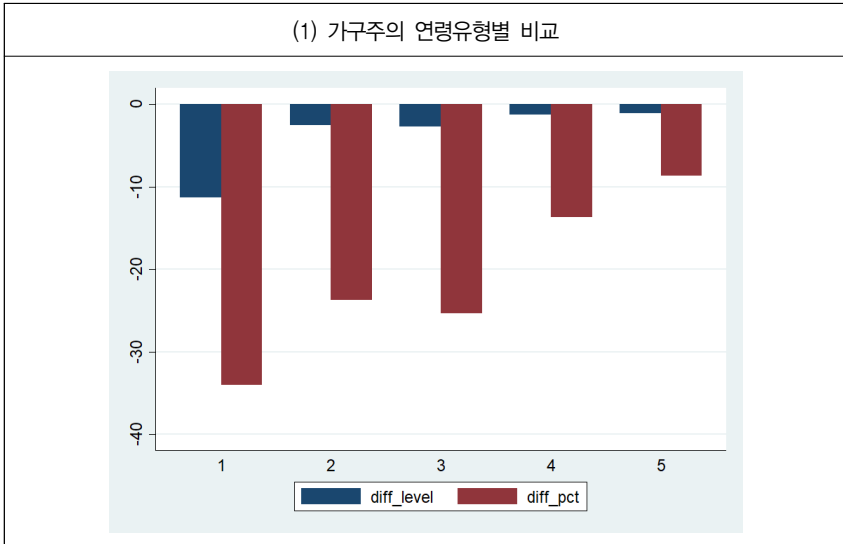
자료: 김문정·최인혁(2022)에서 조사되었던 비정형 취업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하 미혼자녀의 복수일자리 비중은 4.96%으로 상당히 낮은데, 이들 중에서는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 편입학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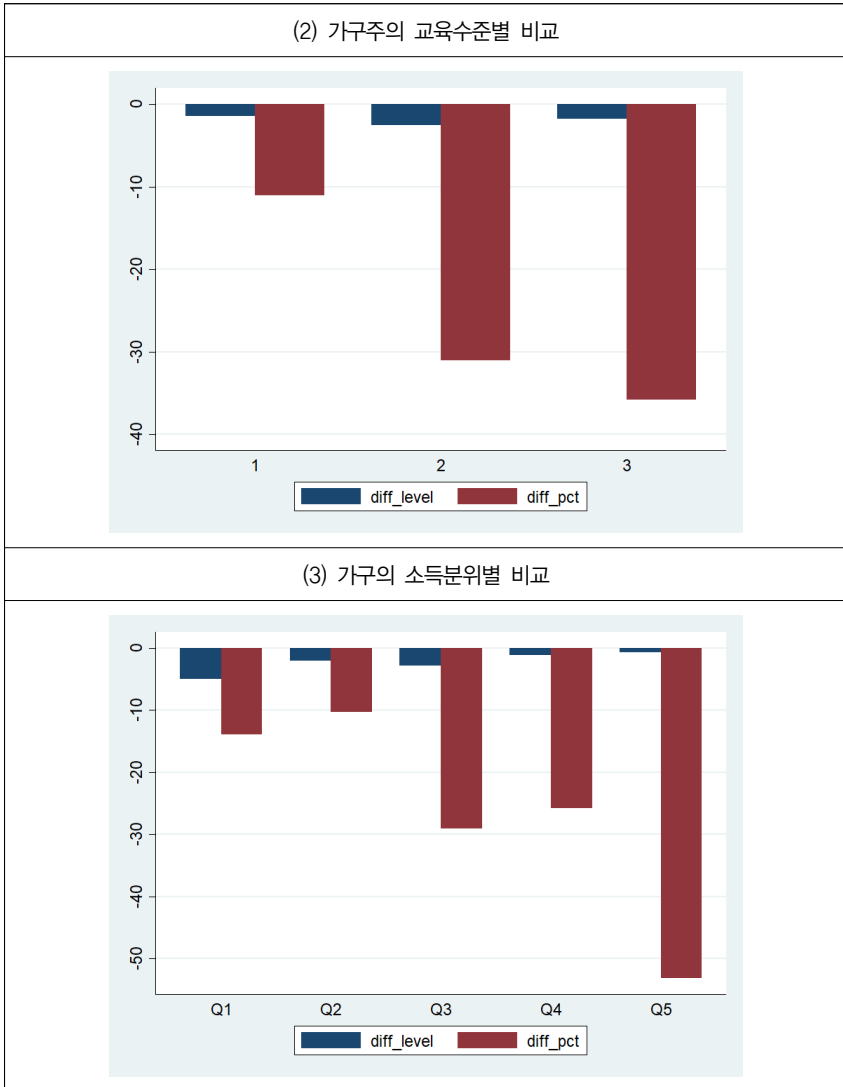
다음으로, 부업에 종사할 확률은 연간 소득유형의 발생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보통 일자리가 하나의 소득유형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소득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개의 일자리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22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미시자료에 기반하여 소득유형 발생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이때 고려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다. 각각이 발생 혹은 미발생이라는 2가지의 경우수가 있으므로, 총 경우수는 8가지이다. 전술한 세 가지 소득유형 중의 하나만 발생하는 경우 '단일소득 발생'이라고 정의한 후, 단일소득 발생확률이 2017년 대비 2022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그림 II-2] 단일소득유형 발생확률의 변화

(단위: 차분 수준, 차분변화율)



[그림 II-2]의 계속



주: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는 제외하였음

(1)의 연령유형 정의: 1: 18~29세, 2: 30~39세, 3: 40~49세, 4: 50~59세, 6: 60~64세

(2)의 교육유형 정의: 1: 고졸 이하, 2: 전문대졸, 3: 4년제 대학 이상

(3)의 소득분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한 소득 5분위 변수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 2022년 공공형 미시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II-2]에서는 총 3개의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다. 이 그래프에서 남색 막대 그래프는 단일소득유형 발생확률의 2022~2017년도 동안 차분값을 의미하고, 붉은색 막대 그래프는 해당 발생확률의 동 기간 변화율을 의미한다. 또한 [그림 II-2]의 (1)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유형별로, (2)에서는 가구주의 교육수준별로, (3)에서는 가구의 소득분위별로 해당 변수를 제시하고 있다. 가구주의 연령유형은 18~29세(유형 1), 30~39세(유형 2), 40~49세(유형 3), 50~59세(유형 4), 60~64세(유형 5)로 구분된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유형 1), 전문대졸(유형 2), 4년제 대학 이상(유형 3)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소득 5분위 변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자체적으로 계산된 변수값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다.

단일소득유형이 발생할 확률은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대체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8~29세 가구주 가구의 경우, 2017년 대비 2022년 단일소득 발생확률이 차분 수준(%p)이나 변화율(%) 측면에서도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30~40대, 50대, 60~64세 순으로 감소 폭(수준과 변화율)이 줄어든다.

가구주의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차분 수준의 변화는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교육수준별로 갖는 의미는 다르다. 단일소득유형 발생확률의 2017년 대비 2022년의 음(-)의 변화율의 크기가 4년제 대학 이상 가구주 가구에서 가장 크다. 이는 2017년에 이들 가구주 가구에서 단일소득유형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고졸 이하나 전문대졸 가구주 가구에 비해 상당히 낮았음을 의미한다.

가구의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차분 수준값을 보면 1분위에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7년 1분위 가구의 단일소득유형 발생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기에, 변화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의 경우, 차분 수준의 변화는 미미하지만, (4년제 이상 가구주 가구의 경우에서처럼) 2017년 당시 단일소득유형 발생확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음(-)의 변화율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요컨대, 소득유형으로 고려했을 때 복수소득유형 발생의 확률은 가구주의

교육, 연령, 가구소득 분위 등에 상관없이 대체로 2017년 대비 2022년에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서는 재산소득도 고려했기 때문에, 해당 개인이 복수일자리에 종사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술한 8가지 소득유형 발생조합의 시계열 추이를 <표 II-3>에서 제시하였다.

<표 II-3> 소득유형 발생조합의 연도별 추이

(단위: %, 차분수준, 차분변화율)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2~ 2017	
							차분 수준 (%p)	차분 변화율 (%)
근로소득 단일	8.24	8.20	7.34	7.39	6.92	6.30	-1.94	-23.56
사업소득 단일	1.43	1.33	1.40	1.24	1.15	1.18	-0.25	-17.67
재산소득 단일	1.48	1.65	1.32	1.53	1.65	1.63	0.16	10.60
단일소득유형	11.14	11.18	10.06	10.16	9.72	9.11	-2.04	-18.28
근로소득+사업소득	3.34	3.41	3.61	3.69	3.44	3.44	0.11	3.16
근로소득+재산소득	45.19	44.25	44.33	42.75	42.66	42.43	-2.76	-6.11
사업소득+재산소득	9.97	10.04	9.49	9.30	9.95	9.18	-0.80	-8.00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29.11	29.95	31.25	32.80	32.97	34.33	5.22	17.95
소득 없음	1.24	1.17	1.25	1.30	1.26	1.51	0.27	21.47

주: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는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 2022년 공공형 MDIS 미시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먼저 비중을 살펴보면, 가장 일반적인 가구유형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지만(2017년 기준 85.88%, 2022년 기준 86.50%), 근로소득은 사업소득 혹은 재산소득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017년 기준 77.64%, 2022년 기준 80.20%).

2017년 대비 2022년에 나타난 특징으로,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단일소득으로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었다(-1.94%p). 둘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늘어난 반면(0.11%p),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줄어들었다(-2.76%p). 셋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모두 발생할 확률은 크게 증가하였다(5.22%p).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동시 발생 확률이 점차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의 한 가지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보다 보편화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근로자성 취업소득이지만, 사업소득에 포함되며, 물리적 사업장이나 고용인이 있는 사업자만이 사업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같이 근로소득을 발생하는 가구가 접근하기 용이한 사업소득이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동반하여 증가하는 양상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보편화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단,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보편화되었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에 대한 상대적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일부를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그러한 소득회피 의도와는 상관없이 플랫폼 경제의 발달 결과로 야기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그림 II-2(3)]에서 소득분위가 높은 경우에도 복수의 소득유형 발생 확률이 늘어난 부분을 좀 더 검토하기 위해서 <표 II-4>에서는 소득분위 1분위와 5분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득유형 발생조합의 시계열 추이를 살펴 보았다. 5분위 가구의 통계치를 보면, 대부분의 가구의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동시 발생(2017년 기준 50.20%, 2022년 기준 46.68%), 혹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이 동시 발생(2017년 기준 40.45%, 2022년 기준 46.46%)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상위 분위 가구에서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동반되는 경향은 원래 존재하였으나, 최근 사업소득이 그 두 소득유형의 조합에 더하여 추가로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3가지 소득유형이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이 2017년 대비 2022년에 6.02%p(차분 변화율 14.87%)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위 분위 가구소득의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이러한 복수소득유형의 발생확률을 높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위 분위 가구소득은 사업소득보다는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동반되는 경우가 원래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보편화가 상위 분위 가구의 소득유형 발생조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반면, 하위 분위 가구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동반 경향성이 상당히 두드러진다. ‘근로소득+재산소득,’ ‘근로소득+재산소득+사업소득,’ ‘사업소득+재산소득’ 조합의 변화 방향은 5분위와 가구와 1분위 가구가 상당히 유사하다. 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소득유형발생 조합의 경우 대조적이다. 1분위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 발생의 확률이 2017년 대비 2022년에 3.44%p(차분 변화율 90.04%) 증가한 반면, 5분위의 경우, 동일한 소득조합 발생의 확률이 동기간 0.23%p 감소(차분 변화율 -24.30%)한 것으로

〈표 II-4〉 소득유형 발생조합의 연도별 추이: 소득분위 1분위와 5분위

(단위:%, 차분수준)

연도	소득분위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재산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소득 없음
2017	Q1	23.84	2.44	9.29	3.82	33.09	7.72	9.04	10.76
2018	Q1	22.73	2.58	9.91	4.57	33.24	8.12	8.82	10.03
2019	Q1	20.94	2.79	8.51	4.90	32.86	8.31	9.97	11.74
2020	Q1	19.75	2.97	10.11	5.51	29.21	9.40	10.84	12.20
2021	Q1	18.07	2.94	11.38	5.29	30.29	9.65	11.28	11.10
2022	Q1	17.08	3.14	10.42	7.26	28.94	7.40	13.03	12.72
(2022-2017)	차분수준(%p)	-6.76	0.70	1.13	3.44	-4.15	-0.31	3.99	1.96
(2022-2017)	차분변화율(%)	-28.36	28.73	12.13	90.04	-12.54	-4.06	44.15	18.26
2017	Q5	0.93	0.19	0.08	0.96	50.20	7.19	40.45	0.00
2018	Q5	1.22	0.08	0.07	0.97	49.57	7.13	40.96	0.00
2019	Q5	0.80	0.21	0.11	1.51	49.82	5.62	41.93	0.00
2020	Q5	1.02	0.10	0.18	0.95	48.16	5.87	43.73	0.00
2021	Q5	0.62	0.04	0.10	0.84	48.40	5.89	44.11	0.00
2022	Q5	0.38	0.07	0.11	0.73	46.68	5.56	46.46	0.00
(2022-2017)	차분수준(%p)	-0.55	-0.12	0.03	-0.23	-3.52	-1.62	6.02	0.00
(2022-2017)	차분변화율(%)	-59.09	-64.26	39.43	-24.30	-7.01	-22.58	14.87	

주: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는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공공형 MDS 미시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로 나타난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유형 안에서 고소득자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대체로 소득규모가 낮은 것을 고려할 때, 1분위 가구의 이러한 경향성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발생 형태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 나. 인적용역 사업소득 행정 통계<sup>9)</sup>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인원이나 지급금액의 추이를 살펴보기 어려우므로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에서 제공되는 집계자료를 다운로드받아 분석하였다.<sup>10)</sup> 분석은 신고 인원과 지급액 변수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2011년의 경우에 한해서는 지급건수 정보가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연도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총인원, 총지급액, 평균 지급금액, 소득세(원천세) 변수를 분석하였다. 평균 지급금액은 총지급액을 총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소득세(원천세)는 국세이므로 평균적으로 3.0%가 되어야 하지만, 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되는 지급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평균 원천징수세율이 3.0%보다 낮을 수 있다.

[그림 II-3]에서는 전체 인원, 지급액, 평균 지급액에 대한 2010~2020년 기간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인원과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원은 2010년 336만명에서 2020년 798만명으로 약 2.4배 증가하였고<sup>11)</sup> 금액은 2010년 45조원에서 2020년 108조원으로 약 2.4배 증가하였다. 평균 지급액은 2010년 13.4백만원에서 2020년 13.6백만

9) 김문정·안종석·정다운(2022)의 '인적용역 사업소득 현황' 관련 내용을 인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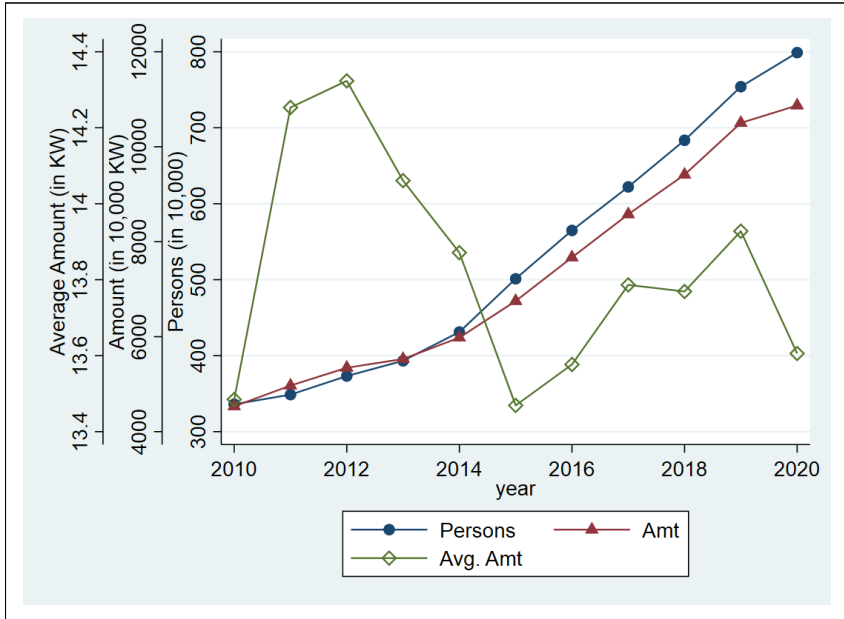
10) 거주자의 사업소득 신고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 신고 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2010년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 기준, 총인원은 60만명, 총지급액은 8.7조 원이었으며 2020년의 경우 총인원은 55만명, 총지급액은 9.4조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지급금액은 14.5백만원에서 17.0백만원으로 17%가량 증가하였다.

11) 연말정산 근로소득 인원은 2010년 15.1백만명, 2020년 19.4백만명으로 28% 증가, 신고 금액은 2010년 401조원, 2020년 750조원으로 87% 증가하였다. 평균 금액은 26백만원에서 38백만원으로 45.5%가량 증가하였다. 거주자의 사업소득 인원은 2020년 기준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자의 41%,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금액은 동 시점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자의 14%에 해당한다.

원으로 약간 상승하였다. 평균 지급액의 경우 13.4백만원에서 14.4백만원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하였다.

[그림 II-3] 거주자의 사업소득 연도별 통계: 인원, 지급액, 평균 지급액

(단위: 만명, 백억원, 백만원)



주: 지급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제공되었던 자료를 10,000으로 나눈 값이므로 단위는 백억원임. 평균 금액은 백만원 단위의 지급금액을 전체 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므로 단위는 백만원임

자료: 국세통계포털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참고로, 거주자의 사업소득 인원은 2020년 기준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자의 41%,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금액은 동 시점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자의 14%에 해당한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비하여 인원 증가율은 높고, 금액 증가율은 낮은 편이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인원은 2010년 15.1백만명 2020년 19.4백만명으로 28% 증가, 신고금액은 2010년 401조원, 2020년 750조원으로 87% 증가하였으며, 평균 금액은 26백만원에서 38백만원으로 45.5% 가량 증가하였다.

거주자의 사업소득 평균 금액(13백만원)이 연말정산 근로소득 평균 금액

(38백만원)의 34%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만약 거주자의 사업자가 연말정산 근로소득이나 일반 사업소득을 발생하지 않을 경우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 가지 유형의 소득을 보유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소득신고 유형만으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 2. 해외 사례

### 가. 노동비용 격차 측면<sup>12)</sup>

노동비용 격차(payment wedge)를 통해서 사회보험 비용 부담 측면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관련된 연구 내용(강신혁 외, 2022)을 인용하고자 한다. 강신혁 외(2022)에서는 여러 챕터 중의 하나로 해외 사례로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의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비용 격차의 차이를 살펴본 바 있다.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노동비용의 격차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간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비임금근로자 유형에 인적용역 사업자 혹은 진성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강신혁 외(2022)에서는 전술한 몇 개의 해외 국가별로 임금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 진성 사업자 등의 고용형태의 제도적 구분이 국가별로 어떻게 나타나며 그러한 제도적 구분하에 노동비용 격차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노동비용 격차(payment wedge)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지불하는 총노동비용과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가처분소득의 차이를 총노동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노동비용 격차를 유발하는 요소로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SSC), 고용주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급여세, 비조세의무부담금(NTCP), 정부보조금 등이 존재한다.

---

12) 강신혁 외(2021)의 사회보험료 부담과 관련한 해외 사례 부분 요약 부분을 인용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국가별 평균임금, 1인 가구 가정)에게 귀속되는 가치분소득이 100으로 가정할 때 노동비용 격차가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49.4%)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스웨덴(43.1%), 호주(34.2%), 영국(30.8%) 등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호주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발생하는 노동비용 격차가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할 때 발생하는 노동비용 격차 대비, 각각 10.2%, 11.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고용형태(근로자, 사업자 등)에 따른 노동비용 격차의 차이가 4.1%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5〉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의무부담 비용 격차<sup>1)</sup>

국가	고용 구분	소득세	사회보험료와 NTCP	급여세
호주	근로자		- 고용주 부담: 연금기여금 9.5%	- 고용주 5.45%
	개인사업자 <sup>2)</sup>			
네덜란드	근로자		- 근로자 부담: 6.6% (연금) - 고용주 부담: 9.9% (연금), 6.7% (건강보험), 4.118% (실업보험), 8.55% (상해보험)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공제 7,030유로	- 5.65% (건강보험)	
스웨덴	근로자		- 고용주 부담: 31.42% (사회보험, 급여세)	
	개인사업자		- 28.97% (사회보험, 급여세) - 15,000 SEK 경감	
영국	근로자		- 근로자 부담: 12% (NI), 2.05% (의료) - 고용주 부담: 13.8% (NI), 1% (의료)	
	개인사업자 <sup>2)</sup>	사업자 표준공제 1,000GBP	- 9%(NI)	

주: 1) 근로자 평균급여에 적용되는 제도를 기준으로 정리  
평균급여: 호주 90,861 AUD, 네덜란드 54,843 EUR, 스웨덴 465,767 SEK, 영국 41,807 GBP

2) 피고용인(근로자)으로 취급되는 도급업자(호주), workers(영국) 제외

자료: 강신혁 외(2021), p. 58, 〈표 2-32〉

또한, 이러한 고용형태별 노동비용 격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사회 보험료로 나타났다. 연금이나 고용보험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었다. 건강보험의 경우, 개인사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요율에서 근로자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소득세 공제제도의 경우, 국가에 따라서 네덜란드, 영국의 경우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공제나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차이로 인하여 근로소득자 평균실효세율이 종합소득자 대비 2~3%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노동비용 격차는 고용형태별 제도적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자체로 고용형태 간 노동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경우, 고용에 따른 근로자의 충성도, 장기 고용에 따른 숙련도, 고용의 경직성 등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았다. 반면 근로자의 경우, 노동비용 격차를 유발하는 사회보험료 격차에 따른 사회보장 혜택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노동비용 격차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나. 고용지원 서비스(취업지원과 직업훈련)

(실업급여 및 고용서비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인적용역 사업자 간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영국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김강호 외, 2021). 또한, 민간협회 혹은 노조 차원에서 인적용역 사업자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훈련상담,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외부 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표 II-6〉 인적용역 사업자 대상 취업지원 관련 해외 사례

구분	독일	영국	호주	프랑스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으로 적용</li> <li>▶ 단, 일부 예외조항을 둠(근로시간, 최저임금, 해고보호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의 판단에 따라 차이 발생</li> <li>* 우버기사 등 일부 특수형태 근로업종은 노동자성 인정(임금근로자와 동일 처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 적용</li> <li>* 계약관계 유형은 분류</li> </ul>
정부 차원의 취업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상담</li> <li>▶ 직업훈련상담</li> <li>▶ 취업 및 전직 상담</li> <li>▶ 구직활동프로그램 지원</li> <li>▶ 취창업 및 전직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잡센터플러스의 고용서비스 활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훈련계좌제(CDF) 및 직업위험예방계좌(C2P)를 통한 직업능력개발 및 학습휴가 지원</li> </ul>
비용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 또는 산재공단</li> <li>* 해당 없을 시 잡센터 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잡센터플러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이 상호 부담</li> </ul>
민간분야 취업지원 서비스	<p>〈협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능력 향상훈련</li> <li>▶ 직업상담</li> <li>▶ 창업지원</li> </ul> <p>〈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능력 향상훈련 (온/오프라인 세미나 운영)</li> <li>▶ 법률 지원</li> </ul>	<p>〈협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지원(사업계획 자문, 계약검토, 판로개척, 인큐베이터 지원 등)</li> </ul> <p>〈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지원</li> <li>▶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권익보호</li> <li>▶ 안전사고 예방교육</li> <li>▶ 취업지원(직업훈련 및 취업정보</li> </ul>	<p>〈협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익보호</li> <li>▶ 세무 및 법률 지원</li> <li>▶ 자금지원 (정부 지원금, 협회 차원의 복지지원금 등)</li> <li>▶ 멘토링</li> <li>▶ 커리어코치</li> </ul>	-

구분	독일	영국	호주	프랑스
		제공, 이력서 작성 등 구직기술 교육 등) ▶ 취업알선 ▶ 회원의 요구사항 수집		
관련기관	▶ 공공서비스노조 (verdi) ▶ 전국직업훈련 실습교사협회 ▶ 연방자유직업협회 (BFB)	▶ 자영업협회(IPSE) ▶ 영국독립노동조합(WGB) ▶ 프리랜서 노조 ▶ 도로운송연합노조 ▶ GMB(General, Municipal, Boilermakers)	▶ 프리랜서연합회 ▶ 독립계약자협회(ICA) ▶ 운송노동조합연합(TWU)	-

자료: 김강호 외(2021), p. 114, <표 4-2>

---

## Ⅲ. 인적용역 사업자 소득세 제도

---

### 1. 제도 개관<sup>13)</sup>

#### 가. 인적용역 사업자 정의

인적용역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따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도·소매업 등 다른 업종의 사업자와 달리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면 물적 시설이라 함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임차 포함)를 의미한다.<sup>14)</sup>

인적용역 사업자도 (1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의무가 있다. 면세 용역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의제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미등록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장현황신고에서도 제외된다.<sup>15)</sup>

---

13) 김문정·안중석·정다운(2022)의 제Ⅱ장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세 제도 및 현황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14) 화물차 운전자는 특고 고용보험 대상이지만,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면세사업이면서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외의 면세사업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장현황신고 대신)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표 Ⅲ-1〉 인적용역 사업자 유형 구분과 정의

		인적용역 사업자 (인적용역 사업소득 발생자)				세법상 인적용역 해당하지 않음
		소득지급자 <sup>1)</sup> 가 소득과 신원 정보 제공	사업장제공자가 소득과 신원 정보 제공	개별적으로 소득 신고 <sup>16)</sup>		
과세 자료 명칭	소득지급자 혹은 제3자, 혹은 거래상 계약자	연말정산 사업소득 <sup>2)</sup>	그 외 사업소득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해당 없음	다른 사업장으로 부타의 매입신고 (부가가치세)
	당사자	연말정산 (원천징수+ 소득신고)	간이지급 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종합소득 신고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종합소득신고서	종합소득 신고서	매출신고 (부가가치세)
		↓↓		↓↓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		인적용역제공자 유형		용역제공자 유형	사업자등록 유형	

주: 1) 노무제공자의 '소득'은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 신고과정에서 단순경비를 혹은 필요경비 처리로 하여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소득지급자'라는 표현은 적정하지 않으나, 편의상 수입지급자와 소득지급자 간의 엄격한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음

2)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에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다른 유형의 소득이 존재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체로부터 수입을 지급받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함. 그러나 위의 표에서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의 의무가 종결된 경우만 보여주고 있음

자료: 이병희 외(2022), p 7, 〈표 2-2〉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 업종' 중의 하나로 업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업종신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16) 보통 원천징수 등을 통해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소득을 보고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통해서 소득을 보고하는 경우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유인이 존재한다.

## 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업종코드

2021년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시행 이후에 인적용역 사업소득 코드와 ‘노무제공자(특고) 고용보험’의 업종코드의 정합성을 피하고자, 업종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을 다음의 표에서 자세히 제시하였다. 인적용역으로 분류되는 업종코드는 6자리 업종코드 기준 94로 시작하는 업종으로 2021년 6월까지의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다.<sup>17)</sup>

---

17) 아래의 경우는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업종코드를 보여주는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에는 화물차운전자 등, 세법상 사업자도 일부 포함한다. 국세청에서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보험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7월 22일 ‘사업자등록형 특고’에 관한 업종코드를 신설하였다. 관련 내용은 부록의 표를 참고할 수 있다(국세청, 「(고용보험 적용 관련) 사업자등록형 특고 신설 업종코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방법 안내」, <https://www.nts.go.kr/nts/na/nt/selectNttInfo.do?mi=40312&nttSn=1306790>, 검색일자: 2023. 12. 1.).

〈표 II-2〉 인적용역 사업소득 업종코드

(단위: %)

업종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경 비율 (일반율)	단순경 비율 (초과율)	기준경 비율 (일반율)
940100	저술가	작가	◦ 학술·문예에 관한 번역수입금액 포함	58.7	42.2	14.0
940200	화가 및 관련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 회화, 서예가, 조각가, 만화가, 삽화가, 도예가	69.5	57.3	16.0
940301	음악가 및 연예인	작곡가	◦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 각색영화편집	49.7	29.6	11.6
940302	음악가 및 연예인	배우, 탤런트등	◦ 배우, 탤런트, 성우, MC, 코메디언, 개그맨, 만담가	29.0	10.4	10.4
940303	음악가 및 연예인	모델	◦ 탤런트, 배우 등의 광고모델수입 포함	45.9	24.3	10.2
940304	음악가 및 연예인	가수	◦ 가수	22.3	6.9	6.9
940305	음악가 및 연예인	성악가 등	◦ 성악가, 국악인, 무용가, 고전음악연주가, 악사, 영화감독, 연출가	53.1	34.3	17.6
940306	기타자영업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 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용역자의콘텐츠창작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 유튜브, B, 크리에이터 등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921505 적용	64.1	49.7	15.1

〈표 II-2〉의 계속

업종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경 비율 (일반율)	단순경 비율 (초과율)	기준경 비율 (일반율)
940500	연예보조 서비스	연예보조 서비스	◦ 연예보조출연자(엑스트라), 조명, 촬영, 장치, 녹음, 분장 등 기타	70.9	59.3	20.3
940600	기타 자영업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 교정료	◦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감독·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 교정, 고증, 필경, 타자 또는 음반 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58.4	41.8	12.0
940901	기타 자영업	바둑기사	◦ 바둑기사	66.0	52.4	13.4
940902	기타 자영업	꽃꽂이교사	◦ 꽃꽂이, 무용, 음악, 사교댄스 및 요리교사	81.8	74.5	19.9
940903	기타 자영업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재단사	◦ 학원강사	61.7	46.4	16.6
940904	기타 자영업	직업운동가	◦ 운동지도가, 기사, 역사(심판 포함), 경륜, 경정선수, 기수, 경기기록계원, 감독 등 포함	54.5	36.3	18.5
940905	기타 자영업	유흥접객원 및 댄서	◦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	61.7	46.4	17.3
940906	기타 자영업	보험설계사	◦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77.6	68.6	25.0

〈표 II-2〉의 계속

업종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경 비율 (일반율)	단순경 비율 (초과율)	기준경 비율 (일반율)
940907	기타 지역업	음료품배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요구르트 등의 배달원</li> <li>○ 우유배달판매, 요구르트배달판매</li> <li>*음료품 소매판매원(→522099)</li> </ul>	80.0	72.0	28.7
940908	기타 지역업	서적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판매원, 화장품방문판매원, 정수기방문판매원, 자동차방문판매원, 일반(기타)방문 판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적 방문판매원</li> <li>○ 학습지방문판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지(눈높이, 재능, 구몬, 웅진씽크빅, 윤선생 등) 배부 및 진도관리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li> </ul> </li> <li>○ 화장품방문판매원</li> <li>○ 정수기방문판매원</li> <li>○ 자동차방문판매원</li> <li>○ 일반(기타)방문판매원</li> <li>*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940910 적용 (제외) · 중고자동차판매원(940929)</li> </ul>	75.0	65.0	22.0

〈표 II-2〉의 계속

업종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경 비율 (일반율)	단순경 비율 (초과율)	기준경 비율 (일반율)
940909	기타 자영업	기타자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프리랜서 제외(→940926)), 조율사, 전기·가스검 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 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li> <li>* 어로장</li> <li>〈제외〉</li> <li>·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li> <li>· 소프트웨어프리랜서(940926)</li> <li>· 관광통역안내사(940927)</li> <li>· 어린이통학버스기사(940928)</li> </ul>	64.1	49.7	17.0
940910	기타 자영업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li> <li>*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수입(→525200)</li> </ul>	67.8	54.9	17.0
940911	기타 자영업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모집수당</li> <li>○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 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li> <li>○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 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li> <li>*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중개업(702001) 적용</li> <li>○ 채권회수수당</li> <li>○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li> </ul>	67.3	54.2	23.5

〈표 II-2〉의 계속

업종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경 비율 (일반율)	단순경 비율 (초과율)	기준경 비율 (일반율)
940912	기타 지역업	개인간병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 요양소, 산업체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일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li> <li>○ 방문간호서비스, 파출간병인서비스</li> </ul>	80.2	72.3	22.0
940913	기타 지역업	대리운전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운전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업</li> </ul>	73.7	63.2	28.1
940914	기타 지역업	골프장캐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프장에서 경기자를 따라다니며 보조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li> </ul>	67.3	54.2	15.6
940915	기타 지역업	목욕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님의 목욕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는 업</li> </ul>	76.0	66.4	23.9
940916	기타 지역업	행사도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체 등에서 자사 상품 및 시설의 장점, 기능 등을 홍보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업</li> </ul>	68.1	55.3	14.5
940917	기타 지역업	심부름용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및 사업체의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업체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업</li> <li>○ 말벗서비스, 심부름센터</li> </ul>	71.5	60.1	21.2
940918	기타 지역업	퀵서비스배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지정된 곳에 신속히 배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li> <li>〈예시〉 · 퀵서비스 · 배달대행업체배달원</li> <li>〈제외〉 · 각종집운반원(→940919), · 음료품배달원(→940907)</li> </ul>	79.4	71.2	27.4

〈표 II-2〉의 계속

업종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경 비율 (일반율)	단순경 비율 (초과율)	기준경 비율 (일반율)
940919	기타 자영업	기타물품운반원	◦ 의류(직물) 운반원, 이삿짐운반원, 짐운반원 등 각종 물건을 운반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제외) · 퀵서비스 · 배달대행업체배달원(→940918), · 음료품배달원(→940907)	68.5	55.9	15.0
940920	기타 자영업	학습지 방문강사	◦ 학습지(국어, 영어 등)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내용을 지도하고 대가를 받는 업	75.0	65.0	22.0
940921	기타 자영업	교육교구 방문강사	◦ 유아 및 아동의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을 위해 학습지가 아닌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하여 지도하고 대가를 받는 업	75.0	65.0	22.0
940922	기타 자영업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정 및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대여 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 업	75.0	65.0	22.0
940923	기타 자영업	대출모집인	◦ 금융회사나 대출모집법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신청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거나 대출 수요자를 발굴하여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업	67.3	54.2	27.5
940924	기타 자영업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업	70.0	58.0	28.4
940925	기타 자영업	방과후강사	◦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단, 돌봄과정 제외)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업 (단,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68.9	56.5	16.5

〈표 II-2〉의 계속

업종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경 비율 (일반율)	단순경 비율 (초과율)	기준경 비율 (일반율)
940926	기타 자영업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 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li> <li>*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li> <li>〈예시〉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소프트웨어기술자</li> </ul>	64.1	49.7	17.0
940927	기타 자영업	관광통역 안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 안내를 하고 대가를 받는 업</li> <li>- 사전에 예약된 손님을 공항으로 마중나가고 여행경비 산출, 일정표 작성,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환전, 호텔과 택시의 이용 등 입국에서 출국에 이르기까지 관광 여행자들의 관광 일정에 모든 편의와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포함한다</li> </ul>	64.1	49.7	17.0
940928	기타 자영업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교육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및 제52조에 해당하는 것)를 운전하고 대가를 받는</li> <li>* 어린이통학버스기사가 인적 또는 물적시설(본인 또는 공동소유 차량)을 갖춘 경우(→602110)</li> </ul>	64.1	49.7	17.0

〈표 II-2〉의 계속

업종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경비율 (일반율)	단순경비율 (초과율)	기준경비율 (일반율)
940929	기타 지영업	중고자동차 판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고차의 매입 또는 판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자(중고차의 주행거리, 시장상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중고차의 매입 또는 판매를 알선한다)</li> </ul> 〈예시〉 중고차매입딜러, 중고차판매딜러	75.0	65.0	22.0

주: 각 업종의 대분류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고, 중분류는 '인적용역'에 해당함

자료: 국세청, 『2022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검색일자: 2023. 12. 20.

## 다. 소득의 결정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소득과 달리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구분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하여 세법에 제시된 경비로 인정된 항목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복식부기 기장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금액이 낮은 경우에 간편장부 기장을 허용하고 있다. 간편장부의 사례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해당 예시는 ‘학원강사’ 업종의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관련된 간편장부 사례를 보여준다. 예시에 따르면 각 일자별로 계정과목,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매출),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비고 등의 항목에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수입, 비용, 자산에 대해서는 금액과 부가세 항목이 구분되어 있고, 비고에는 ‘카드’ 혹은 ‘현금’ 거래 여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Ⅲ-1] 인적용역 사업소득 간편장부 서식 예시

① 일자	② 계정과목	③ 거래내용	④ 거래처	⑤수입 (매출)		⑥비용 (원가관련 매입포함)		⑦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⑧ 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1. 7	차량 유지비	유류비	대성 주유소			77,000				카드
1. 12	기타 (비용)	교재제작	나라인쇄			330,000				세계
1. 15	기타 (비용)	강의참고 자료 구입	목동문고			200,000				카드
1. 20	차량 유지비	정기주차료	대림빌딩			165,000				카드
1. 21	매출	강사료수입 1월분	대치학원	3,600,000						
1. 21	광고 선전비	프로필 사진 촬영	행운 사진관			220,000				카드
1. 23	매출	강사료수입 1월분	송림학원	2,300,000						
1. 25	기타 (비용)	휴대전화요금	한성 텔레콤			63,000				

자료: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검색일자: 2022. 8. 3.에 제시된 “인적용역 사업소득 간편장부 서식”의 일부임

매출이 낮은 사업자의 경우 비용을 추정하여 소득을 추계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절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한다.

단순경비율의 경우는 단순경비율일반율과 단순경비율초과율이 있다.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해당하지만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초과한 경우, 2,400만원까지는 단순경비율일반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초과율이 적용된다.

만약 인적용역자가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경비율은 업종에 상관없이 60%로 일괄 적용된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업종을 기입할 필요가 없다.

### 라. 특례업종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는 경비율이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적용된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3개 특례업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표 Ⅲ-3〉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경비율 적용기준

(단위: %)

구분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소득률(1-단순경비율)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보험모집인	940906	77.6	68.6	22.4	31.4
방문판매원	940908	75.0	65.0	25.0	35.0
음료품배달원	940907	80.0	72.0	20.0	28.0

자료: 국세청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8909b9bd1bc44b054b8174147755c949&mi=2233>, 검색일자: 2023. 10. 1.

연말정산 시 사업소득만 존재하고 직전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반면, 나머지 인적용역 사업자는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방문판매원),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음료배달판매원) 등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적으면 납부세액이 발생되고,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세액이 발생된다.

#### 마. 원천징수 의무이행

인적용역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지만,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이기 때문에 소득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이행으로 인하여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수입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사업자, 법인세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3%(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 의무자에는 사업자, 법인세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해당된다.

## 2. 경비율 제도 소개 및 검토

### 가. 일반적인 경비율 제도 개관<sup>18)</sup>

경비율 제도는 사업자들이 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적용하여 각종 과세 및 복지행정에 활용되는 제도이다. 모든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있다. 이때 기장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재무제표,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 문서로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안하여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복식부기장부가 아닌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간편하게 작성 가능한 간편장부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때, 복식부기 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법상 전년도 수입금액을 요건으로 두고 있다(〈표 Ⅲ-5〉). 2023년 기준 농·임·어업 등의 업종은 수입금액 3억원,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은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7,500만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가 가능하다. 추계신고는 기장의무 분류와 마찬가지로 세법상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신고한다. 추계신고는 기본적으로 기준경비율 신고와 단순경비율 신고로 나뉜다.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표 Ⅲ-5〉의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당해(귀속)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만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서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은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어도 귀속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된다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기장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추계신고를 할 경우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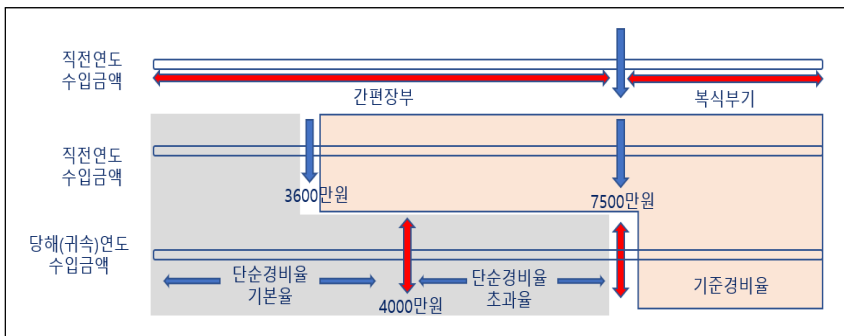
18)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을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일반적' 경비율 제도라고 표현하였다.

경우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표 Ⅲ-4>의 첫 번째 행에 제시되어 있는 세 가지 기준에서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즉,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 관련된 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0.07%, 산출세액과 무기장소득금액을 곱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금액을 나눈 값의 20% 가운데 큰 값을 적용한다.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서도 간편장부신고 대신 추계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산출세액의 20%를 부과한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를 허용한다. 신규사업자,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다.

참고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일부 업종에 속한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자를 의미한다. 대상자는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방문판매원),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를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그림 Ⅲ-2] 인적용역 사업자 장부기장 및 경비율 기준



자료: 저자 작성

등을 받는 자(음료배달판매원) 등이 대상자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무기장 가산세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표 Ⅲ-4〉 추계신고에 따른 가산세

구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 7/10,000 산출세액 * [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간편장부 대상자	산출세액 * [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자료: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https://www.nts.go.kr/nts/cm/cntrnts/cntrntsviw.do?mi=2230&cntrntslid=7669>, 검색일자: 2023. 5. 30.

〈표 Ⅲ-5〉 기장의무 및 경비율 기준 수입금액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육탕업	1.5억원 이상	1.5억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 이상	2천4백만원 미만

주: 2023년부터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운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이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자료: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https://www.nts.go.kr/nts/cm/cntrnts/cntrntsviw.do?mi=2230&cntrntslid=7669>, 검색일자: 2023. 5. 30.

## 나. 인적용역 사업자에 적용되는 경비율 제도 개관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경비율은 앞서 예로 든 프리랜서 사업자와 같은 기준으로 장부 기장 및 경비율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기장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당해(귀속)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기장 대상이라면, 즉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라면, 추계신고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분을 적용한다(그림 Ⅲ-2).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경비율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며, 인적용역 사업자들(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과세자료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월별로 바뀐 대상<sup>19)</sup>)의 경비율은 〈표 Ⅲ-6〉에 정리하였다.

인적용역 사업자들에 대한 경비율 적용 과정의 예는 다음과 같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1년 수입금액이 3,500만원이고, 2022년 수입금액이 4천만원인 경우 추계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소득금액은  $[4천만원 - 4천만원 \times 73.7\% = 1,052만원]$ 이다. 만약, 같은 사업자가 2021년 수입이 3,500만원이고, 2022년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초과율을 적용받아, 소득금액은  $[4천만원 - 4천만원 \times 73.7\%] + [1천만원 - 1천만원 \times 63.2\%] = 1,420만원$ 이다.<sup>20)</sup>

19) 대상 업종은 보험모집인,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방문판매원, 학습지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 8개 업종이며, 플랫폼종사자 및 기타로 분류되는 업종은 퀵서비스, 대리기사, 캐디, 욕실종사원, 가사도우미, 간병인, 중고차 판매인, 수하물 운반원 등 8개 업종이다.

20) 간단한 계산을 위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고려는 제외한다.

〈표 Ⅲ-6〉 인적용역 사업자 (일부) 공제율(고용보험) 및 경비율

(단위: %)

업종코드	업종명	공제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15.1	64.1	49.7
940906	보험설계사	25.0	25.0	77.6	68.6
940907	음료품배달원	-	28.7	80.0	72.0
940912	개인간병인	-	22.0	80.2	72.3
940913	대리운전기사	24.1	28.1	73.7	63.2
940914	골프장캐디	-	15.6	67.3	54.2
940915	목욕관리사	-	23.9	76.0	66.4
940918	퀵서비스배달원	27.4	27.4	79.4	71.2
940920	학습지방문강사	22.0	22.0	75.0	65.0
940921	교육교구 방문강사	22.0	22.0	75.0	65.0
940922	대여제품방문점검원	22.0	22.0	75.0	65.0
940923	대출모집인	23.5	27.5	67.3	54.2
940924	신용카드회원모집인	23.5	28.4	70.0	58.0
940925	방과후강사	23.5	16.5	68.9	56.5
940929	중고자동차판매원	-	22.0	75.0	65.0
950001	가사보조원	-	18.2	79.7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귀속 경비율 고시」,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21192>, 검색일자: 2023. 5. 31.

경비율은 매년 국세청 고시를 통해 결정되는데, 결정 과정에는 실제 업종의 경비 구조, 과거 경비율 현황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비율 산정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공개된 바 없어 경비율 산정의 정확한 근거를 연구자 차원에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연도별 경비율의 변화 현황을 주요 업종에 대해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표 Ⅲ-7〉은 기준 경비율에 대해서 연도별로 정리하였으며, 〈표 Ⅲ-8〉은 단순경비율(기본율)에 대해서 연도별로 정리하였다. 2020년 이전에는 일부 업종에 대한 코드가 신설되기 전으로 정확한 분류가 어려웠던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기타자영업(업종코드 940903, 940908, 940909 등)으로 분류되었다. 참고로, 인적용역 사업자와 관련하여 최근 신설된 업종코드는 〈표 Ⅱ-9〉에 정리하였다.

〈표 Ⅲ-7〉 인적용역 사업자 (일부) 연도별 변화: 기준경비율

(단위: %)

업종코드	업종명	2018	2019	2020	2021	2022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19.2	13.4	16.8	15.1
940906	보험설계사	29.5	26.6	23.9	25.0	25.0
940907	음료품배달원	23.6	22.4	29.1	30.2	28.7
940912	개인간병인	12.5	16.3	14.7	18.4	22.0
940913	대리운전기사	21.4	17.1	21.4	24.1	28.1
940914	골프장캐디	15.8	15.8	12.6	12.0	15.6
940915	목욕관리사	18.6	16.7	20.9	23.0	23.9
940918	퀵서비스배달원	25.3	25.3	30.4	27.4	27.4
940920	학습지방문강사	17.5	19.4	24.4	22.0	22.0
940921	교육교구방문강사	17.5	19.4	24.4	22.0	22.0
940922	대여제품방문점검원	17.5	19.4	24.4	22.0	22.0
940923	대출모집인	20.7	22.6	23.5	23.5	27.5
940924	신용카드회원모집인	20.7	22.6	23.5	23.5	28.4
940925	방과후강사	17.5	19.4	18.4	23.5	16.5
940929	중고자동차판매원	-	-	-	-	22.0
950001	가사보조원	19.2	19.2	19.2	19.2	18.2

주: 1. 연도는 종합소득세 신고 귀속연도를 의미함

2. 음영처리한 업종은 과거부터 경비율 분류가 가능하였던 업종들이며, 940920~940929 업종은 2021년 이후 새롭게 신설된 업종임. 업종코드가 신설되기 이전 기간에는 940920~940922 및 940925는 940903(재단사 및 학원강사) 경비율을 적용하였으며, 940923, 940924는 940911(기타 모집수당) 경비율을 적용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귀속 경비율 고시」, <https://law.go.kr/LSW/admRullLshInfoP.do?admRulSeq=21100000221192>, 검색일자: 2023. 5. 31.

〈표 Ⅲ-8〉 인적용역 사업자 (일부) 연도별 변화: 단순경비율(기본율)

(단위: %)

업종코드	업종명	2018	2019	2020	2021	2022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64.1	64.1	64.1	64.1
940906	보험설계사	77.6	77.6	77.6	77.6	77.6
940907	음료품배달원	80.0	80.0	80.0	80.0	80.0
940912	개인간병인	80.2	80.2	80.2	80.2	80.2
940913	대리운전기사	73.7	73.7	73.7	73.7	73.7
940914	골프장캐디	65.5	67.3	67.3	67.3	67.3
940915	목욕관리사	69.8	69.8	70.3	73.3	76.0
940918	퀵서비스배달원	78.8	78.8	79.4	79.4	79.4

〈표 Ⅲ-8〉의 계속

업종코드	업종명	2018	2019	2020	2021	2022
940920	학습지방문강사	61.7	61.7	61.7	75.0	75.0
940921	교육교구방문강사	61.7	61.7	61.7	75.0	75.0
940922	대여제품방문점검원	61.7	61.7	61.7	75.0	75.0
940923	대출모집인	67.3	67.3	67.3	67.3	67.3
940924	신용카드회원모집인	67.3	67.3	67.3	67.3	70.0
940925	방과후강사	61.7	61.7	61.7	67.3	68.9
940929	중고자동차판매원	-	-	-	-	75.0
950001	가사보조원	79.7	79.7	79.7	79.7	79.7

주: 1. 연도는 종합소득세 신고 귀속연도를 의미함

2. 음영처리한 업종은 과거부터 경비율 분류가 가능하였던 업종들이며, 940920~940929 업종은 2021년 이후 새롭게 신설된 업종임. 업종코드가 신설되기 이전 기간에는 940920~940922 및 940925는 940903(재단사 및 학원강사) 경비율을 적용하였으며, 940923, 940924는 940911(기타 모집수당) 경비율을 적용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귀속 경비율 고시」, <https://law.go.kr/LSW/admRulLsnioP.do?admRulSeq=2100000221192>, 검색일자: 2023. 5. 31.

〈표 Ⅲ-9〉 인적용역 사업자 신설 업종코드

적용일	업종코드	업종명
2021. 7. 1.	940920	학습지방문강사
	940921	교육교구방문강사
	940922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0923	대출모집인
	940924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40925	방과후강사
2022. 7. 1.	940926	소프트웨어프리랜서
	940927	관광통역안내사
	940928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자료: 정재연(2022), p. 101, 〈표 2〉

경비율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과거부터 업종코드로 정확히 분류되어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업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Ⅲ-8〉과 〈표 Ⅲ-9〉에서는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서부터 940918(퀵서비스배달원)까지의 경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기준경비율의 경우 연도별 변

화가 업종별로 상이한 반면, 단순경비율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 인적용역 사업자의 추계신고에 대한 부담이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다는 점이다(정재연, 2022; 김남중·정래용, 2014). [그림 Ⅲ-3] 및 <표 Ⅲ-4>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기준이 3,600만원으로 2023년부터 인상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소매업 등 수입금액 6,000만원이 기준인 업종들에 비해 납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물론 이러한 단적인 비교로 업종 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결론짓기는 어렵지만, 인적용역 사업자와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납세협력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인식이 있는 점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정재연, 2022). 따라서 경비율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업종 간 세 부담의 차이, 경비 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 다. 인적용역 사업자에 적용되는 경비율 제도의 적정성 검토

이번 소절에서는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경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들 사업자들에 대한 경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통계연보』의 자료, 국세청의 소득세 미시 자료, 그리고 추가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 1) 인적용역 사업자의 수입금액·소득세 관련 통계

이번 소절에서는 『국세통계연보』 자료 및 소득세 납부 미시 자료를 활용하여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경비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주요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규모와 이들의 연간 수입금액 및 소득세 원천징수분 규모 등의 기초 통계를 연도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때 연간 수입금액은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보고한 연간 지급금액과 동일하며,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은 이들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종합소득 신고에 따른 결정세액과는 다르다.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표 Ⅲ-10〉은 주요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귀속연도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간 지급금액 총액, 소득세 원천징수 총액, 그리고 해당 업종의 인원 대비 연간 지급금액 및 소득세 원천징수 규모를 단순 산출한 통계를 보여준다.

보험설계사는 2021년 기준 연간 지급 총액이 약 7조원이었으며, 이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지급액에 원천징수세율 3%를 곱한 2,100억원이다. 1인당 금액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보험설계사는 1인당 약 6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대리운전기사의 1인당 수입금액은 단순평균 계산으로 약 332만원으로 집계되었고, 퀵서비스 배달원은 1인당 약 591만원, 골프장캐디는 약 263만원으로 집계된다. 보험설계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들이 소득세 추계신고할 경우 대부분의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들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수입금액이 3,600만원으로 상향되기 이전에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은 2,400만원이다). 전속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설계사들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은 다른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소득은 낮은 것이다. 전속성이 낮다는 것은 복수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통계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Ⅲ-10〉 인적용역 사업자 연간 지급금액 및 소득세(원천징수) 금액

(단위: 명, 백만원, 만원)

업종코드	업종명	인원	연간 지급금액	소득세 원천징수	1인당 연간 지급 금액	1인당 소득세	인원	연간 지급금액	소득세 원천징수	1인당 연간 지급 금액	1인당 소득세
2016							2017				
940906	보험설계사	92,375	4,695,125	140,780	5,082.68	152.4	101,226	5,133,403	153,856	5,071.23	151.99
940907	음료품배달원	4,013	44,502	1,335	1,108.95	33.27	4,094	44,991	1,349	1,098.95	32.95
940912	개인간병인	41,380	430,709	12,919	1,040.86	31.22	45,210	508,429	15,252	1,124.59	33.74
940913	대리운전기사	54,680	135,813	3,516	248.38	6.43	55,974	150,044	3,763	268.06	6.72
2018							2019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	-	-	-	4,874	20,322	609	416.95	12.49
940906	보험설계사	-	-	-	-	-	110,256	6,445,471	193,267	5,845.91	175.29
940907	음료품배달원	102,316	5,577,149	167,160	5,450.91	163.38	4,418	55,212	1,653	1,249.71	37.42
940912	개인간병인	8,460	61,215	1,539	723.58	18.19	54,832	696,068	20,879	1,269.46	38.08
940913	대리운전기사	51,706	609,357	18,279	1,178.5	35.35	82,100	224,510	5,573	273.46	6.79
940914	골프장캐디	67,824	176,399	4,374	260.08	6.45	3,726	9,116	273	244.66	7.33
940915	목욕관리사	-	-	-	-	-	961	17,243	518	1,794.28	53.9
940918	퀵서비스배달원	-	-	-	-	-	36,798	257,634	5,108	700.13	13.88

〈표 Ⅲ-10〉의 계속

업종코드	업종명	인원	연간 지급금액	소득세 원천징수	1인당 연간 지급 금액	1인당 소득세	인원	연간 지급금액	소득세 원천징수	1인당 연간 지급 금액	1인당 소득세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33,065	308,387	9,248	932.67	27.97	36,450	452,306	13,560	1,240.89	37.2
940906	보험설계사	114,322	7,205,658	216,061	6,302.95	188.99	115,459	7,005,171	210,034	6,067.24	181.91
940907	음료품배달원	4,692	63,976	1,911	1,363.51	40.73	4,783	62,480	1,683	1,306.29	35.19
940912	개인간병인	52,356	733,899	22,012	1,401.75	42.04	53,049	777,170	23,311	1,465.	43.94
940913	대리운전기사	79,052	217,905	5,258	275.65	6.65	71,062	236,077	5,815	332.21	8.18
940914	골프장캐디	2,912	8,106	243	278.37	8.34	4,100	10,782	323	262.98	7.88
940915	목욕관리사	730	8,589	258	1,176.58	35.34	440	5,523	166	1,255.23	37.73
940918	퀵서비스배달원	100,831	654,655	13,612	649.26	13.5	334,816	1,979,601	48,096	591.25	14.3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2) 인적용역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경비율의 증감률 비교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업종별로 수입금액의 변화가 연도별로 다르게 관찰되기 때문에 경비율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고려되는 것이 과세 형평 관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인적용역 사업의 특성상 매년 큰 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제약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금액이 평균적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경비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과세 형평 관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반대로 수입금액이 매년 감소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경비율은 고정되어 있다면, 이는 과세 부담의 역진성 문제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

이를 검토하고자 수입금액과 경비율의 연도별 변동을 업종별로 비교해본다. <표 Ⅲ-11>~<표 Ⅲ-13>에서 1인당 연간 지급금액,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동계수를 보여준다. 1인당 연간 지급금액의 기초 통계를 보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연간 지급금액의 연도별 변화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인 미디어의 속성상 매년 일정한 수준의 수입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금액을 달성하고 있는 업종은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이다.

<표 Ⅲ-11> 인적용역 사업자의 1인당 연간 지급금액(2016~2021년)의 변동계수

(단위: 만원)

업종코드	업종명	평균 (M)	표준편차 (SD)	변동계수 (SD/M)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863.50	416.30	0.482
940906	보험설계사	5636.82	516.57	0.092
940907	음료품배달원	1141.83	230.51	0.202
940912	개인간병인	1246.69	163.80	0.131
940913	대리운전기사	276.31	29.14	0.105
940914	골프장캐디	262.00	16.88	0.064
940915	목욕관리사	1408.70	336.23	0.239
940918	퀵서비스배달원	646.88	54.48	0.08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보험설계사는 전속성이 높은 인적용역 사업자라는 점에서 수입금액의 안정성이 이해가 되는 바이다. 골프장 캐디 역시 전속성이 비교적 높다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Ⅲ-12〉 인적용역 사업자의 기준경비율(2018~2022년)의 변동계수

(단위: %)

업종코드	업종명	평균 (M)	표준편차 (SD)	변동계수 (SD/M)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16.13	2.48	0.154
940906	보험설계사	26.00	2.18	0.084
940907	음료품배달원	26.80	3.54	0.132
940912	개인간병인	16.78	3.63	0.216
940913	대리운전기사	22.42	4.05	0.180
940914	골프장캐디	14.36	1.89	0.132
940915	목욕관리사	20.62	3.00	0.145
940918	퀵서비스배달원	27.16	2.09	0.07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Ⅲ-13〉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2018~2022년)의 변동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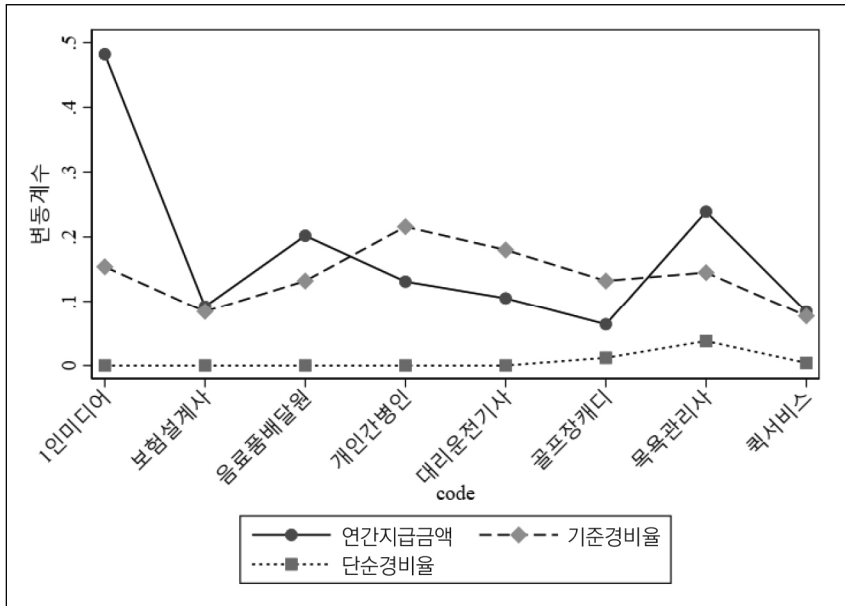
(단위: %)

업종코드	업종명	평균 (M)	표준편차 (SD)	변동계수 (SD/M)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64.10	0.00	0.000
940906	보험설계사	77.60	0.00	0.000
940907	음료품배달원	80.00	0.00	0.000
940912	개인간병인	80.20	0.00	0.000
940913	대리운전기사	73.70	0.00	0.000
940914	골프장캐디	66.94	0.80	0.012
940915	목욕관리사	71.84	2.74	0.038
940918	퀵서비스배달원	79.16	0.33	0.00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Ⅲ-12〉와 〈표 Ⅲ-13〉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기초 통계를 보여준다. 수입금액의 변동 폭이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기준경비율의 변동 폭은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 개인 간병인(업종코드 940912)의 경우 기준경비율의 변동 폭은 비교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았지만, 수입금액의 변동성은 높은 편이 아니다. 단순 비교하면 수입금액의 변동에 따라 기준경비율이 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순경비율의 경우에는 연도별 변화가 거의 없어 비교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그림 Ⅲ-3] 1인당 연간 지급금액,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변동계수



자료: 저자 작성

〈표 Ⅲ-14〉 인적용역 사업자 수입금액 및 기준경비율

(단위: 만원, %)

업종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입		416.95	932.67 (+)	1,240.89 (+)
	경비율		19.2	13.4 (-)	16.8 (+)
보험설계사	수입	5,450.91	5,845.91 (+)	6,302.95 (+)	6,067.24 (-)
	경비율	29.5	26.6 (-)	23.9 (-)	25 (+)
음료품배달원	수입	723.58	1,249.71 (+)	1,363.51 (+)	1,306.29 (-)
	경비율	23.6	22.4 (-)	29.1 (+)	30.2 (+)
개인간병인	수입	1,178.50	1,269.46 (+)	1,401.75 (+)	1,465.00 (+)
	경비율	12.5	16.3 (+)	14.7 (-)	18.4 (+)
대리운전기사	수입	260.08	273.46 (+)	275.65 (+)	332.21 (+)
	경비율	21.4	17.1 (-)	21.4 (+)	24.1 (+)
골프장캐디	수입		244.66	278.37 (+)	262.98 (-)
	경비율		15.8	12.6 (-)	12 (-)
목욕관리사	수입		1,794.28	1,176.58 (-)	1,255.23 (+)
	경비율		16.7	20.9 (+)	23 (+)
퀵서비스배달원	수입		700.13	649.26 (-)	591.25 (-)
	경비율		25.3	30.4 (+)	27.4 (-)

주: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 여부. (+)는 전년 대비 증가, (-)는 전년 대비 감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인적용역 사업자의 직종별로 수입금액과 경비율의 관계를 살펴본다. 〈표 Ⅲ-14〉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직종별 수입금액과 기준경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2017년 귀속~2020년 귀속)까지 제시하고, 증감 여부를 표의 괄호 안에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개인간병인의 2018년 수입금액은 평균 1,178만원이었고, 기준경비율은 12.5%였다. 2019년에 이들의 평균 수입금액은 1,269만원으로 약 90만원 이상 혹은 약 7% 이상 증가하였고, 경비율은 16.3%로 약 4%p 혹은 30% 이상 증가하였다. 2020년에도 이들의 평균 수입금액은 2019년 대비 약 10% 이상 증가하였지만, 경비율은 이와는 반대로 약 10% 감소하였다. 2021년에는 평균 수입금액과 경비율이 둘 다 증가하였다. 검토한 인적용역 사업자 직종들 전부 평균 수입금액의 증감과 경비율의 증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비용 구

조가 대체로 인건비인 측면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연도별 증감 여부가 매년 달라지는 뚜렷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 3)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비율과 근로소득공제율 비교

지금까지 기초 통계를 살펴본 결과 경비율이 매년 여러 경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조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입금액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수입금액만이 경비율 산정에 유일한 고려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인적용역 사업자들에 대한 경비율 수준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경비율과 수입금액의 간극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재 경비율이 인적용역 사업자 간, 혹은 다른 사업자, 혹은 근로소득자와의 과세 형평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소득을 올리지만 자영 사업자들과는 노동의 특성이 매우 다르다. 오히려 근로소득자와의 유사성이 높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표현으로 근로자의 성격을 대변한다. 따라서 우선 근로소득자와의 경비율 형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 한도는 별도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의 개념은 근로소득공제율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근로소득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다<sup>21)</sup>(〈표 III-15〉).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액의 70%를 공제하고,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인 경우  $350\text{만원} + (\text{총급여액} - 500\text{만원}) \times 40\%$ 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총급여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1,475\text{만원} + (\text{총급여액} - 1\text{억원}) \times 2\%$ 를 공제한다. 이를 실효 공제율 개념으로 환산해보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최소 50%에서 최대 7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총급여액이 1,500만원에서 4,5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최소 26.6%에서 최대 50% 공제율이 적용된다. 총급여액이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최소

21) 이 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와 관련한 발표자료 안종석(2022)에서 지적된 바 있다.

14.75%에서 26.6%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액이 1억원 초과인 근로소득자는 최대 14.7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표 Ⅲ-15〉 근로소득공제율

(단위: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율	실효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	50~7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5	26.6~50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	14.75~26.6
1억원 초과	2	~14.75

자료: 국세청, 「근로소득」,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5&cntntsId=7871>, 검색일자: 2023. 10. 8.

〈표 Ⅲ-16〉은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총급여액, 소득공제금액, 공제율을 1인당 평균값을 계산하여 보여준다. 근로소득자 전체의 1인당 총급여액은 약 4,035만원이었으며, 소득공제율은 평균 23.7%였다.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5,384만원, 평균 근로소득공제율은 21.19%이며,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소득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1,539만원, 평균 근로소득공제율은 40.24%로 결정세액 있는 근로소득자 대비 약 2배 가까이 높았다. 총급여액이 증가할수록 소득 공제율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평균 수입금액과 평균 경비율을 단순 비교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평균 수입금액과 유사한 수준의 근로소득자 총급여액 구간에 대해 연도별 근로소득공제율을 살펴보면 〈표 Ⅲ-17〉과 같다.

〈표 Ⅲ-16〉 총급여액, 소득공제금액, 공제율(2021년)

(단위: 백만원, %)

총급여액	1인당 총급여액	소득공제금액	공제율
근로소득자 전체	40.35	9.58	23.74
결정세액이 있는 자	53.84	11.41	21.19
1천만 이하	4.50	-	-
1.5천만 이하	14.31	7.22	50.48
2천만 이하	17.65	7.90	44.74
3천만 이하	24.82	8.97	36.16
4천만 이하	34.87	10.48	30.05
4.5천만 이하	42.45	11.62	27.37
5천만 이하	47.46	12.12	25.54
6천만 이하	54.82	12.49	22.79
8천만 이하	69.23	13.21	19.08
1억 이하	88.88	14.19	15.97
2억 이하	129.02	15.33	11.88
3억 이하	237.08	17.49	7.38
5억 이하	372.61	20.20	5.42
10억 이하	666.54	26.08	3.91
10억 초과	2056.96	53.94	2.62
결정세액이 없는 자	15.39	6.19	40.24
1천만 이하	4.88	3.06	62.73
1.5천만 이하	12.27	6.41	52.23
2천만 이하	17.40	7.86	45.17
3천만 이하	24.90	8.99	36.08
4천만 이하	34.13	10.37	30.38
4.5천만 이하	42.23	11.59	27.43
5천만 이하	47.19	12.11	25.66
6천만 이하	53.77	12.44	23.13
8천만 이하	65.97	13.05	19.78
1억 이하	87.48	14.12	16.15
1억 초과	150.48	15.76	10.4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Ⅲ-17〉 근로소득자의 연도별 총급여액과 소득공제율

(단위: %)

총급여액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근로소득자 전체	26.19	25.56	25.18	24.92	24.53	23.74
결정세액이 있는 자	22.67	22.37	22.26	22.22	21.80	21.19
1.5천만 이하	50.46	50.47	50.48	50.50	50.49	50.48
2천만 이하	45.04	44.96	44.32	44.68	44.69	44.74
3천만 이하	36.27	36.25	36.34	36.46	36.29	36.16
4천만 이하	30.07	30.08	30.06	30.07	30.06	30.05
4.5천만 이하	27.36	27.36	27.36	27.37	27.37	27.37
5천만 이하	25.54	25.54	25.54	25.54	25.54	25.54
6천만 이하	22.76	22.78	22.79	22.80	22.79	22.79
결정세액이 없는 자	41.85	41.21	40.36	40.18	40.13	40.24
1천만 이하	62.41	62.71	62.66	62.76	62.89	62.73
1.5천만 이하	52.15	52.15	52.21	52.24	52.24	52.23
2천만 이하	45.54	45.37	44.73	45.14	45.04	45.17
3천만 이하	36.37	36.35	36.27	36.34	36.21	36.08
4천만 이하	30.23	30.25	30.32	30.36	30.37	30.38
4.5천만 이하	27.40	27.41	27.42	27.42	27.43	27.43
5천만 이하	25.65	25.64	25.64	25.64	25.66	25.66
6천만 이하	23.14	23.14	23.14	23.14	23.17	23.1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단순히 계산해본 실효 근로소득공제율은 연도별로 소폭 감소하는 경우도 발견되지만 대체로 연도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근로소득공제율과 근로소득공제 구간에 변화가 없고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공제율의 연도별 변화가 적은 것은 앞서 살펴본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비율의 연도별 변화와 대비된다.

〈표 Ⅲ-18〉은 비슷한 수입금액(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인적용역 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경비율(근로소득공제율)을 직접 비교하였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평균적으로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의 연수입을 올리고 있고, 이들의 평균적인 경비율(기준경비율)은 연도별로 비슷한 구간의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율과 유사하다. 근로자의 종속적인 성격 및 근로의 특성이 일반 근로

소득자와 보험설계사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표에서 관찰된 유사한 경비율 수준은 과세 형평 차원에서 특별히 조정되어야 될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반면, 다른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비슷한 수입 금액(총급여액) 구간에서 경비율과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율에서 평균적으로 격차가 관찰된다. 보험설계사를 제외한 다른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평균적인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인 2,400만원(2022년까지)보다 작다는 점을 고려해 단순경비율로 비교한다. 예를 들어, 음료판매달원의 경우 경비율은 80%인 반면, 비슷한 수준의 수입(총급여액)을 올리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율은 30%p 낮은 50%에 불과하다. 다른 직종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동일하게 발견된다. 일부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의 수준은 높은 편이며, 이러한 점은 연도별로도 계속해서 관찰된다. 근로소득공제율이 소폭이나마 감소하는 등의 변화가 있는 반면, 인적용역 사업자들에 대한 경비율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소득파악과 전 국민 고용보험의 논의 과정에서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주된 관심 집단이었던 것은 근로자와 성격이 유사하고, 점차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던 것을 되돌아볼 때, 소득금액의 산정에 적용하는 경비율의 격차가 지나치게 큰 것은 향후 과세 형평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퀵서비스배달원 같이 연료비 등 명확하게 포착 가능한 추가적인 비용을 감안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추계신고 시 경비율의 지나친 차이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가 근로 및 노동의 속성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비 구조의 차이 때문인지를 살펴봐야 하며, 이는 다음 소절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Ⅲ-18〉 인적용역 사업자(일부) 단순경비율의 연도별 변화

(단위: %)

업종명	2018	2019	2020	2021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64.1	64.1	64.1
		(50.50)	(50.5)	(50.5)
보험설계사	29.5	26.6	23.9	25.0
	(23.1)	(23.1)	(23.2)	(23.1)
음료품배달원	80.0	80.0	80.0	80.0
	(50.5)	(50.5)	(50.5)	(50.5)
개인간병인	80.2	80.2	80.2	80.2
	(50.5)	(50.5)	(50.5)	(50.5)
대리운전기사	73.7	73.7	73.7	73.7
	(50.5)	(50.5)	(50.5)	(50.5)
골프장캐디	65.5	67.3	67.3	67.3
	(50.5)	(50.5)	(50.5)	(50.5)
목욕관리사	69.8	69.8	70.3	73.3
	(44.3)	(44.7)	(44.7)	(44.7)
퀵서비스배달원	78.8	78.8	79.4	79.4
	(50.5)	(50.5)	(50.5)	(50.5)

주: 괄호 안은 비슷한 수입금액(총급여액)의 평균 근로소득공제율을 의미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귀속 경비율 고시」, <https://law.go.kr/LSW/admRulLslnfOP.do?admRulSeq=2100000221192>, 검색일자: 2023. 5. 31.

#### 4)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비율과 근로·자녀장려금의 업종별 조정률 비교

경비율의 적정 수준과 관련하여 비교할 수 있는 주요 제도는 근로·자녀 장려금의 업종별 조정률이다. 업종별 조정률은 사업소득자의 근로·자녀 장려금의 기준이 되는 총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소득조정 장치이다. 사업 소득자에 한해서는 사업수입금액에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조정률을 곱하여 총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이 금액과 근로·자녀 장려금의 수급 기준금액을 비교하여 수혜 여부를 결정한다.

〈표 Ⅲ-19〉는 사업소득자에 적용하는 업종별 조정률을 업종별로 분류한 표이다. 또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단순경비율을 일부 사업자에 대해 〈표 Ⅲ-19〉에 조정률과 비교하였다. 예를 들어, 도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이 93.02%이기 때문에 이를 소득 환산율로 재계산하면 6.98%이다. 이는 도매업에 대한 소득 조정률 20%보다 낮은 수준으로 두 기준의 차이는 13.01%p이다. 숙박 및 운수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82.58%이며, 이를 소득 환산율로 재계산하면 17.42%이고, 이 역시 조정률 55%와 37.57%p 차이 난다.

인적용역 사업자에 적용하는 소득 적용률은 90%이다. 반면 인적용역 사업자의 평균 단순경비율을 소득 환산율로 계산하면 평균 34.3%로 두 기준의 차이는 55.7%p이다. 세부 업종별 비교는 <표 Ⅲ-20>에 제시한다. 개인 간병인의 경우 두 기준의 차이가 9.8%p로 검토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 가운데 가장 작았으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경우 25.9%p로 두 기준의 차이가 가장 컸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이다. 앞서 검토한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연간 수입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면서,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복수의 사업소득을 올리는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점점 많아지지만, 아직은 10%를 상회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김문정·최인혁, 2022). 근로장려금의 정책 목적이 근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있기 때문에 과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비율의 적용과 반드시 같은 구조를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정책별로 비용 인정 부분에 대해 차등적으로 적용할 경우, 자칫 사업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나 납세에 대한 유인 구조를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정책별로 비용을 차등 적용하게 되면 객관화된 자료에 대한 검증이 없는 정책 입안/집행이라는 잘못된 신호(signal)로 비춰질 수 있다.

〈표 Ⅲ-19〉 근로·자녀 장려금 적용 업종별 조정률 및 평균 단순경비율

(단위: %, %p)

업종	조정률 (A)	100- 단순경비율 (2022년 귀속) (B)	차이 (A-B)
도매업	20	6.98	13.01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10.09	14.90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5.87	24.12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8.84	31.16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8.11	36.88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17.42	37.57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23.06	36.94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17.95	52.04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34.82	40.17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34.30	55.70

주: 단순경비율은 각 업종 분류에서 굵은 글자로 표시한 업종의 단순 경비율을 평균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검색일자: 2023. 6. 1

〈표 Ⅲ-20〉 근로·자녀 장려금 적용 업종별 조정률 및 일부 인적용역 사업자 단순경비율

(단위: %, %p)

업종	조정률 (A)	100- 단순경비율 (2022년 귀속) (B)	차이 (A-B)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90	64.1	25.9
보험설계사	90	77.6	12.4
음료품배달원	90	80.0	10.0
개인간병인	90	80.2	9.8
대리운전기사	90	73.7	16.3
골프장캐디	90	67.3	22.7
목욕관리사	90	76.0	14.0
퀵서비스배달원	90	79.4	10.6

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검색일자: 2023. 6. 1.

다른 업종에서도 대체적으로 근로·자녀 장려금의 소득 인정 비율이 과세 목적의 소득 인정 비율보다 높은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근로 유인의 정책 목적과 과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원칙 및 방향이 다르고, 이에 따라 적용 기준은 다를 수 있다. 다만, 그 차이가 업종별로 이질적이고 업종의 세부 분류로 범위를 좁혀 비교할 경우 그 차이가 더욱 이질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적용역 사업자가 속해 있는 집단의 경우, 두 기준의 차이가 다른 업종에 비해 크고 도매업의 경우에는 13%p로 그 차이가 가장 작다. 두 기준의 차이가 반드시 업종별로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지나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고의 주제는 아니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근로장려금의 정책 목적을 더 반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기준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업종 간 두 기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표 Ⅲ-21>과 [그림 Ⅲ-4]에서 소득세 기장신고 비율, 추계신고 비율 등을 참고하여 검토한다. 단순경비신고가 높은 업종이 조정률과 단순경비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경향이 관찰되지만 뚜렷한 양(+)의 상관성이라 해석하기는 어렵다. 경비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업종들에 대해 정부 정책의 집행 차원에서도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자와의 비교, 다른 제도와의 비교 등 기초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한 일관적 기준을 찾을 수는 없다. 단순경비율 제도 자체가 없는 미국의 경우, 과세 목적 소득산출과 근로장려금의 소득산출 과정이 동일하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세금 부과와 조세지출 간의 기준의 정합성을 추구하고 비용의 장부기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제도 간 단일하고, 정확한 소득금액을 파악 및 확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기술 발전 등으로 비용의 정확한 집계 역시 과거보다 개선되었다는 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경비의 정확한 반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경비율에 대한 적용 범위를 좁혀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근로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의 문제를 살펴보았듯이 단순경비율의 하향 조정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근로

장려금의 조정률처럼 단순경비율 역시 큰 틀에서 세부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운영하되,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율처럼 수입금액에 따른 차등

〈표 Ⅲ-21〉 업종별 장부기장 및 경비율 신고자(2021년 귀속)

(단위: 조원, 억원,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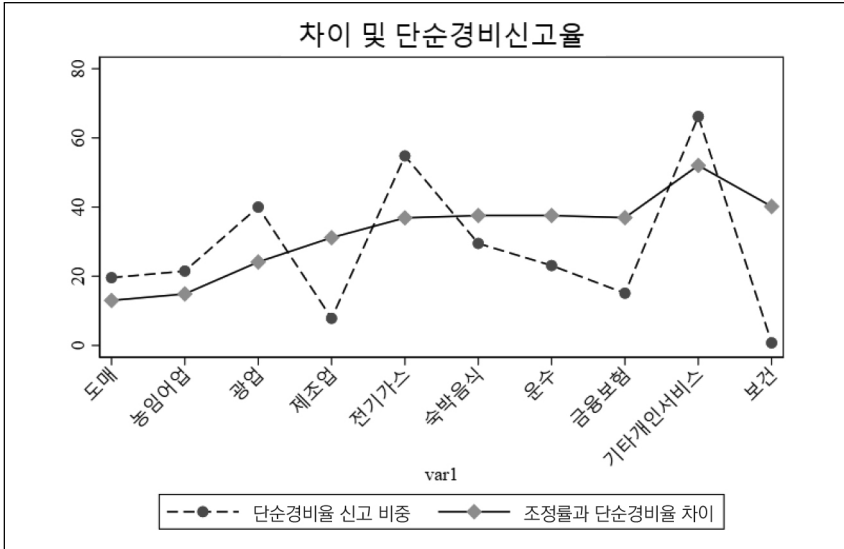
업종	수입 금액	1인당 평균수입 금액	인원	간편 장부신고	기준 경비율 신고	단순 경비율 신고
도매업(도매 및 소매)	411.4	3.990	1,031,239 (100)	284,953 (27.6)	80,815 (7.84)	202,604 (19.6)
농·임·어업	7.428	4.439	16,735 (100)	3,039 (18.2)	4,673 (27.9)	3,596 (21.5)
광업	0.167	3.226	517 (100)	86 (16.6)	122 (23.6)	207 (40.0)
제조업	152.7	4.450	343,223 (100)	61,950 (18.0)	38,746 (11.3)	26,895 (7.84)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1.449	0.474	30,545 (100)	5,926 (19.4)	5,121 (16.8)	16,732 (54.8)
숙박 및 음식점업	123.6	1.780	686,934 (100)	241,533 (35.2)	51,922 (7.56)	202,604 (29.5)
운수업(운수 및 창고업)	41.6	1.021	407,063 (100)	202,163 (49.7)	48,692 (12.0)	94,201 (23.1)
금융 및 보험업	1.864	1.127	16,544 (100)	8,262 (49.9)	461 (2.79)	2,500 (15.1)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기타 서비스) (인적용역 제외)	100.8	0.300	3,366,523 (100)	772,598 (22.9)	113,497 (3.37)	2,228,071 (66.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 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서비스업	79.9	10.219	78,254 (100)	667 (0.85)	195 (0.25)	583 (0.75)

주: 괄호 안은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Ⅲ-4] 단순경비율 신고비중 및 기준별 차이

(단위: %, %p)



자료: 저자 작성

공제율 적용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인적용역 사업자와 다른 직종의 과세 형평 문제는 최소화하면서, 인적용역 사업자 내에서 수입금액에 따른 세 부담의 차이를 조정하여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납세 협력 차원에서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소절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경비율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 5)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경비율 수준 검토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경비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별도의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경비의 구성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단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경비 설문을 통해 경비율의 적정 수준과 필요경비 항목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 신고 시 대다수의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가장신고가 아

년 추계신고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비에 대한 기초 자료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된다. 경비와 관련한 주요 조사 항목은 <표 Ⅲ-22>와 같다.

설문조사는 인적용역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지출한 경비를 토대로 구축한 내용과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경비율 수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추정한 경비율과 실제 제도에서 활용되는 경비율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우선 <표 Ⅲ-23>은 응답자의 일부 특성별 경비율 제도 인지 여부와 관련한 기초 통계를 보여준다. 응답 표본 전체 500명 가운데 경비율을 잘 인지하는 응답자는 3%에 불과한 반면, 경비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48.4%이다. 종사업종별로 살펴보면, 응답자가 택배기사인 경우 경비율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9.3%, 퀵서비스 기사는 43.8%, 플랫폼 라이더는 47.0%로 큰 차이는 없다.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지만 사업자 등록을 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비율이 37.8%로 미등록자의 비율인 50.5%보다 크게 작다. 또한 경비율 제도를 잘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사업자 등록자는 6.1%, 사업자 미등록자는 2.4%로 역시 크게 차이난다. 사업자 등록을 한 응답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를 비롯한 세제 시스템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 비율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22> 설문조사: 조사항목

항목	주업종	부업종1	부업종2
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은 매출액이며, 보통 귀하께서 계약 업체와 맺은 계약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금액			
업무 관련 자산 구입 유지 보수비(컴퓨터, 노트북 등의 구입 유지 관련 비용)			
출장 교통비 및 숙박비(택시 이용료도 포함)			
업무 공간 임차료(공유오피스 대여비도 포함)			
업무용 차량 유지비(자동차 보험료, 운전자 보험료, 주유비, 수리비, 통행료 등)			

〈표 Ⅲ-22〉의 계속

항목	주업종	부업종1	부업종2
소모품비			
통신비			
교육훈련비(강의 및 업무 관련 세미나 참석 비용)			
도서구입 및 인쇄비			
광고선전비(판촉물 제작, 오프라인, 온라인 광고 마케팅)			
의상비(프리랜서 아나운서 등 방송 출연시 착용한 의상)			
접대비(업무관련된 지출)			
경조사비			
외주 용역비(업무와 관련있는 외주용역비)			
대출이자(사업 관련 대출 이자비용)			
기타(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비용)			

자료: 저자 작성

〈표 Ⅲ-23〉 설문조사 결과: 경비율 인지 여부의 기초 통계

(단위: %)

구분	전혀 알지 못한다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	잘 알고 있다
전체	48.4	48.6	3.0
남성	50.2	46.6	3.2
여성	40.2	57.6	2.2
택배기사	49.3	49.8	0.9
퀵서비스 기사	43.8	54.5	1.7
플랫폼 라이더	47.0	48.6	4.5
사업자 등록	37.8	56.1	6.1
사업자 미등록	50.5	47.1	2.4

주: 설문과 관련한 자세한 기초 통계는 부록에 제시함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 저자 작성

〈표 Ⅲ-24〉는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걱정 경비율에 대한 통계를 제시한다. 전체 응답 표본이 응답한 걱정 경비율의 평균값은 22.03%이며, 각 집단별 응답 결과도 유사하다. 사업자 등록을 한 응답자의 경우 걱정 경비율 수준을 25.06%로 생각하고 있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응답자와 전체 평균

의 적정 경비율 응답 수준보다 높다. 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첫째, 사업자 등록을 한 응답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등 소득세 신고 체계에 더 익숙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소득세 산정 체계에 더 익숙할 가능성이 있다. 높은 경비율이 응답자들의 세 부담 경감과 상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적정 경비율 수준을 높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사업자 등록을 한 응답자의 경우 실제 지출한 경비가 사업자 미등록 응답자들보다 높아 이러한 현실이 응답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

〈표 Ⅲ-24〉 설문조사 결과: 적정 경비율 수준

(단위: %)

구분	경비율 평균
전체	22.03
남성	21.99
여성	22.23
택배기사	22.36
퀵서비스 기사	21.86
플랫폼 라이더	21.04
사업자 등록	25.06
사업자 미등록	21.44

주: 설문과 관련한 자세한 기초 통계는 부록에 제시함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설문조사 결과 종합소득세 신고 인지 여부와 실제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응답자는 각각 69.5%, 73.2%인 반면, 사업자 미등록 응답자의 경우 그 비율은 각각 65.8%, 66.0%였다. 사업자 등록을 한 응답자의 경우 총수입(2023년 1월 기준)은 평균 203.1만원, 총비용은 157.3만원으로 총수입 대비 경비의 비율은 약 77.4%인 반면, 사업자 미등록 응답자의 경우 총수입은 147.7만원, 총비용은 97.5만원으로 총수입 대비 경비의 비율은 66.0%였다. 사업자 등록 응답자의 경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응답자들의

실제 총수입 대비 경비율보다 응답자들이 걱정 경비율로 생각하는 비율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응답한 총수입과 총비용을 토대로 계산한 경비율의 산술평균은 현재 경비율 제도의 단순경비율 값과 유사하며, 응답자들이 걱정 경비율 수준이라고 응답한 값은 현재 경비율 제도의 기준경비율 값과 유사하다. 다만, 이 비율은 연도별 설문, 즉,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실제 경비율 응답과도 차이가 있어, 2023년의 응답은 10월 기준으로 계절적 효과가 반영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연도별로 응답자들의 실제 경비율은 <표 Ⅲ-25>에 정리하였다. 2020년 응답자의 평균 경비율은 34.6%, 2021년 32.47%, 2022년 32.78%로 응답된 걱정 경비율 수준보다는 높았지만, 2023년 10월 기준 실제 경비율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하위 집단별로 실제 경비율의 이질적 특성이 관찰되긴 하지만 아주 큰 차이는 아니다. 사업자 등록이 된 응답자의 평균 경비율은 2020

<표 Ⅲ-25> 설문조사 결과: 경비율

(단위: %)

구분/연도		경비율
2020		34.60
2021		32.47
2022		32.78
사업자 등록자	2020	38.93
	2021	38.30
	2022	36.22
사업자 미등록자	2020	33.37
	2021	31.02
	2022	32.09
총수입 2,400만원 초과자	2020	41.57
	2021	37.33
	2022	36.25
총수입 2,400만원 이하자	2020	29.87
	2021	28.42
	2022	30.68

주: 설문과 관련한 자세한 기초 통계는 부록에 제시함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 저자 작성

년 38.93%, 2021년 38.30%, 2022년 36.22%였으며, 사업자 미등록 응답자의 평균 경비율은 2020년 33.37%, 2021년 31.02%, 2022년 32.09%로 사업자 등록 응답자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총수입 2,400만원 초과 응답자의 경우 36~41% 정도의 경비율이며, 총 수입 2,400만원 이하의 응답자의 경비율 수준은 30%로 이 역시 실제 단순 경비율 수준보다는 많이 낮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도에서 적용 중인 경비율은 매년 업종별 경비를 조사하여 경비율을 갱신하고 있지만, 본고에서 조사한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실제 경비 수준과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경비율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 검토한 설문 대상이 인적용역 사업자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제도에서 적용하는 경비율 수준과 본고에서 추정하는 적정 경비율 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경비율 산정과 관련된 보다 공개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실제 경비 지출 수준과 적정 경비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다면 본고의 설문에서 조사한 것처럼 항목별 경비 반영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겠으나, 설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경비 지출과 적정 경비율 수준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총수입 금액이 매우 낮은 경우 납세협력비용 등을 감안하고 소득세 신고의 유인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높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본고의 설문조사에서 파악한 경비율 수준이 제도의 경비율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정당성을 획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는 경비율에 대해 조금 더 엄격하게 과세당국이 접근한다면 사업자들 간 또한 근로자들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설문에서는 추가적으로 기장신고 대신 추계신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비용 증빙서류를 정리하기 힘들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21.6%에 불과하여 기장신고 혹은 비용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이 높은 편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단순 설문조사 분석결과로도 재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대한 단순경비율의 조정 여력이 있다는 점이다. 경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매년 반복되는 경비율 조사 과정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어 경비율 결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적정 수준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

## IV.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사회보험 제도<sup>22)</sup>

---

### 1. 고용보험

#### 가. 도입 및 적용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년 12월 23일 발표)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보험 설계사를 비롯한 12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들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2022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추가로 편입되었다. 2022년 7월부터는 화물 차주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 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그리고 골프장 캐디까지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었다.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선제적 작업인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도 같이 진행되었다.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들은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또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받기 혹은 연간 주기에서 매월 주기로 단축되어 제출하게 되었다. 소득 지급액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의 미제출, 지급사실 불분명, 지연제출 등의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2024년 1월부터는 인적용역 대상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정책 도입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고용 형태가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고용보험 대상에 대한 정의도 새

---

2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적용역 사업자 대신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롭게 변경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산업이 확대되면서, 특수형태의 고용근로종사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고용 안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노무제공자는 일반 사업자와 달리 고정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근로자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근로종사자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근로자의 성격과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 및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용근로자와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마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일반사업자, 자영사업자와 유사하면서도, 사업주와의 종속적인 계약관계에 있다는 점은 근로자와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다. 종속적인 계약관계이지만, 일반 상용 근로자처럼 일방적인 지휘 및 명령 체계를 따르지 않는 근로자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노무제공자와 관련한 고용보험 적용 등에 대한 논의는 이와 같이 노무제공자의 근로자 성격의 유사성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논의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으나, 2007년에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제도적 정비가 시작되었다. 2007년부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노무제공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무제공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노무제공자는 최근 그 대상을 확대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사도우미, 간병인, 방과 후 강사 등 일부 노무제공자를 완전히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이들의 노동 성격을 근로자와 유사하게 인정하면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점차 확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 논의가 더 활발해진 것이다.

〈표 IV-1〉 노무제공자 분류

1. 보험설계사	2.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4. 골프장 캐디
5. 택배기사	6. 퀵서비스 기사
7. 대출모집인	8.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대리운전기사	10. 방문판매원
11.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2.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13. 화물차주	14. 소프트웨어기술자
15. 운수사업자	

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산재보험 차원에서 특수근로형태종사자를 제도권으로 보다 먼저 편입시킨 반면, 고용보험 차원에서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늦게 개시되었다. 2012년 9월에 특수근로형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2021년 1월 15일 공표).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위법령이 개정되었고,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근로형태종사자 고용보험이 시행되었다.

〈표 IV-2〉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과정

구분	업종 구분	적용의 조건	급여 조건
2021년 7월 적용	12개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 1개월 이상 계약체결 시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과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1개월 미만의 경우 월 보 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 무제공 건에 대하여 고용 보험이 적용됨  2021. 7.~2021. 12.까지 는 단일 노무제공 소득 기 준, 2022. 1.~부터는 월 보수액 합산 기준	1) 급여범위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2) 수급조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고, 재취 업 노력을 하는 경우,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표 IV-2〉의 계속

구분	업종 구분	적용의 조건	급여 조건
2022년 1월~	플랫폼종사자(배달라이더 등 퀵 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도 고용보험 적용	2) 고용보험료율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4%를 곱하고, 특고, 사업주 절반씩 부담	120~270일간 구직급여
2022년 7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추(유통배송기사, 택배지, 간선기사, 특정품종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업종	3) 사업주부담방식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한 후 공단 납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료 80% 지원 가능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2021. 6. 30.,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431](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431), 검색일자: 2023. 6. 30.;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2021. 12. 29.,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126](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126), 검색일자: 2023. 6. 30.;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추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2022. 3. 4.,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307](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307), 검색일자: 2023. 6. 30.;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4.5.~5.16.)」, 2022. 4. 5.,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397](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397), 검색일자: 2023. 6. 30.;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3.16.~4.25.)」, 2023. 3. 16.,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800](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800), 검색일자: 2023. 6. 30.

## 나. 보험료 부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율은 사업주와 월급여액의 0.9%씩 부담하는 데 반해,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보수액의 0.8%씩 부담한다.

## 다. 급여

실시간 소득과약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된 것은 특수근로형태종사자 고용보험을 시행하기 위해서였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장 간 이행이 자유롭고 근속기간이 짧고, 전속성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노무제공자의 전체 소득을 고려하여 월 소득의 변동성을 계산 후, 감소수준이 충분한 경

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소득기반 실업급여’ 방식을 채택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실제로 도입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이러한 소득합산 방식에 기반하여 설계되었는데, 이 점에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의 시행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원리가 가장 선진적으로 적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이직일 전 24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일한 날)이 12개월 이상이고,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수급제한 사유란,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자발적 이직 등을 의미한다.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을 인정한다.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감소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정한다. 또는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 평균 소득 대비 30% 이상 감소한 달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정한다.

〈표 IV-3〉 구직급여 기준 비교

구분	가입기간	수급제한 사유	기타
근로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기간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 자발적 이직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불인정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피보험기간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 자발적 이직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인정

자료: 저자 정리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은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당(일급)의 60%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을 지급기간으로 하며, 이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월 보수액(「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령 기준 6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신규로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적용대

상에서 제외한다. <표 IV-5>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결정되는 근로자와 달리 기준보수의 60%로 정해진다.

<표 IV-4>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자료: 저자 정리

<표 IV-5>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비교

구분	지급수준	상한액	하한액	소정급여일수
근로자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66,000원	61,568원 (최저임금의 80%)	120~270일
노무제공자	일당의 60%	66,000원	기준보수 <sup>1)</sup> 의 60%	120~270일

주: 1) 기준보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자료: 저자 정리

실업급여 외에도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sup>23)</sup> 출산전후급여는 출산, 유산, 사산 시 받을 수 있는 급여로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첫째,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말아야 한다. 노무제공자 혹은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면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셋째,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출산전후급여 등을

23)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2022. 5.

신청하여야 한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과 지급수준은 다음과 같다. 출산 전후 연속하여 90일(다태아 120일) 지급한다. 단,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수급해야 한다. 지급수준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에 해당한다. 월평균 보수는 출산이 포함된 월의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의 월평균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상한액은 월 200만원, 하한액은 월 80만원이다.

만약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근로자’ 혹은 예술인으로서 지급받은 출산 전후휴가급여 등이 있거나, 지급기간에 근로자 혹은 노무제공자와 관련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만 지원받는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은 이들의 직종 및 노동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자의에 의한 실직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반면, 노무제공자의 경우 근로의 성격상 자의에 의한 실직을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노무제공자의 ‘실업’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가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러한 쟁점 때문에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비교적 까다롭게 설정하였지만, 여전히 소득 상한 등에 대한 기준은 미비하여 고소득 노무제공자들의 자발적 이직 및 자발적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 인정은 근로자 및 다른 노무제공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소득 상한 등 추가적인 수급 요건 개념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상한의 수준은 노무제공자들의 소득 분포의 자료 검토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2. 산재보험

2023년 하반기 기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4)</sup>

### 가. 정의 및 적용범위

현재 산재보험에서는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플랫폼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보험설계사 등 18개 직종 종사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노무제공자 적용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

산재보험 적용범위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2008년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었다. 이때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자차기사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이후에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2012년 5월 1일),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2016년 7월 1일),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2020년 7월 1일),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 2021년 7월 1일),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화물차주(자동차, 곡물가구·곡물·사료 운송, 2022년 7월 1일) 등이 새롭게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추가되었다. 2023년 7월 1일에는 기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직종인

---

24) 해당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적용특례-정의 및 적용범위」, <https://www.comwel.or.kr/comwel/paym/spec/mean.jsp>, 검색일자: 2023. 12. 17.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탁송기사·대리주차원(대리운전기사)·일반 화물차주(특정품목 화물차주)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동시에, 고용보험만 적용 중이었던 관광통역 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직종과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고소작업차·카코크레인 기사) 직종이 새롭게 산재보험 적용직종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최근 새마을금고·신협 공제모집인, 방과후학교교사(유치원 방과후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강사 포함) 등도 2024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나, 시행시기를 6개월 유예하게 되었다.

#### 나.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절차

기본적으로 노무제공을 받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과 관련된 신고를 수행해야 한다.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장은 노무제공 최초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은 당연적용된다. 일반근로자 고용 등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된다 하더라도 노무제공자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은 별도의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 신고의 내용은 노무제공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월 보수액을 신고하고,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수행해야 한다. 월 보수액신고(혹은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노무제공자 성명, 직종, 월 보수액 등을 사유발생일 다음 말일까지 매월 신고해야 한다. 노무제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종료일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변경·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다.

#### 다. 보험료 산정 및 부과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에 보험료를 곱하여 매월 산정한다. 한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사업소득과 기

타소득의 합산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이때의 '경비 공제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공제율로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 경비(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25호)는 다음과 같다.

〈표 IV-6〉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노무제공자 필요경비 공제율

(단위: %)

직종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상 경비 공제율
보험설계사	25
방문강사	22
골프장 캐디	15.6
택배기사	16.4
퀵서비스기사	27.4
대출모집인	27.5
신용카드회원모집인	28.4
대리운전기사	28.1
방문판매원	22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22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24.2
화물차주	30.3
소프트웨어기술자	15.7
방과후학교강사	16.5
관광통역안내사	25.6
어린이통학버스기사	29.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5호」, 2023. 6. 30.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의 경우 경비 공제율을 정의하지 않고, 기준보수(고용노동부 고시)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한다. 2023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기준보수 및 평균보수는 다음과 같다.

〈표 IV-7〉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 기준보수 및 평균보수 고시

직종	월 보수액	평균보수(일)
건설기계조종사	2,479,444원	82,648원
건설현장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2,699,994원	90,000원

자료: 근로복지공단, 「노무자 산재보험-보험료 산정 및 부과」, <https://www.comwel.or.kr/comwel/paym/spec/spec3.jsp>, 검색일자: 2023. 12. 17.

한편 산재보험의 직종별 요율은 직종별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직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산재보험료율은 직종별 요율에 출퇴근재해요율 0.1%를 가산하여 최종 확정된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의 직종별 요율은 0.5%인데, 산재보험료율은 해당 수치에 0.1%를 가산한 0.6%에 해당한다.

〈표 IV-8〉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

(단위: %)

노무제공자 직종	요율
보험설계사	5
건설기계조종사	34
퀵서비스기사	17
대출모집인	5
신용카드회원모집인	5
대리운전기사	18
방문판매원	8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7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7
화물차주	17
소프트웨어기술자	5
방과후학교강사	6
관광통역안내사	6
어린이통학버스기사	18

자료: 근로복지공단, 「노무자 산재보험-보험료 산정 및 부과」, <https://www.comwel.or.kr/comwel/paym/spec/spec3.jsp>, 검색일자: 2023. 12. 17.

### 3. 국민연금

국민연금에서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자에 해당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사업장 가입자는 건강보험에서의 직장가입자와 유사하여, 해당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명목기여율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50%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존재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획득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변경되지 않는다. 이는, 후술하는 건강보험에서의 소득월액과 같은 부과체계가 없어서 사업장 가입과 직접적인 월 보수액이 아닌 다른 취업소득이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근로소득이 아예 없고 인적용역 사업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 해당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납부예외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가 된다. 원칙적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과세당국에 관련한 소득지급자에 의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거나, 과세당국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득발생 내역이 국민연금공단에 전달되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보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발생 여부를 떠나서 해당 소득금액이 국민연금 보험료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소득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포함되지 않으면, 인적용역 사업자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줄겠지만, 장기적으로 본인의 노후소득 기댓값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4. 건강보험

역시 별도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용근로소득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도 논의가 없다. 단, 일용근로소득 사례처럼, 소득월액으로 포함하거나 제3의 자격을 생성하는 방향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여나금 외, 2021). 단, 제3의 자격은 '자격 중심의 사회보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및 사회보험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상황에서(이병희 외, 2023)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노무제공자와 관련된 소득정보가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공유되지 않고 차단되고 있으며,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보험료 부담으로 인하여 사용자 반발이 존재할 수 있다.

노무제공자의 경우도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기여한 수준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예상하면 이와 관련된 저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건강보험료의 경우, 자산이 존재하여 재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수준이 높았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용자가 명목상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 이를 선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무제공자 관점에서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자료를 다른 사회보험공단과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반발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조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용자 차원에서의 저항이 예상된다.

〈표 IV-9〉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업종별 산재보험, 고용보험,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적용시점 종합

구분	20.6	20.7	21.7	21.11	22.1	22.7	23.7	24.1
1. 보험설계사	WCI		WCI, RTI, EI					
2. 신용카드회원모집인	WCI		WCI, RTI, EI					
3. 대출모집인	WCI		WCI, RTI, EI					
4. 학습지교사	WCI		WCI, RTI, EI					
5. 방문강사	■	WCI	WCI, RTI, EI					
6. 택배기사	WCI		WCI, RTI, EI					
7.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WCI	RTI, EI					
8.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WCI	RTI, EI					
9. 방문판매원	■	WCI	RTI, EI					
10. 화물차주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WCI	WCI, RTI, EI					
11. 건설기계조종사(자차 해당)	WCI	WCI	WCI, RTI, EI					
11b. 건설기계조종사(자차 비해당)	■		RTI, EI					
12.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	■	RTI, EI					RTI, EI, WCI

〈표 IV-9〉의 계속

구분	20.6	20.7	21.7	21.11	22.1	22.7	23.7	24.1
1. 퀵서비스기사	WCI			WCI, RTI		WCI, RTI, EI		
2. 대리운전기사(전속성 해당)		WCI		WCI, RTI		WCI, RTI, EI		
2b. 대리운전기사(전속성 비해당)				RTI		RTI, EI		RTI, EI, WCI
1.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신설, 2022. 7.)	XXX			WCI			WCI, RTI, EI	
2. 골프장 캐디		WCI		WCI, RTI			WCI, RTI, EI	
3. 관광통역안내사(신설, 2022. 7.)						RTI, EI		RTI, EI, WCI
4. 어린이통학버스기사(신설, 2022. 7.)						RTI, EI		RTI, EI, WCI
5.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WCI, EI		
5b. 화물차주(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외 운송차주)						EI	EI, WCI	
간병인						RTI		
수하물운반원						RTI		
중고차판매원(신설, 2022. 7.)							RTI	
육실종사원						RTI		

- 주: 1. RTI: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적용  
 2. WCI: 산재보험 적용  
 3. EI: 고용보험 적용  
 4. 검은 색 표시는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

자료: 저자 정리

〈표 IV-10〉 고용형태별 명목 사회보험료 부담수준 비교(예시 1/재산 1억원)

구분	1	2	3	4	5	6	7	8	9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노무제공자 (적용업종)	노무제공자 (적용업종)	노무제공자 (미적용업종)	노무제공자 (미적용업종)
고용보험 (2022. 7. 1.~: 근로자 1.8% 예수인노무 1.6%)	근로자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노무제공자 가입	노무제공자 가입	노무제공자 미가입	노무제공자 미가입
	☞ 13,500 ☞ 17,250	☞ 13,500 ☞ 17,250	☞ 13,500 ☞ 17,250	☞ 13,500 ☞ 17,250	☞ 13,500 ☞ 17,250	☞ 12,000 ☞ 15,750	☞ 12,000 ☞ 15,750	☞ n.a. ☞ n.a.	☞ 15,000n.a. ☞ n.a.
국민연금 9%	사업장가입자	미가입	지역가입자	미가입	지역가입자	미가입	지역가입자	미가입	지역가입자
	☞ 67,500 ☞ 67,500	☞ 0 ☞ n.a.	☞ 135,000 ☞ n.a.	☞ 0 ☞ n.a.	☞ 135,000 ☞ n.a.	☞ 0 ☞ n.a.	☞ 135,000 ☞ n.a.	☞ 0 ☞ n.a.	☞ 135,000 ☞ n.a.

가정: ① 건강보험법상, 세대 내 직장가입자 존재 여부: YES  
 ② 재산(과세표준): 1억원(주택기준)  
 ③ 소득: 상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노무제공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모두 150만원이라고 가정함<sup>25)</sup>(단일소득 가정)  
 ④ 임금근로자의 경우, 1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함  
 ⑤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모두 적용되거나, 혹은 모두 비적용된 경우를 고려함  
 ⑥ 노무제공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되어 있다고 가정함

〈표 IV-10〉의 계속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원 53,170 원 53,170	원 0 원 n.a.	원 0 원 n.a.	원 162,200 원 n.a.	원 162,200 원 n.a.	원 0 원 n.a.	원 0 원 n.a.	원 162,200 원 n.a.	원 162,200 원 n.a.
산재보험 (2022. 7. 1.~: 평균 1.6%)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	미가입	미가입
	원 0 원 24,000	원 0 원 24,000	원 0 원 24,000	원 0 원 24,000	원 0 원 24,000	원 12,000 원 12,000	원 12,000 원 12,000	원 0 원 0	원 0 원 0
사회보험료 합계	원 134,170 원 161,920	원 13,500 원 41,500	원 148,500 원 41,250	원 175,700 원 41,250	원 310,700 원 41,250	원 24,000 원 27,750	원 159,000 원 0	원 162,200 원 0	원 312,200 원 0

주: 각 보험료는 주어진 가정하에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계산하였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검색일자: 2023. 7. 17.; 「고용보험료 계산기」, <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chek3.jsp>, 검색일자: 2023. 7. 17.; 「4대 보험료 모의계산기」, <https://www.4insure.or.kr/ins4/pl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0#this>, 검색일자: 2023. 7. 17.

자료: 저자 작성 및 김문정(2023b) 일부 인용

- 25) 고용보험상 노무제공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 산출방식은 세법상 산출방식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의 목적은 부과소득 수준이 서로 동일함에도 취업형태에 따라 사회보험 과세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과세제도와 사회보험 제도 간 간극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표 IV-11〉 고용형태별 명목 사회보험료 부담수준 비교(예시 2/재산 1억원)

구분	1	2	3	4	5	6	7	8	9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노무제공자 (적용업종)	노무제공자 (적용업종)	노무제공자 (미적용업종)	노무제공자 (미적용업종)
고용보험 (2022. 7. 1.~: 근로자 1.8% 예술인노무 1.6%)	근로자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노무제공자 가입	노무제공자 가입	노무제공자 미가입	노무제공자 미가입
	☞ 27,000 ₩ 34,500	☞ 27,000 ₩ 34,500	☞ 27,000 ₩ 34,500	☞ 27,000 ₩ 34,500	☞ 27,000 ₩ 34,500	☞ 24,000 ₩ 31,500	☞ 24,000 ₩ 31,500	☞ n.a. ₩ n.a.	☞ n.a. ₩ n.a.
국민연금 9%	사업장가입자	미가입	지역가입자	미가입	지역가입자	미가입	지역가입자	미가입	지역가입자
	☞ 135,000 ₩ 135,000	☞ 0 ₩ n.a.	☞ 270,000 ₩ n.a.	☞ 0 ₩ n.a.	☞ 270,000 ₩ n.a.	☞ 0 ₩ n.a.	☞ 270,000 ₩ n.a.	☞ 0 ₩ n.a.	☞ 270,000 ₩ n.a.

〈표 IV-11〉의 계속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원 106,350 췌 106,350	원 0 췌 n.a.	원 0 췌 n.a.	원 268,550 췌 n.a.	원 268,550 췌 n.a.	원 0 췌 n.a.	원 0 췌 n.a.	원 268,550 췌 n.a.	원 268,550 췌 n.a.
산재보험 (2022. 7. 1.~: 평균 1.6%)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	미가입	미가입
	원 0 췌 48,000	원 0 췌 48,000	원 0 췌 48,000	원 0 췌 48,000	원 0 췌 48,000	원 24,000 췌 24,000	원 24,000 췌 24,000	원 0 췌 0	원 0 췌 0
사회보험료 합계	원 268,350 췌 323,850	원 27,000 췌 82,500	원 297,000 췌 82,500	원 295,550 췌 82,500	원 565,550 췌 82,500	원 48,000 췌 55,500	원 318,000 췌 55,500	원 268,550 췌 0	원 538,550 췌 0

주: 각 보험료는 주어진 가정하에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계산하였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I=>, 검색일자: 2023. 7. 17.; 「고용보험료 계산기」, <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chek3.jsp>, 검색일자: 2023. 7. 17.; 「4대 보험료 모의계산기」,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검색일자: 2023. 7. 17.

자료: 저자 작성 및 김문정(2023b) 일부 인용

〈표 IV-12〉 고용형태별 명목 사회보험료 부담수준 비교(예시 3/재산 5억원)

구분	1	2	3	4	5	6	7	8	9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노무제공자 (적용업종)	노무제공자 (적용업종)	노무제공자 (미적용업종)	노무제공자 (미적용업종)
고용보험 (2022. 7. 1.~: 근로자 1.8% 예술인노무 1.6%)	근로자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노무제공자 가입	노무제공자 가입	노무제공자 미가입	노무제공자 미가입
	☞ 27,000 ☞ 34,500	☞ 27,000 ☞ 34,500	☞ 27,000 ☞ 34,500	☞ 27,000 ☞ 34,500	☞ 27,000 ☞ 34,500	☞ 24,000 ☞ 31,500	☞ 24,000 ☞ 31,500	☞ n.a. ☞ n.a.	☞ n.a. ☞ n.a.
국민연금 9%	사업장가입자	미가입	지역가입자	미가입	지역가입자	미가입	지역가입자	미가입	지역가입자
	☞ 135,000 ☞ 135,000	☞ 0 ☞ n.a.	☞ 270,000 ☞ n.a.	☞ 0 ☞ n.a.	☞ 270,000 ☞ n.a.	☞ 0 ☞ n.a.	☞ 270,000 ☞ n.a.	☞ 0 ☞ n.a.	☞ 270,000 ☞ n.a.

〈표 IV-12〉의 계속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원 106,350 썩 106,350	원 0 썩 n.a.	원 0 썩 n.a.	원 376,290 썩 n.a.	원 376,290 썩 n.a.	원 0 썩 n.a.	원 0 썩 n.a.	원 376,290 썩 n.a.	원 376,290 썩 n.a.
산재보험 (2022. 7. 1.~: 평균 1.6%)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	미가입	미가입
	원 0 썩 48,000	원 0 썩 48,000	원 0 썩 48,000	원 0 썩 48,000	원 0 썩 48,000	원 24,000 썩 24,000	원 24,000 썩 24,000	원 0 썩 0	원 0 썩 0
사회보험료 합계	원 268,350 썩 323,850	원 27,000 썩 82,500	원 297,000 썩 82,500	원 403,290 썩 82,500	원 673,290 썩 82,500	원 48,000 썩 55,500	원 318,000 썩 55,500	원 376,290 썩 0	원 66,290 썩 0

주: 각 보험료는 주어진 가정하에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계산하였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검색일자: 2023. 7. 17.; 「고용보험료 계산기」, <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chek3.jsp>, 검색일자: 2023. 7. 17.; 「4대 보험료 모의계산기」,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검색일자: 2023. 7. 17.

자료: 저자 작성 및 김문정(2023b) 일부 인용

〈표 IV-13〉 고용형태별 명목 사회보험료 부담수준 비교(예시 4/재산 15억원)

	가정: ① 건강보험법상, 세대 내 직장가입자 존재 여부: YES ② 재산(과세표준): 15억원(주택기준) ③ 소득: 상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노무제공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모두 300만원이라고 가정함(단일소득 가정) ④ 임금근로자의 경우, 1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함 ⑤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모두 적용되거나, 혹은 모두 비적용된 경우를 고려함 ⑥ 노무제공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되어 있다고 가정함								
구분	1	2	3	4	5	6	7	8	9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노무제공자 (적용업종)	노무제공자 (적용업종)	노무제공자 (미적용업종)	노무제공자 (미적용업종)
고용보험 (2022. 7. 1.~: 근로자 1.8% 예술훈노무 1.6%)	근로자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노무제공자 가입	노무제공자 가입	노무제공자 미가입	노무제공자 미가입
	☞ 27,000 ☞ 34,500	☞ 27,000 ☞ 34,500	☞ 27,000 ☞ 34,500	☞ 27,000 ☞ 34,500	☞ 27,000 ☞ 34,500	☞ 24,000 ☞ 31,500	☞ 24,000 ☞ 31,500	☞ n.a. ☞ n.a.	☞ n.a. ☞ n.a.
국민연금 9%	사업장가입자	미가입	지역가입자	미가입	지역가입자	미가입	지역가입자	미가입	지역가입자
	☞ 135,000 ☞ 135,000	☞ 0 ☞ n.a.	☞ 270,000 ☞ n.a.	☞ 0 ☞ n.a.	☞ 270,000 ☞ n.a.	☞ 0 ☞ n.a.	☞ 270,000 ☞ n.a.	☞ 0 ☞ n.a.	☞ 270,000 ☞ n.a.

〈표 IV-13〉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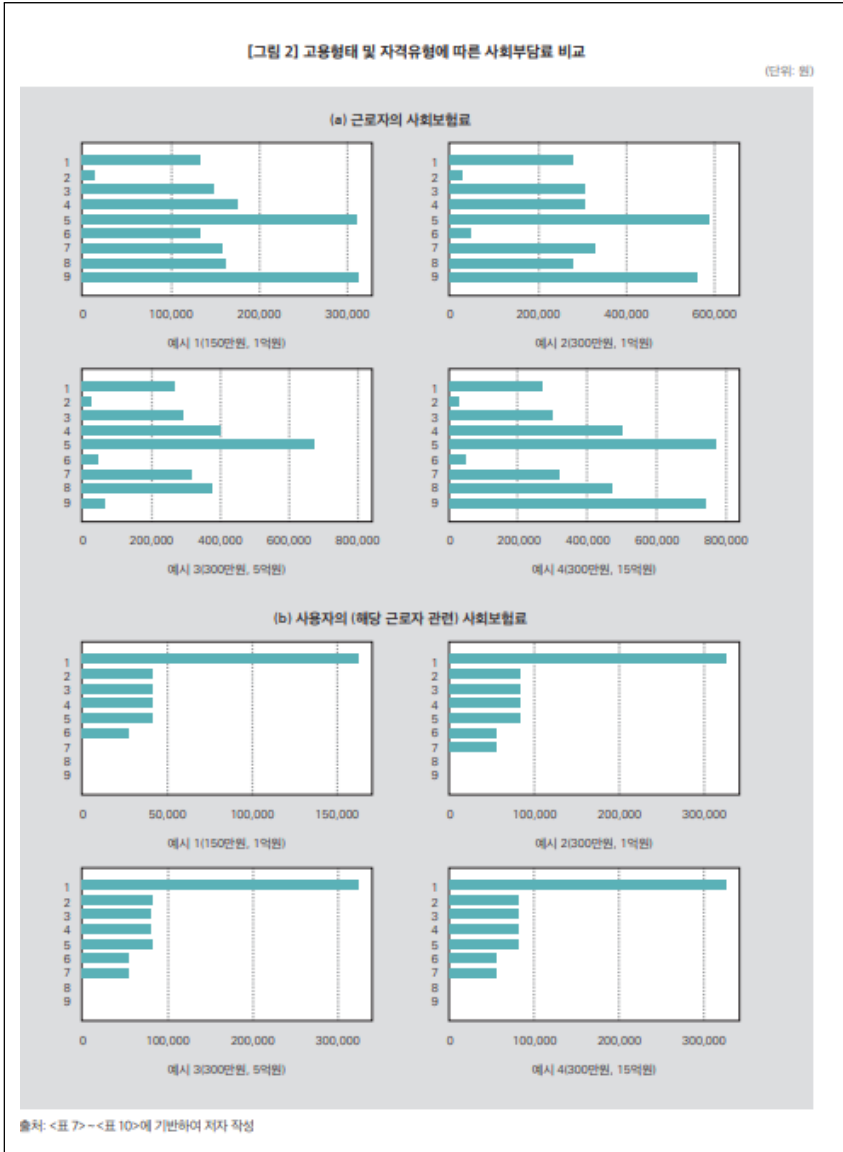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원 106,350 췌 106,350	원 0 췌 n.a.	원 0 췌 n.a.	원 471,320 췌 n.a.	원 471,320 췌 n.a.	원 0 췌 n.a.	원 0 췌 n.a.	원 471,320 췌 n.a.	원 471,320 췌 n.a.
산재보험 (2022. 7. 1.~: 평균 1.6%)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	미가입	미가입
	원 0 췌 48,000	원 0 췌 48,000	원 0 췌 48,000	원 0 췌 48,000	원 0 췌 48,000	원 24,000 췌 24,000	원 24,000 췌 24,000	원 0 췌 0	원 0 췌 0
사회보험료 합계	원 268,350 췌 323,850	원 27,000 췌 82,500	원 297,000 췌 82,500	원 498,320 췌 82,500	원 768,320 췌 82,500	원 48,000 췌 55,500	원 318,000 췌 55,500	원 471,320 췌 0	원 741,320 췌 0

주: 각 보험료는 주어진 가정하에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계산하였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I=>, 검색일자: 2023. 7. 17.; 「고용보험료 계산기」, <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chek3.jsp>, 검색일자: 2023. 7. 17.; 「4대 보험료 모의계산기」,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검색일자: 2023. 7. 17.

자료: 저자 작성 및 김문정(2023b) 일부 인용

[그림 IV-1] 고용형태 및 자격유형에 따른 사회보험 부담수준 비교



자료: 김문정(2023a), p. 48, [그림 2]

---

## V. 인적용역 사업자 대상 조세·재정 지원

---

### 1. 국민취업지원제도<sup>26)</sup>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등 크게 3가지 운영 방향을 갖고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I유형과 II유형이 있는데, 전자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후자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I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되며, 기본적으로 15~69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II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당히 포괄적인 취업인구를 대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인적용역 사업자도 요건만 맞으면 I유형이나 II유형에 지원할 수 있다. 특히 II유형에서는 ‘특정계층’, 구직자 청년, 저소득 중장년 등을 지원대상으로 상정하였는데, 여기에서 특정계층으로 22개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10번째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다.

---

26) 취업이룸-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KuaGudn.do>, 검색일자: 2023. 10. 1.을 참고하였다.

〈표 V-1〉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II 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 유형	I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li> <li>•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li> <li>• 청년: 18~34세 구직자</li> <li>•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li> <li>*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li> </ul>

자료: 취업이름-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SporTrgt.do>, 검색 일자: 2023. 10. 1.

## 2. 직업훈련 지원제도

인적용역 사업자 대상의 직업능력개발 측면의 지원제도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참여 대상 확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2021년 8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되어 종사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2022년 2월 시행). 반면,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서 적용한 ‘내일배움카드’는 2019년 4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통해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하기로 했고, 2020년부터 통합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2020년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자는 4,141명으로 전체 사용자 중의 0.4%를 차지하고 있다(김강호 외, 2021).<sup>27)</sup>

2021년 7월 1일부터 12개 직종의 인적용역 사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

27) 김강호 외(2021)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었고, 2022년 1월에는 킷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관련된 제도가 변경된 바 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더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sup>28)</sup>

직업훈련포털에 따르면, 내일배움카드는 노동시장 진입기, 노동시장 활동기, 생애전환기 등에 놓인 잠재적인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2021. 9. 29.)으로 인해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교 3학년 등으로 확대되었다. 노무제공자(고용보험법 적용 인적용역 사업자)도 대상에 해당되지만, 월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만 75세 이상인 사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월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훈련과 관련된 비용은 300만~500만원까지 지원하되,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지원된다.

훈련비 지원율은 일반 참여자는 45~80%,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이나 II유형(특정 계층)은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청, 중장년층)은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를 지원받는다.

이러한 지원비율에 더하여 추가지원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④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원) 등이 해당한다.

훈련을 성실하게 받은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

28)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 및 모바일사용자 매뉴얼-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훈련 진단·상담, 온라인 수강신청」, [https://www.hrd.go.kr/images/HRD-Net\\_Manual.pdf](https://www.hrd.go.kr/images/HRD-Net_Manual.pdf), 검색일자: 2023. 10. 1.

### 3.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 가. (참고)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sup>29)</sup>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지원한다. 이때 10명 미만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면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만약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이어야 한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데, 이때 '신규'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 동안만 지원한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기준 자산수준의 합계액이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게 된다. 사업장이나 피보험자가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반복적인 지원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상

29)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검색일자: 2023. 10. 23.

용근로자인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한 경우만 지원하고,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 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 경우, 노무제공자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니므로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만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지원대상’ 사업(피보험자 수 10인 미만)과 동일하다. 그러나 지원대상 노무제공자는 사업자의 피보험자 수 규모와는 무관하다.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를 지원하게 되며, 이때는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의 경우, ‘신규가입자’에게만 보험료를 지원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단, 최장 36개월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은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동일하다. 만약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사업으로 인한 월 보수액의 합산 금액이 26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자산 및 종합소득 금액 요건이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보험료 지원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개시되는데, 신청일 이후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다. 만약 사업주가 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매월 지원금액을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취득신고 혹은 노무제공내용 신고를 완료한 경우 등 사업장이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때에만 사회보험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4. 근로장려세제<sup>30)</sup>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및 가구원의 소득수준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 총 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월 기준 183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원(월 기준 266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월 기준 316만원)에 해당한다.

가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한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총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소득에는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등이 포함된다. 총급여액 등에는 ①, ②, ③만 포함된다. 한편, 부양자녀가 존재하고 가구의 총소득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홑벌이 혹은 맞벌이 가구에는 자녀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한편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은 <표 V-2>와 같다.

또한, 근로장려세제 수급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외에 재산요건도 만족해야 한다. 귀속연도의 6월 1일 기준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

30) 국세청,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https://www.nts.go.kr/nts/cm/cntrnts/cntrnts.do?mi=2450&cntrntsId=7781>, 검색일자: 2023. 10. 23.의 소개 내용을 인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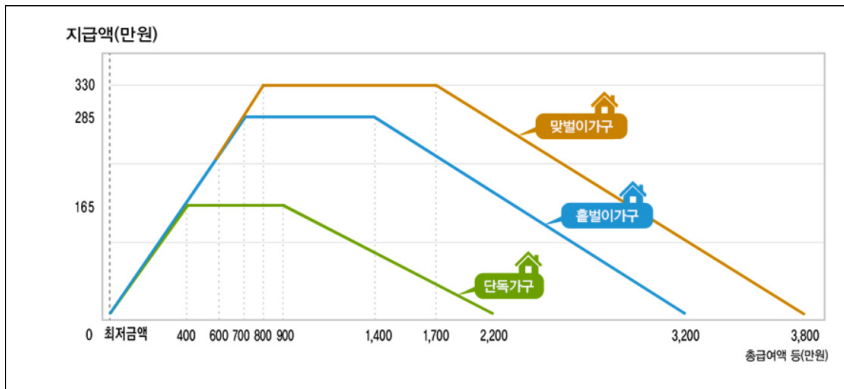
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0조의4 제3항).

한편, 귀속연도 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하고,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10% 차감한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을 차감한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한다.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1일당 22/100,0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2019년 귀속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존재하는 경우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림 V-1] 가구유형 및 총급여액별 근로장려금

(단위: 만원)



자료: 국세청,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https://www.nts.go.kr/nts/cm/cntrnts/cntrntsView.do?mi=2450&cntrntslid=7781>, 검색일자: 2023. 10. 23.

〈표 V-2〉 근로장려세제의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

(단위: %)

업종구분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다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라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마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바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아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차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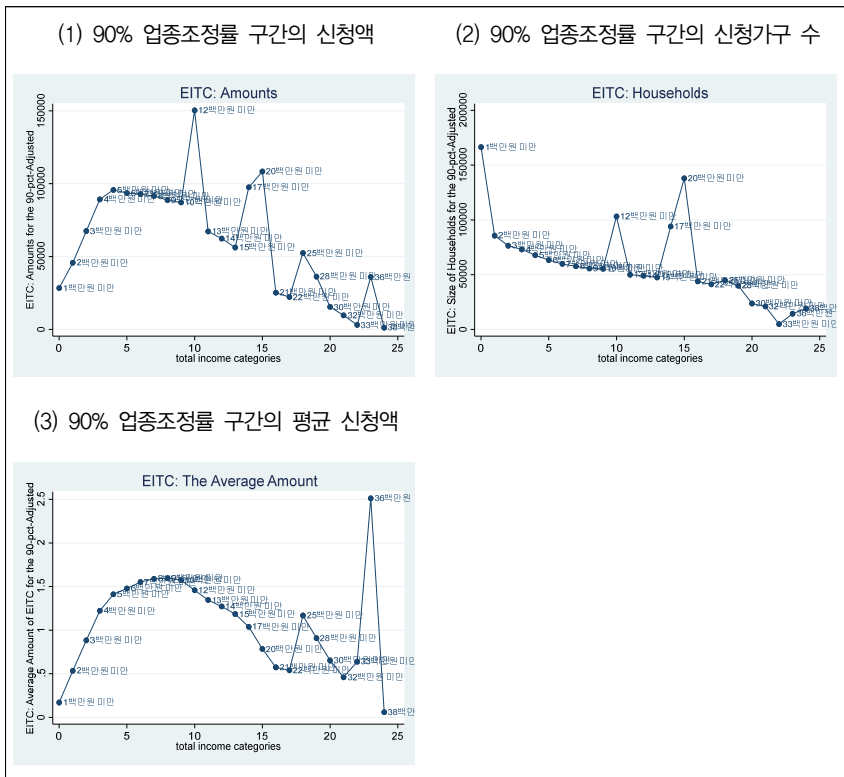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https://www.nts.go.kr/nts/cm/cntrnts/cntrntsView.do?mi=2450&cntrntslid=7781>, 검색일자: 2023. 10. 23.

임금근로자, 일반사업자, 인적용역 사업자의 유형에 상관없이 일단 소득 금액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총 소득금액이나 총 급여액 등이 계산되는 방식은 동일하다. 하지만,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총 급여액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과는 달리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90%의 조정률(‘차’ 유형)이 적용된다. 이러한 방식은(경비 수준이 크지 않은, 근로자성이 높은)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을 줄이게 되어 근로장려세제 신청대상이 되거나, 해당 가구가 점증구간에 위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021년도 귀속소득에 대하여 업종조정률에 따른 근로장려금 금액과 가구의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V-2]와 같다. 해당 그림에서 X축(횡축)은 100만원 단위의 총 소득금액 수준을 나타내며, 해당 그림은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이 90%인 경우에 국한하여 제시하고 있다. 인적용역 사업자가 속하는 90% 업종조정률에 해당하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은 초반에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이후에 줄어드

는 반면,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수는 일부 총소득금액 지점에 쏠림현상 (bunching)이 관찰되지만, 가구의 총 소득금액이 상승함에 따라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 그래프는 가구당 평균 신청금액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 신청금액은 총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의 점증·평탄·점감 구간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총 가구소득 중에서 총 급여액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V-2] 90% 업종조정률 구간(인적용역 사업자 포함) 근로장려금의 신청 현황  
(단위: 백만원, 가구)



자료: 국세통계포털, 「14-2-18. 업종별 조정률별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현황(총급여액 등)(1/2) (2021년 귀속년도)」, <https://taxis.ni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fPbYr=2023&sttsMtainfrId=20230103N01202347753>, 검색일자: 2023. 10. 23.

단, 점증·평탄·구간을 형성하는 부분 이후에 해당 수치가 평균 수준을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해당 구간에 속하는 가구의 수가 소수에 불과함에 따라 기인하는 이상치(outliers)로 해석된다.<sup>31)</sup>

마지막으로 <표 V-3>에서는 자영업자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자 유형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일반사업자), (물리적 사업장 혹은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인적용역 사업자, 그리고 그 두 가지 유형이 혼합된 경우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인적용역 사업자인데, 이는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조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조정된 사업소득 금액이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특성은 ‘주요 업태’가 ‘인적용역자’라고 하더라도 인적용역(즉, ‘보험설계, 방문판매원’, ‘인적용역’ 등)과 관련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최소 10%가량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면, 사업장 사업자나 혼합형 자영업자의 경우, 인적용역 관련 업종을 주 업종으로 신고할 확률은 각 1% 미만이거나 33~36%에 해당했다(가구 수 혹은 금액 고려시). 이러한 사실은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취약계층이 곧,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해당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경우임을 함의한다.

---

31) 한편, 다른 업종수준별로 검토하더라도 bunching의 경향성은 모두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는 ‘사업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소득수준을 조정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3〉 자영업자 유형별 근로장려금의 신청 현황

(단위: 가구, 백만원)

구분	합계 (A+B+C)		사업장 사업자 (A)		인적용역자 (B)		사업장사업자 +인적용역자 (C)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2021년 ETC [B]	2,051,052	2,212,282	429,236	531,329	1,431,762	1,452,323	190,054	228,630
근로장려금 업태별	2,051,052	2,212,282	429,236	531,329	1,431,762	1,452,323	190,054	228,630
농·임·어업	1,787	2,320	1,590	2,028	32	36	165	257
광업	50	73	44	63	0	0	6	10
제조업	26,627	32,657	21,482	26,322	154	137	4,991	6,199
전기·가스·수도업	3,788	4,088	3,463	3,730	2	2	323	357
도매업	34,546	42,363	26,962	32,632	139	99	7,445	9,633
소매업	120,291	143,222	90,660	106,107	345	268	29,286	36,847
부동산매매업	267	254	221	209	1	0	45	44
건설업	29,465	34,644	23,395	27,517	59	71	6,011	7,056
음식업	107,562	126,336	85,706	100,768	384	341	21,472	25,227
숙박업	3,341	3,701	2,859	3,143	16	13	466	545
운수·창고·통신업	82,925	121,090	71,839	104,891	130	119	10,956	16,080
부동산임대업 포함	1,506	1,682	1,243	1,418	22	25	241	238
대리·중개·도급업	24,413	27,317	16,464	18,285	81	81	7,868	8,951
서비스업	106,791	134,084	77,152	96,923	579	577	29,060	36,583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111,018	121,668	112	132	102,291	111,375	8,615	10,161
인적용역	1,367,084	1,386,727	3,871	4,652	1,302,913	1,314,834	60,300	67,241
기타	29,591	30,057	2,173	2,510	24,614	24,346	2,804	3,201

자료: 국세통계포털, 「14-2-17. 자영업자 유형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현황(총급여액 등)(1/2)(2021년 귀속년도)」,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fPblYr=2022&sttsMtainfrid=20211203N012022N8891>, 검색일자: 2023. 10. 23.

## 5. 소결

본장에서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지원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근로장려세제를 검토하였다. 저자가 파악하기로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같은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

나 고용장려금 제도의 경우 인적용역 사업자와 관련된 사업장 혹은 근로자 지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출산급여와 실업급여도 인적용역 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의무지출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이지만 제Ⅲ장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림 V-3]은 검토한 제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전체 인적용역 사업자를 고용보험상의 노무제공자로 지정된 업종과 국세청 업종을 합한 것으로 정의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적용역 사업자(즉 '노무제공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유형과 근로장려세제는 고용보험 가입에 상관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이런 점에서 [그림 V-3]의 횡축은 우측으로 갈수록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해석을 할 때 한 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 바로 대리나 킷서비스 업종 분야가 바로 그것이다. 대리나 킷서비스 분야의 노무제공자는 용역제공자에 해당하는데, 용역제공자가 과세당국에 제출한 과세자료는 아직 근로장려세제 적용 대상을 판단할 때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리나 킷서비스' 분야 종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내일배움카드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요컨대, '대리, 킷서비스' 분야를 제외할 경우, 해당 그림의 횡축은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범위가 확장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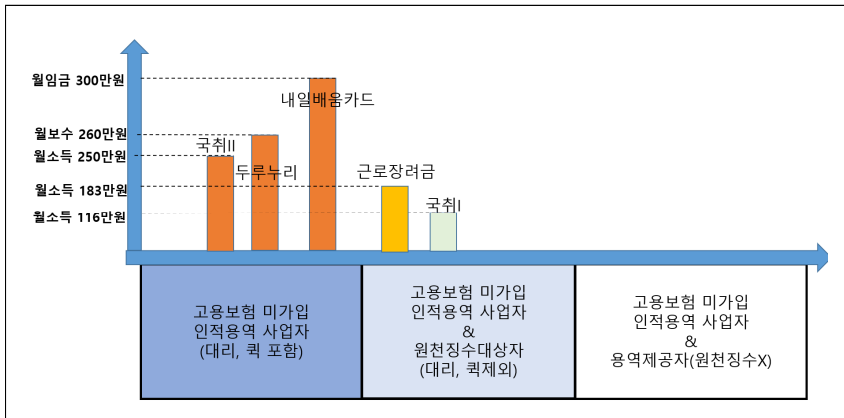
또한, [그림 V-3]에서는 노무제공자가 '단독가구'인 것을 고려하였고, 자산요건이 있어도 이를 도식화하지 않았다. 보다 종합적인 정보는 <표 V-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를 살펴보면, 지원 제도 간의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건심사가 이루어지는 대상이 가구 혹은 개인으로 나누어져 있고, 요건 심사 시 반영되는 소득이나 자산의 범위도 상이하다. 예를 들어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보수 260만원, 종합소득세 4,300만원, 재산 6억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V-4〉 인적용역 사업자 재정지원

구분	지원 유형	적용 유형	적용단위 (개인 vs 가구)	임금/소득/ 자산 제한	임금근로자 대비 차별성
국민취업 지원제도	- 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고용보험가입 노무제공자	- 유형 I : 가구 - 유형 II : 개인	- 월보수: 250만원 - 가구소득: 중위소득 60~120% - 재산: 5억원	
직업훈련 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 훈련비용 지원	고용보험가입 노무제공자	- 일반: 개인 - 지원시: 가구도 고려	- 월보수 300만원	일반 참여자 대비 지원을 높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고용보험가입 노무제공자	- 개인	- 월보수: 260만원 - 종합소득세: 4,300만원 - 재산: 6억원	
근로장려 세제	- 소득지원	원천징수 인적용역 사업자	- 가구	- 가구: 2,200만원 이내(홀별이) - 재산: 천만원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 적용하여 소득금액 계산함

자료: 저자 정리

[그림 V-3] 재정 및 조세지출 지원제도의 자격기준의 도식화



자료: 저자 작성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는 주택 관련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반면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지원 여부 혹은 지원금 수준을 선정할 때에는 이러한 소득 유형 일부(총소득금액) 혹은 전부(총급여액 등)가 배제된다.

---

## Ⅵ. 인적용역 사업자 소득파악 인프라

---

###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피보험자 수 통계를 활용한 효과분석

본 절에서는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이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파악 및 이로 인한 고용보험 가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한다.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비슷한 시기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실시간 소득파악 구축의 효과를 고용보험 당연적용의 효과와 분리하여 식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구축되어 실무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용이하게 한 것이 가장 큰 기여로 생각할 수 있다. 관련하여,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도입으로 그동안 파악되지 않은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소득이 새롭게 파악된 것 역시 중요한 기대 효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적인 기대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식별의 정확성에 달려있다. 정확한 식별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실시간 소득파악의 전반적인 효과를 추정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실시간 소득파악 및 고용보험 확대 적용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기존 연구가 부족했다는 측면에서 제Ⅶ장의 분석이 의미가 있다.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되면,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계약을 맺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실시간 소득파악과 고용보험의 당연적용에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건수와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만약 제도에 대한 순응성(compliance)이 100%가 아닐 경우, 즉, 사업주 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이도적으로 회피할 경우, 기대했던 제도 도입의 효과가 관찰되지 않을 것이다. 기대했던 효과가 완전하게 관찰되지 않을 경우, 제도에 순응하지 않는 이유를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이번 장의 목표이다.

### 가. 전 국민 고용보험 및 실시간 소득파악의 의의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eal Time Information: RTI)는 코로나19 이후 재난 지원금 지급 및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등의 실무적 지원과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년 12월 23일 발표)에 따른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근로자는 물론 최종적으로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체계적인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먼저 세법 개정을 통해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월별 소득파악 체계가 구축되고 기관 간의 소득자료 공유 체계도 구축되었다. 현재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월별 소득 자료는 근로복지공단과 공유되고 있다.

앞서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현재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진행 사항을 다시 <표 VI-1>에 정리하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크게 인적용역 제공형, 사업자등록형, 플랫폼종사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인적용역 제공형은 보험모집인,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방문판매원, 학습지 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대여제품 방문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 총 8개 업종이며, 사업자 등록형은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택배기사, 가전제품배송기사 등 총 4개 업종이다. 플랫폼종사자 및 기타는 퀵서비스, 대리기사, 육실종사원, 가사도우미, 간병인, 중고차 판매인, 수하물 운반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이 포함된다. 이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본격적으로 2021년부터 진행되었으며, 핵심적인 내용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 즉 원천징수자는 이들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를 매월 과세당국에 제출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 상용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일부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도 반기에서 매월로 변경되었다. 자영업자의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과세당국이 이들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자 행정 체계의 구축을 통한 소득파악 개선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표 VI-1〉 유형별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의 내용

구분		내용	시행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분기 → 월)	2021년 7월
특고	인적용역 제공형 (원천징수형) 및 프리랜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반기 → 월)	2021년 7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설(매월 제출)	2024년 1월
	사업자 등록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전년도 공급가액 2억원 → 1억원)	2023년 7월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신설	2022년 7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2023년 1월
	플랫폼 종사자 및 기타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연 → 월)	2021년 11월
과세자료 제출대상에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 추가		2022년 1월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반기 → 월)	2024년 1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신설	2023년 2월
자영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전년도 공급가액 2억원 → 1억원)	2023년 7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2023년 1월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기본 인프라 구축 작업과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이 직종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표 VI-2〉). 앞서 〈표 VI-1〉에서 살펴본 직종별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의 적용 시점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에 의하면 2022년 6월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노무제공자가 약 119만명(중복 제거 시 약 96만명)으로 집계되며, 이 중 플랫폼종사자는 약 34만명(중복 제거 시 약 31만명)으로 집계되어, 이를 고용보험 확대 적용에 따른 효과로 평가하였다(고용노동부, 「7월 1

일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행」, 2022. 6. 30.).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실시간 소득과 약 체계 및 고용보험 당연적용에 따른 순수 효과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기가입되어 있었던 노무제공자들의 경우 고용보험 당연적용의 효과에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당연적용에 포함된 5개 직종에 대한 효과 평가는 전혀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표 VI-2〉 고용보험 당연적용 단순노무제공자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1. 보험설계사 2. 신용카드회원모집인 3. 대출모집인 4. 학습지교사 5. 방문강사 6. 택배기사 7. 대여제품방문점검원 8.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9. 방문판매원 10. 화물차주 11. 건설기계조종사 12.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1. 퀵서비스기사 2. 대리운전기사 (플랫폼 이용 노무제공자 포함)	1.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2. 골프장 캐디 3. 관광통역안내사 4. 어린이통학버스기사 5.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자료: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2022. 5.

효과 평가를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월별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수 현황을 검토한다. 고용보험 통계자료의 피보험자 현황은 매월 말일 시점에 상용직 또는 자영업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전체 피보험자 수를 집계한 자료이다. 동일 피보험자가 여러 사업장에 상용직 또는 자영업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집계한다. 피보험자 통계에는 일용근로자는 제외되었다. 본고에서 분석하는 인적용역 단순노무제공자들은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되어, 이들과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이들의 피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고용보험 통계자료에는 직종별 세분

류 단위의 피보험자 현황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산업 소분류 기준으로 기초 통계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속한 직종의 산업 소분류 단위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이러한 소분류 단위의 적용은 자칫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을 적절히 식별하지 못하여 분석결과에 편의를 유발할 수 있다. 분석과정에서 이러한 한계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그림을 통해 기초 배경을 살펴본다. [그림 VI-1]의 (a)는 ‘소화물 운송업’에 속한 업종들의 월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현황을 보여준다. ‘소화물 운송업’에는 퀵서비스 배달, 택배기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다. ‘소화물 운송업’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도입 및 고용보험의 당연적용과 큰 상관 없이 피보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이는 택배 및 배달업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의 고용 유입이 증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된다.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및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효과는 이러한 추세와 분리하여 살펴봐야 할 문제이다.

[그림 VI-1]의 (b)는 ‘그 외 기타개인서비스업’의 월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현황을 보여준다. ‘그 외 기타개인서비스업’에는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등이 포함되며, 월별로 피보험자 수의 변화가 관찰된다.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소화물 운송업’에 비해 뚜렷한 추세가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기타사업지원 서비스업’([그림 VI-1]의 (c))의 경우, 월별 피보험자 수의 변화가 더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포함되는 인적용역 사업자 직종은 행사도우미가 있다. [그림 VI-1]의 (d)는 ‘무점포 소매업’의 월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현황을 보여준다. ‘무점포 소매업’에는 다단계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의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포함된다. [그림 VI-1]의 (e)는 ‘기타 교육기관’, (f)는 ‘창작 및 예술 서비스업’의 월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현황을 보여준다. ‘기타 교육기관’에 속하는 인적용역 사업자 직종은 학원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방문강사, 학습지 교사 등이며, 이들의 피보험자 수 현황도 월별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창작 및 예술 서비스업’에 속하는 인적용역 사업자 직종은 배우, 가수, 성악가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월별로 증

가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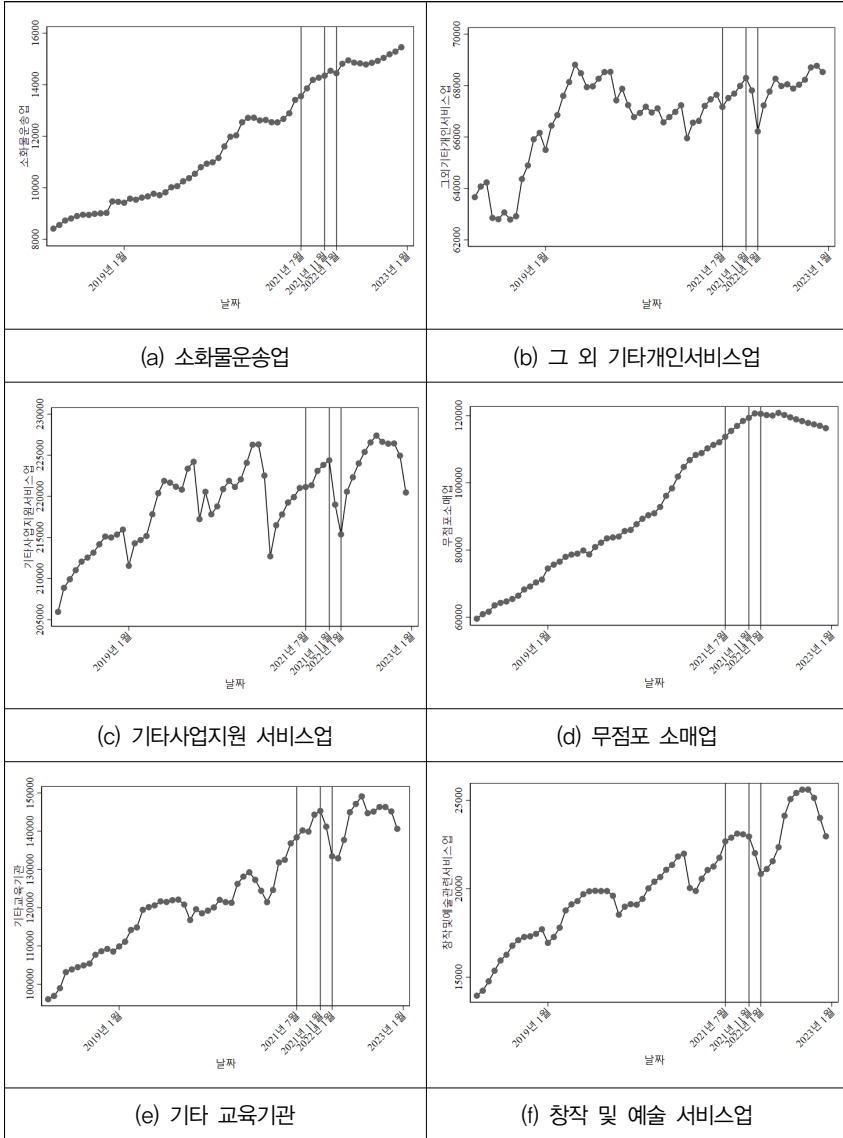
고용보험 월별 통계 자료에 더해 산재보험의 집계 현황 자료를 사용하여 관련 숫자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전속성이 강하고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이미 산재보험 특례가 적용되고 있었으며,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2008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를 시작으로 2012년 5월에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그리고 2016년 7월에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으로 확대 적용되어 왔다. 2020년 1월에는 건설기계운전자, 7월에는 방문판매원 등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2023년 7월 1일부터는 복수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sup>32)</sup>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러한 확대 개편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의 수가 약 80만명에서 약 173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시간 소득과약 체계 구축 및 고용보험의 당연적용은 이러한 산재보험 가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산재보험의 당연적용과 별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32) 2023년 7월부터 산재보험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신 '노무제공자'라는 보다 폭넓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VI-1]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월별 현황

(단위: 명)



자료: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통계 자료(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https://keis.or.kr/user/extra/main/4081/publication/reportNewList/jsp/LayoutPage.do?categorySel=&checkAll=Y&checkSubject=Y&checkList=Y&checkContents=Y&checkWriter=Y&subjectSel=&sDate=&eDate=&realEDate=&targetSel=&kwd=%EA%B3%A0%EC%9A%A9%ED%96%89%EC%A0%95%ED%86%B5%EA%B3%84&x=-1265&y=-543>, 검색일자: 2023. 6. 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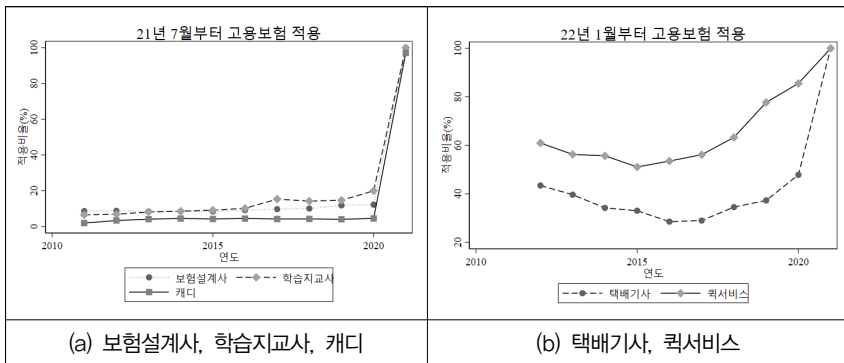
[그림 VI-2]는 연도별로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비율을 보여준다. 각 직종별 입직자 수(조사기간 중 본 직종에 전입이나 신규채용으로 입직한 자의 수) 대비 적용자의 비율을 연도별로 계산하였다. 산재보험 적용이 권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적용 비율이 100%가 되지 못하는 데에는 일부 사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비용 부담이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사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인센티브가 산재보험 기피라는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그 배경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원한다 하더라도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행태도 관찰된다. 이러한 이유로 산재보험의 적용률이 100%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산재보험 가입 유도 노력과 여러 제도적 장치의 보완, 실시간 소득과약 체계 구축 및 이에 따른 고용보험의 당연적용이 확대되면서 산재보험의 적용 비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점을 [그림 VI-2]을 통해 살펴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캐디 등에 대해서 2008년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적용 비율은 20%를 넘지 못하였는데, 이 비율이 2021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2021년 7월부터 적용된 고용보험이 이러한 증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비록 실시간 소득과약 체계의 구축과 고용보험의 당연적용의 효과를 명확하게 식별하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논리적 추론은 가능하다. 고용보험의 당연적용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산재보험료 부담에 더해 고용보험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욱 커진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당연적용만으로 산재보험의 가입률 상승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실시간 소득과약 및 고용보험의 당연적용으로 인해 과세당국의 소득자 파악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가입 회피에 따른 과세당국으로부터의 적발 가능성 역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세정 운영의 효율성 증가가 결과적으로는 정책이 의도한 산재보험 가입률 증가,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로 이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 업종의 경우 자료가 확보된

2021년까지 산재보험의 가입률을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적용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의 적용은 2021년 11월부터였다. 불과 2개월의 차이뿐이지만,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가 적용된 2021년 이들 직종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00%에 근접하였다.

[그림 VI-2]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연도별 산재보험 적용 비율

(단위: %)



자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DB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지금까지 기초 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그래프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이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의 효과를 정확히 식별하여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고용보험 당연적용 시점 전후로 산재보험 가입률이 증가한 것은 명확히 확인이 된다. 이는 그동안 사회 안 전망 체계에 포착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편입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 소절에서 한다.

#### 나.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기대 효과의 개념적 검토

실증분석 결과를 검토하기 전에, 실시간 소득파악의 기대 효과를 개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의 구축의 기대 효과는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보의 효율적 접근에 대한 기대 효과이다. 실시간 소득과약 체계의 도입은 개별 소득자에 대한 소득정보에 대한 접근 비용을 감소시킨다. 물론 제도의 도입 초반에는 고용주에게 일부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나, 이러한 부담은 장기적 관점에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감소할 것이다. 개별 소득자에 대한 소득 및 관련 공제 내역을 과세당국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들에 대한 납세 안내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납세협력비용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실시간 소득과약 체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정산 과정을 거치면서 납세자들의 과세당국에 대한 문의에 따른 행정비용 소요가 컸다. 실시간 소득과약 체계의 도입은 이러한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정보의 실시간 접근에 따라 납세자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져서 간접적으로 기대하는 행정비용의 감소 효과도 있다.

셋째, 행정 효율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납세자들의 이직 및 퇴직 등 직장 간 이동이 빈번해진 현재 이들에 대한 소득 변동 사유의 파악을 실시간으로 하여 재난지원금 등 각종 사회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진다.

넷째, 고용주 입장에서의 행정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실시간 소득과약 체계의 도입은 월별 과세 자료 제출이 동반되어 고용주 입장에서 단기간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주가 실시간 소득과약 체계에 대한 대응이 완료되어 시스템 활용 절차가 단순해질 경우, 장기적으로는 현재와 비교해 고용주의 행정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소득 및 납세 정보의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을 경우에 예상되는 행정비용이 실시간 소득과약 체계의 도입으로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재정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실시간 소득과약이 자금 흐름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재정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4대 보험체계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근로자 및 사업자들을 체계에 편입시킴으로써 재정의 추가적인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본고에서 실

증분석에서 살펴볼 주제이며,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의 도입이 궁극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표 VI-3〉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의 기대 효과

기대 효과	기대 효과의 내용
정보의 효율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의 구축은 개별 소득자에 대한 소득 및 소득 관련 공제 정보를 과세당국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연간 납부 세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li> <li>이에 따라 사업주 및 과세당국이 연말에 정산해야 하는 과정을 단순화하여 정보의 효율적 제공이 가능함</li> </ul>
납세협력비용의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납세 관련 납세자들의 문의를 줄임으로써 기대하는 행정비용의 감소 효과가 있음</li> <li>과세당국이 개인의 소득에 관한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 대응 처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li> </ul>
행정 효율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납세자들의 이직 및 퇴직 등의 사유로 소득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한 과세당국의 대처가 빨라짐</li> </ul>
고용주의 행정비용의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도입 초기에는 고용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단순화된 시스템하에서 고용주의 행정비용이 감소할 수 있음</li> </ul>
재정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시간 소득파악으로 고용주가 올바른 소득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이로써 자금 흐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4대 보험의 재정 효율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li> </ul>
사회안전망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에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고용보험 체계에 편입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li> <li>고용보험의 적용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가 필수적인 조건임</li> </ul>

자료: 저자 작성

#### 다. 주요 분석 방법과 기초 통계

앞서 정부의 발표 자료와 기초 통계에서도 검토하였듯이,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이후 단순노무제공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됨에 따라 인적용역 사업자가 속한 해당 업종의 월별 피보험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몇몇 업종에서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와 고용보험의 당연 적용 시점 직후 명백한 증가를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관찰되지 않는 것은 제도 적용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거나 본고에서 사용한 고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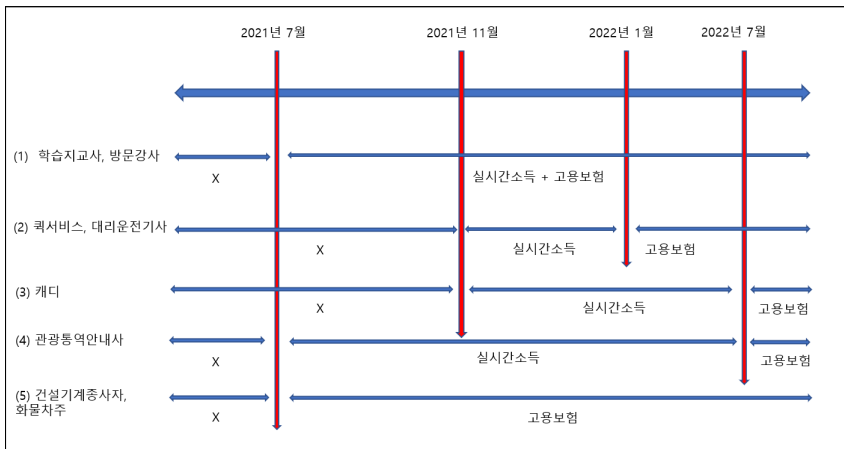
월별 통계 자료가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직종을 정확하게 식별하여 통계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측정 오차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소절에서는 실시간 소득과약 제도의 효과를 최대한 식별하여 추정해보고자 한다.

분석에 앞서, 실시간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의 효과를 검토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인적용역 사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한 작업이 실시간 소득과약의 인프라 구축이다. 인적용역 사업자들에 대해 직종별로 고용보험이 단계적으로 당연적용되었고, 이론적으로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가 되었다. 따라서 제도 도입의 효과는 선형적으로 매우 명확히 나타나야 한다. 물론 실무적으로 제도의 효과가 100% 관찰되지는 않을 것이다. 고용주들 및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고용보험 당연적용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순응(compliance)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순응성은 실시간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의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즉, 고용보험 제도가 당연적용되기 이전에 실시간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에 따라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을 가능성, 자발적 순응의 정도를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과세자료와 고용보험 시장의 집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해보는 것은 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고용보험의 당연적용을 위해 선제적으로 수행된 여러 작업 가운데 실시간 소득과약 체계 구축이 왜 필요했는지 확인해보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먼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통계를 사용하여 실시간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 효과를 검토한다.

고용보험 통계자료는 월별/연도별 피보험자 수, 고용보험의 취득자 수, 상실자 수 등에 대한 정보를 직종(중분류)과, 산업(소분류)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실시간 소득과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피보험자 수의 변화를 업종별, 연도별, 월별 단위로 살펴보는 데 유용한 정보이다. 다만, 이미 언급했듯이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업종코드에 따른 세분류 자료는 없어 실시간 소득과약 제도의 영향을 받은 집단에 대한 정확한 식별이 어렵다는 점은 여전한 한계

점이다. 이에 더해, 실시간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 작업과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시점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실시간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의 효과를 식별하여 분석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종에서 확인되는 정책 도입 시점의 차이를 활용하여 실시간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VI-3] 인적용역 사업자 직종별 실시간 소득과약 및 고용보험 적용 시점의 변이



자료: 저자 작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앞서 <표 VI-2>에서 검토하였듯이, 업종 특성에 따라 실시간 소득과약(지급명세서의 월별 제출) 도입 시점에 차이가 있다. 효과 추정을 위해 이러한 시점 간 차이에 따른 변이(variation)를 활용한다.

고용보험 월별 통계자료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자료를 사용한다. 인적용역 제공형 사업자와 플랫폼종사자 각각의 경우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되는 시점은 2021년 7월과 2022년 1월로 약 6개월의 차이가 있다. 또한 방문판매원을 비롯한 고용보험 당연적용 단순노무제공자들의 실시간 소득 적용 시점은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시점과 동일한 2021년 7월부터인 반면, 퀵서비스기사, 대리기사 등의 플랫폼종사자들의 경우, 2021년 11월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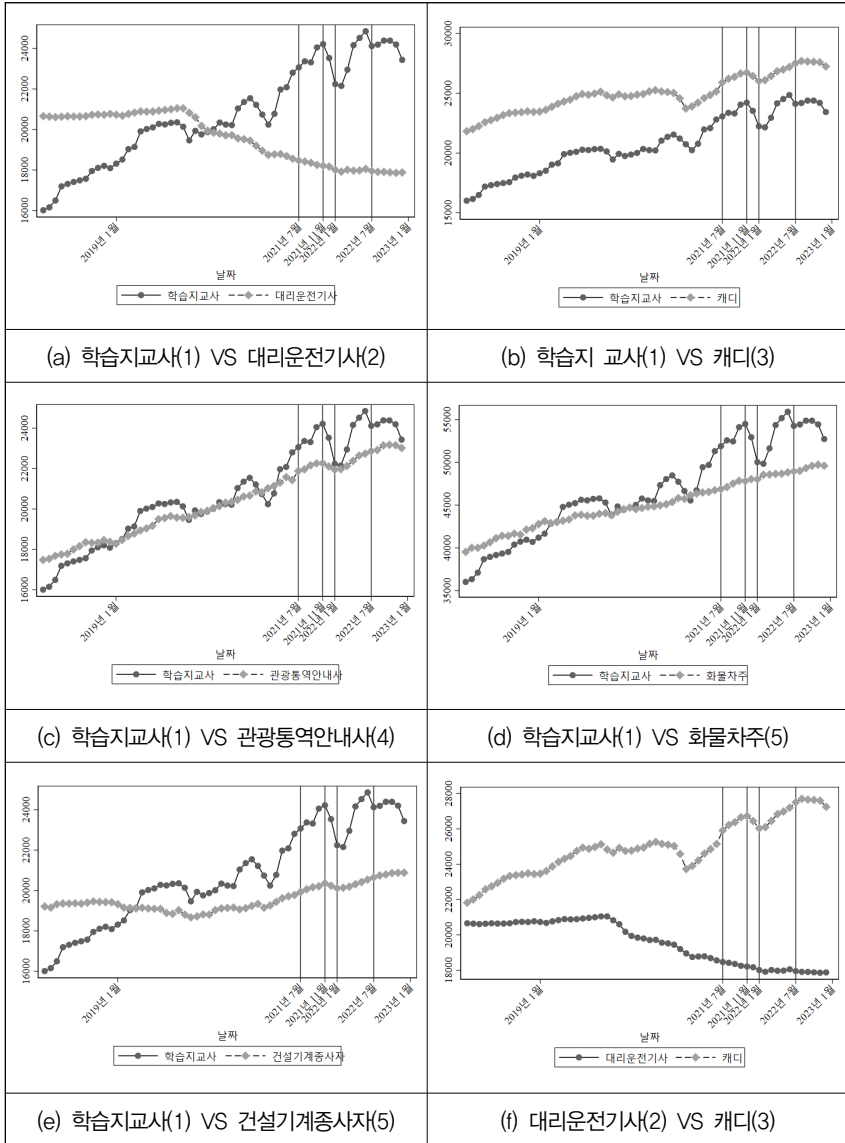
부터 월별 소득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후 고용보험의 당연적용은 2022년 1월 부터 시행되어 실시간 소득과약 체계와 고용보험 적용 시점의 차이가 존재 한다. 이러한 차이는 실시간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의 효과를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비록, 이러한 분석이 제도의 효과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실시간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의 초단기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에 그친다는 점에서 사업주들 및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순응 효과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림 VI-3]은 실시간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식별 전략인 시점 간 변이를 보여준다. 학습지 교사 및 방문강사는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과약 체계와 고용보험이 동시에 적용된 반면, 퀵서비스, 대리 운전기사(플랫폼종사자 포함)는 2021년 11월부터 실시간 소득, 2022년 1월 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다. 캐디는 2021년 11월부터 소득 자료 월별 제출 이 의무화되었으며, 고용보험은 2022년 7월부터 적용되었다. 관광통역안내 사는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이 적용되었으나, 고용보험은 2022년 7월 에서야 적용되었다. 건설기계종사자 및 화물차주의 경우는 인적용역 사업자와 유사하나 물적 시설(차량 등)을 이용하고, 사업자 등록 대상자로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실시간 소득과약 체계와는 무관하게 이미 실시간 소득과약이 가능한 직종이다.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은 2021년 7월부터 적용 되었다. 직종 간 제도 도입 시점의 변이를 활용하여 실시간 소득과약 도입 및 고용보험 적용의 효과를 각각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 학습지 교 사, 방문강사와 (4) 관광통역안내사를 비교하면 간접적으로 고용보험의 효과 를 추론해볼 수 있고, (1) 학습지 교사, 방문강사와 (5) 건설기계종사자, 화물 차주를 비교하면 실시간 소득과약 체계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2) 퀵서 비스, 대리운전기사와 (4) 관광통역안내사를 비교하면 2021년 7월을 기준으 로 실시간 소득과약 체계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시간 소득과약 도입의 단기적 효과(2021년 7월~2021년 10월)를 추정해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3) 캐디와 (4) 관광통역사를 비교하여 실시간 소득과약 도입의 단기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2)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와 (3) 캐디를 비교하면

고용보험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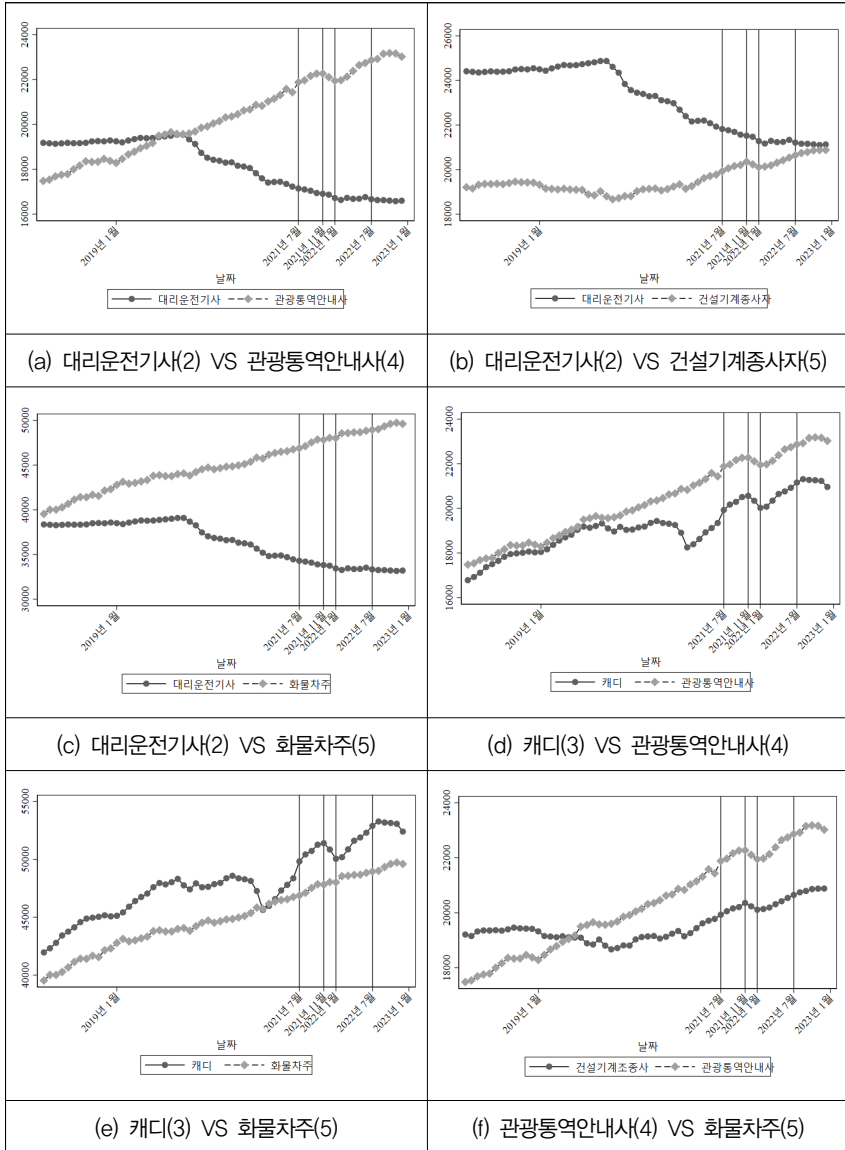
현재 고용보험 월별 통계 자료에서 인적용역 사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직종 중분류 단위의 정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새롭게 구축된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분류 단위로 집계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현황 자료가 부재하다. 직종의 분류 자체는 되어 있지만 실제 집계된 피보험자 수 통계 자료가 해당 분류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정보는 산업 소분류 단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적용역 사업자가 속한 산업 소분류와 플랫폼 사업자가 속한 산업 소분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및 취득자 수 정보를 활용하여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도입의 효과를 살펴본다. 본 소절의 효과 분석에 활용되는 산업 소분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원강사, 방문강사 등이 포함된 ‘기타 교육기관’,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들이 속한 ‘소화물전문 운송업’, 대리운전기사가 속한 ‘육상 여객 운송업’, 골프장 캐디 등이 포함된 ‘스포츠 서비스업’, 관광안내통역사 등이 포함된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건설기계종사자가 속한 ‘건설장비운영업’, 화물차주 등이 속한 ‘도로화물 운송업’ 등 위주로 살펴본다. 다시 한 번 주의할 점을 강조하면, 일부 직종이 속한 산업 소분류는 직종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어, 직종별로 변이가 발생한 실시간 소득파악과 고용보험 적용 시점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화물전문 운송업을 살펴볼 경우,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및 고용보험의 적용 시점이 상이한 택배업과 퀵서비스업이 같은 항목으로 분류되어 이 통계 자료를 사용할 경우, 제도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부적합할 수 있다. 반면 ‘건설장비운영업’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건설기계 1인 사업자가 대부분 건설기계와 함께 건설기계 조종사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식별의 가능성이 다른 산업 소분류 기준보다 높다.

[그림 VI-4] 인적용역 사업자 직종 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월별 추이 비교 1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I-5] 인적용역 사업자 직종 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월별 추이 비교 2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I-4]와 [그림 VI-5]는 잠재적인 비교 집단 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수 추이를 비교한다.<sup>33)</sup> [그림 VI-4]의 (a)는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기사를 비교한다. 괄호 안에 제시한 숫자는 앞선 [그림 VI-3]에서 실시간 소득과약 및 고용보험의 적용 시점이 직종별로 다르게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 2021년 7월에,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2021년 11월에 실시간 소득과약이 적용되었다. 두 직종 간에는 실시간 소득과약이 적용되기 전후로 피보험자 수의 변화 추이가 매우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시간 소득과약 도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두 집단을 직접 비교할 때는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각각의 비교 집단을 검토해보면 [그림 VI-4]의 (b) 학습지 교사와 캐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추이의 변화는 비교적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추이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시간 소득과약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식별 전략(이중차분 방법)의 가정 충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중차분법 적용을 위해서는 비교 가능한 집단의 적절한 설정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판단하는 근거는 제도의 도입 전의 관심 종속변수의 평행 추세이다. [그림 VI-4]와 [그림 VI-5]는 이러한 가정의 충족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위의 검토를 통해 평행 추세가 비교적 만족되어 이중차분법을 적용할 만한 잠재적인 비교 가능 집단으로는 학습지교사와 캐디, 학습지교사와 관광통역안내사, 학습지교사와 화물차주, 캐디와 관광통역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와 화물차주, 캐디와 화물차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만, 이중차분법 적용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비교 집단 간에 실시간 소득과약 도입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다. 학습지교사와 화물차주의 피보험자 수의 추이는 유사하지만 [그림 VI-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두 직종의 실시간 소득과약의 도입 시점이 2021년 7월로 동일하여, 효과 분석에는 활용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비교 가능한 집단을 선별한 결과 캐디와 관광통역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와 화물차주, 그리고 학습지교사와 화물차주 이

33) 피보험자 수의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 피보험자 수의 절댓값이 직종 간 크게 차이나는 경우,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일부 결과는 비례적으로 축소되거나 증가된 값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의 목적은 직종 간 피보험자 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렇게 크게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비록 피보험자 수의 추세상 유사한 직종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개념적으로 비교하는 두 직종이 왜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비교하는 직종이 인적용역 사업자의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특별히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분석은 기본적인 이중차분법 회귀방정식으로 분석하였으며, 통제 변수( $X$ )로는 각 직종의 평균 매출규모, 평균 고용자 수, 그리고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여부 및 시점을 고려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VI-4>에 제시하였다. 간단한 이중차분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고, 추정하고자 하는 관심 계수는  $\beta$ 이다.

$$y_{it} = \alpha + \beta * \text{실시간}_i * \text{적용시점}_t + \text{실시간}_i + \text{적용시점}_t + \theta X + \epsilon_{it}$$

식 (VI-1)

<표 VI-4>의 (1)열은 캐디와 관광통역안내사 집단을 비교하였으며, 분석기간은 자료가 확보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다. (2)열은 분석집단은 동일하며, 분석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로 한정한다. 관광통역안내사는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이 적용되었으며, 캐디는 2021년 11월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21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에만 실시간 소득파악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기간을 좁혀서 분석해본다. (3)열과 (4)열은 관광통역안내사와 화물차주 집단을 비교하였으며 분석기간은 (3)열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4)열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이다.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고용보험의 당연적용은 2022년 7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기간 직전까지 분석 기간을 좁혀 효과를 추정해본다. 마지막 (5)열은 학습지 교사와 화물차주 집단을 비교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이다. 학습지 교사와 화물차주를 비교하는 것은 동일하게 두 집단 모두 2021년 7월 이후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된 상황에서 학습지 교사 집단에만 실시간 소득파악이 적용된 2021년 7월의 효과를 추정해보는 것이다.

추정결과 실시간 소득파악이 적용된 직종에서 실시간 소득파악이 적용되지 않은 직종에 비해 약 3%에서 4%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수치는 자발적으로 고용주들과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습지 교사와 화물차주를 비교한 (5)열의 효과는 약 9%로 조금 더 높게 나왔다. 이미 고용보험과 실시간 소득파악이 같이 적용될 때 그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순회귀분석 결과 실시간 소득파악의 도입은 고용보험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한계점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효과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종 분류가 정확히 식별되지 않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과 분석에 대한 추가적인 강건성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표 VI-4〉 실시간 소득파악 도입의 효과

종속변수: 로그 피보험자수	(1)	(2)	(3)	(4)	(5)
교차항	0.0415*** (0.010)	0.0417** (0.016)	0.0404*** (0.007)	0.0379*** (0.012)	0.0925*** (0.0128)
기간	2018년 1월~ 2022년 12월	2018년 1월~ 2021년 11월	2018년 1월~ 2022년 12월	2018년 1월~ 2022년 7월	2018년 1월 ~2022년 7월
관측수	120	96	120	110	120
표본	캐디, 관광	캐디, 관광	관광, 화물	관광, 화물	학습지교사, 화물

주: \*\*\* 1%, \*\* 5%, \* 10% 유의수준

자료: 저자 작성

앞선 단순회귀분석에서는 직접 비교 가능한 집단을 선별하여 비교하여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방법 대신 여러 집단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고, 집단 고정효과를 추가하여 정태적 이중차분법(static Difference in Difference)으로 유사한 분석을 시도한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을 사용하며, 식 (VI-2)에서도 추정하고자 하는 관심계수는  $\beta$ 이다.

$$y_{it} = \alpha + \beta * \text{실시간}_i * \text{적용시점}_t + \text{직종}_i + \text{연도}_t + \text{월}_t + X + \epsilon_{it}$$

식 (V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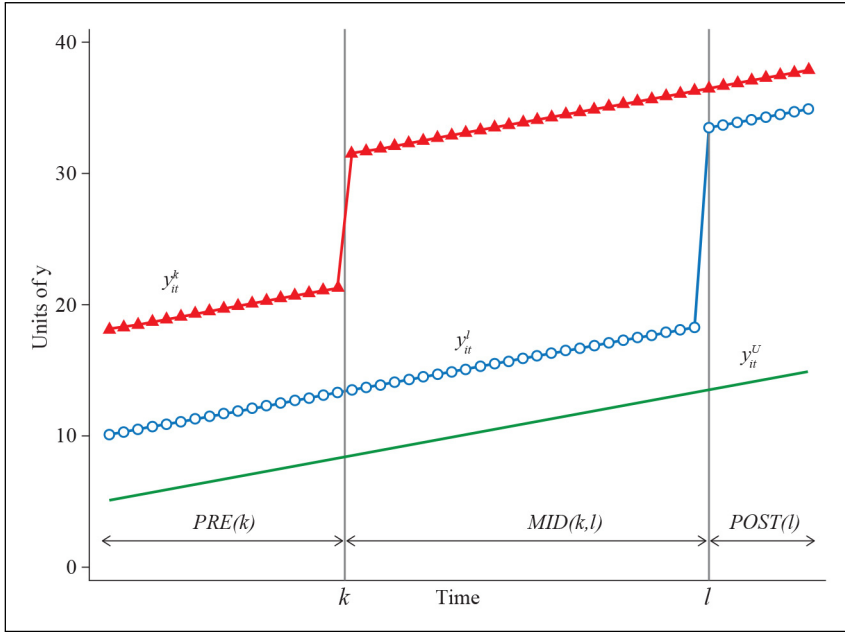
직종의 고정효과를 사용하여 직종 간 차이를 통제하였으나, 직종 간에 피보험자 수의 추세를 변화시키는 관찰되지 않는 요인들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추정하고자 하는 효과가 이러한 관찰되지 않는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능성까지 감안하기 위해 이 분석에서도 포함되는 집단을 이질적으로 하여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한다. 분석결과는 <표 VI-5>에 제시한다. (1)열은 관광통역안내사, 캐디, 화물차주를 분석 표본으로 설정하였고, (2)열은 관광통역안내사, 캐디, 건설기계종사자를 분석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3)열은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화물차주,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종사자를 포함하였고, (4)열은 관광통역안내사, 캐디, 대리운전기사를 포함하였다. (5)열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관광통역안내사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모두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설정하였다.

<표 VI-5> 실시간 소득파악 도입의 효과(Static)

종속변수: 로그 피보험자수	(1)	(2)	(3)	(4)	(5)
교차항	0.034*** (0.008)	0.063*** (0.010)	0.029** (0.013)	0.041* (0.024)	0.066* (0.034)
기간	2018년 1월~ 2022년 12월	2018년 1월~ 2022년 12월	2018년 1월~ 2022년 12월	2018년 1월~ 2022년 12월	2018년 1월~ 2022년 12월
관측수	180	180	360	180	180
표본	관광, 캐디, 화물	관광, 캐디, 건설	캐디, 관광, 화물, 학습지, 대리, 건설	관광, 캐디, 대리	학습지, 대리, 관광

주: \*\*\* 1%, \*\* 5%, \* 10% 유의수준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I-6] 동태적 이중차분법 적용



자료: Goodman-Bacon(2021), p. 257, Figure 1

(1)열의 분석결과, 실시간 소득파악이 적용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약 3.4%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결과이다. (2)열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캐디, 건설기계종사자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는 실시간 소득파악의 적용이 약 6%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 역시 통계적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하다. (3)열부터 (5)열의 결과는 실시간 소득파악의 적용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조금 약해지지만, 그 효과는 약 3~6%로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단순회귀분석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정태적 이중차분법 분석은 여러 집단을 고려하여 분석하여 강건성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각 집단 간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의 적용 시점이 다르고, 제도에 노출된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다.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의 적용 여부에 따른 효과만을 단기적으로 관찰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동태적 이중차분법(Dynamic DiD)을 적용하여 사건 분석(event study) 형태로 실시간 소득파악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그림 VI-6]은 제도 적용의 시점이 각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다. 가장 아래 있는 초록색 선은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통제 그룹인 반면, 그 위에 있는 두 선, 파란선과 빨간선이 대변하는 집단은 제도의 효과를 받는다. 다만, 이들 집단은 제도의 적용 시점이 상이하고 따라서 제도에 노출된 시간도 상이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적용되는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 = \sum_{j \neq -1} \beta_j 1(\text{year} - \text{eventyear} = j) + \alpha_i + \gamma_t + \theta X_{it} + \epsilon_{it} \quad \text{식 (VI-3)}$$

식 (VI-3)에서 지시함수  $1(A)$ 는  $A$ 가 조건에 맞는 경우 1을 부여받는다. 인덱스  $j < 0$ 인 경우에는 제도가 적용되기 전을 의미한다. 이 식에서 각 직종 간 실시간 소득파악 적용 시점이 차이 나는 것을 일종의 정규화 형태로 동일한 조건으로 맞춰서 분석하게 된다. 따라서  $j = 0$ 인 경우가 실시간 소득파악 적용 시점이 된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text{year} - \text{eventyear} = -1$ 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이 분석에서의 관심변수는 제도의 도입 시점 전과 후의 효과를 나타내는  $\beta_j$ 이다.  $\beta_j$ 는 시간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때  $\beta_j$ 의 해석은 실시간 소득파악이 적용된 직종과 적용되지 않은 직종의 차이가  $j = -1$ 인 시점과 비교하여 기간  $j$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아래 식과 같다.

$$\beta_j = \frac{(y_{\text{제도적용집단 적용후 } j \text{ 시점}} - y_{\text{제도미적용집단 } j \text{ 시점}})}{(y_{\text{제도적용집단 } j = -1 \text{ 시점}} - y_{\text{제도미적용집단 } j = -1 \text{ 시점}})} \quad \text{식 (VI-4)}$$

식 (VI-3)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그림 VI-7] 및 <표 IV-6>에 제시하였다. 직종 고정효과, 연도 고정효과, 월(month) 고정효과 등을 통제하고 직

종별 평균 매출규모, 종사자 수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실시간 소득과  
 약 제도 적용의 효과는 제도의 도입 시점(0) 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  
 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실시간 소득과 약 제도 도입 이전에 효과가 나타나  
 지 않은 것은 식별 전략 가정에 부합하지만, 현재의 분석상 실시간 소득과  
 약 제도 적용의 효과를 찾기는 어려웠다.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시간 소  
 득과 약 제도 자체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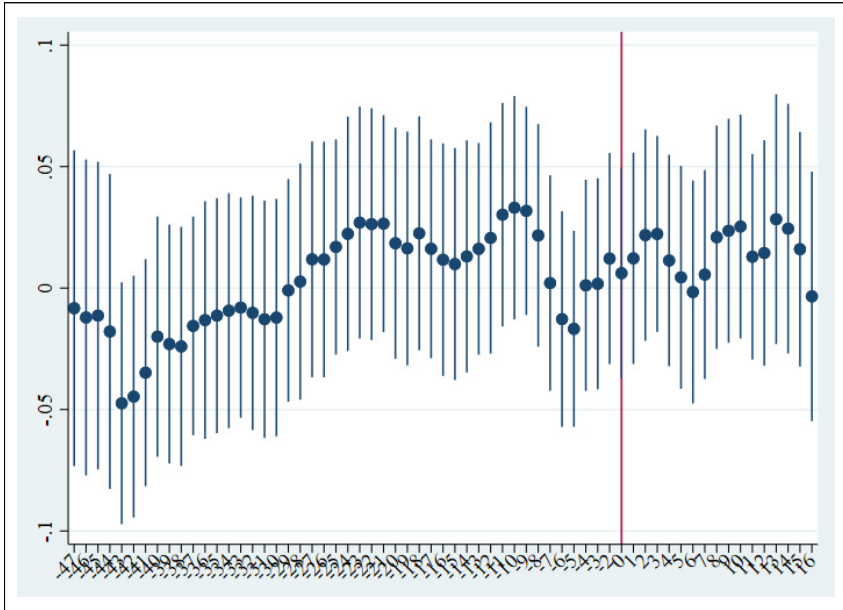
〈표 VI-6〉 동태적 이중차분법 결과

$\beta_j$	(1)
j=-5	-0.0105 (0.023)
j=-4	-0.0185 (0.021)
j=-3	-0.0006 (0.022)
j=-2	0.0101 (0.022)
j=0	0.006 (0.022)
j=1	0.012 (0.022)
j=2	0.022 (0.021)
j=3	0.011 (0.022)
j=4	0.003 (0.024)
j=5	-0.003 (0.024)
관측수	240

주: \*\*\* 1%, \*\* 5%, \* 10% 유의수준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I-7] 실시간 소득파악 적용의 동태적 효과



자료: 저자 작성

## 라. 소결

제VI장 제1절에서는 산업 소분류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월별 피보험자 수 변동자료를 사용하여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적용이 피보험자 수 변화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직종별로 세분화된 피보험자 수 현황 자료가 없어 산업 소분류 자료를 통한 분석만 가능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본 소절의 분석결과,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자체가 피보험자 수 변화에 미친 효과는 대략적으로 3~4%로 추정된다. 비록 몇몇 분석에서 이와 같은 수치의 신뢰성에 힘을 더해주지만, 동태적 이중차분법 분석결과는 제도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실시간 소득파악이 자연스럽게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연계되면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 수를 증가시킨 것은 기초 통계 결과에서 추론할 수 있으나 실시간 소득파악 자체만의 효과를 식별하여 도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결과에서 양(+의 효과

가 도출됐다는 점에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자체가 제도와 관련된 사업자들에게 행동 변화를 야기할 만한 시그널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도입과 동시에 혹은 그 이후 고용보험 당연적용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대한 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 직종별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피보험자 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엄밀한 분석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후 이런 분석이 다시 한 번 요청되는 이유는 개인 정보에 대한 정부의 접근 가능성이 개선됨에 따라 정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영역 확대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효과성 평가에 더해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와 단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개별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의 증가 등 종합적인 비용편익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한 자료를 사용한 실증 분석이 요구되며, 이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

## Ⅶ. 쟁점사항별 정책 함의

---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쟁점사항은 ‘소득세 과세 및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 측면’, ‘급여 및 지원 제도’, ‘소득파악인프라’ 측면으로 구분한다.

### 1. 소득세 과세 및 사회보험료 부과 측면 검토

먼저, <표 VII-1>에서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과세 및 부과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취업형태별로는 근로자와 인적용역 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 사업자 간의 중간 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자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인적용역 사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 제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의 제도가 다수 적용된다.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대체로 높은 경비율이 적용된다. 현재 조세지출 제도의 경우는 자영 사업자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세지출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보험료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사용자 부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일부 일용직 제외), 사용자와 근로자가 명목 사회보험료를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인적용역 사업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업종에 대해서만 해당 보험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확정된 소득금액에 맞추어 납부하게 된다.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직장가입자 자격

〈표 VII-1〉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과세 및 부과 현황

제도 측면의 적절성		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	사용자
취업 형태별	근로자	- 근로소득공제 ○ - 적용 조세지출 多	- 4대 보험 의무가입	- 4대 보험 의무가입
	인적용역 사업자	- 높은 경비율 적용 → 결정세액 1% 미만 - 근로소득공제 × - 조세지출 사실상 無	- (일부업종)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가능(중소신고 자 국한)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가입	- (일부업종) 고용·산재보험 사용자 부담 - 국민연금·건강 보험 사업자 부담 ×

자료: 저자 작성

을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혹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징수 기준에 의거, 재산수준 등에 따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지불하는 건강보험료 수준이 상이하게 된다.

반면, 인적용역 사업자 내에서도 업종별 이질성이 존재한다. 특례업종의 경우 소득지급자가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이 낮다고 할 수 있고, 단순경비율이 4천만원까지로 상대적으로 관대한 경비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기타 나머지 인적용역 업종의 경우,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적용 상한금액이 3,600만원으로 특례업종의 그것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sup>34)</sup>

〈표 VII-2〉에서는 소득세 과세 및 사회보험료 부과 측면의 정책 함의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경비율 제도의 내부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경비율의 수준이나 변화 방향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보

34) 특례업종이 아닌 일반적 업종분야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은 2023년 2월 28일 자료 기준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기 어려웠다. 경비율 제도의 단순화는 과세제도를 보다 단순하게 이해하게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상의 납세협력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이 6자리 숫자로 구성된 업종별로 분화된 현행 경비율 제도를 보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택배, 쿠팡서비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는 동일한 경비율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별 경비율 개편을 위해서는 주요 업종별로 개별 혹은 집단 인터뷰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대리운전, 쿠팡서비스 등의 분야의 경우 플랫폼사에 인적용역 사업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를 공식적인 주요 경비로 포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보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적용역 사업소득만 단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근로소득, 재산소득 등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한편,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의 인적용역 사업소득 등 다른 유형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더라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김문정·안종석·정다운, 2022). 또한 다양한 취업형태를 갖는 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연말정산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상당히 클 수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발달로 납세협력비용 격차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또한, 2026년부터 1월 1일부터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제출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인하여 소득지급자 및 소득자의 과세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개별적인 과세자료에의 접근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납세협력비용을 낮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VII-2〉 소득세 과세 및 사회보험료 부과 측면 정책 함의

- 경비율 제도의 내부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인 사업소득 업종 역시 마찬가지로 의견 제시가 가능하나, 인적용역 사업소득 업종별 검토가 필요함
-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별 경비수준 변경을 위해서는 FGI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자체적인 노무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건강위험을 반영할 수 있음
- 제조업 중심의 '주요 경비' 항목(매입비용, 임대료, 인건비) 개편이 필요함
  - 예를 들어 '플랫폼 사용 수수료'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연말정산보다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향을 유도
  - 홈택스, 손택스 등의 인프라 개선으로 납세협력비용 감축 가능
  - 고용형태 다변화 상황에서 종합소득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음

자료: 저자 작성

## 2. 급여 및 지원 제도 검토

다음으로 사회보험 급여 및 지원제도를 검토하도록 한다. 앞서 [그림 II-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인적용역 사업소득만 배타적으로 지니고 있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집단의 상당수가 해당 총 수입금액이 최하위 분위에 해당하였다.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는 총 수입금액이 중상위이면서 최상위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나타났다. 한편, 종합소득세 관련 수입금액에서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수입금액('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총 수입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상위 10분위에 자리한 인적용역 사업자는 이러한 '기타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이며,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연속(discontinuous)한 수준으로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논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는 그 자체로 취약계층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문정·최인혁, 2022).

또한, 〈표 V-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와 정책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자산, 소득 기준 등이 일관적이지 않되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바, 취약계층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대한 일관된 기준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 단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별 단일 소득유형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등을 포함한 개인별 합산소득을 고려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정지원이나 조세지출을 수행하는 개별 부처 혹은 개별 담당부서에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합산소득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대안으로서 전년도(혹은 당해연도) 근로·자녀장려금 수혜 경험에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특정 재정 지원을 신청할 때, 기본적인 개인정보 등과 더불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정보를 재정당국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재정지원 수급대상 선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I-3〉 급여 및 지원 측면 정책 함의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를 특정하기보다는 ‘개인별 합산소득’(특히, 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형 사업소득)을 고려하는 것이 더 합리적임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다른 일반 소득유형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음
  - ‘인적용역 사업소득’ 발생만으로 취약계층으로 판별하기 어려움 → 개인 합산소득 필요
- 유사 맥락에서 과세당국이 근로장려세제 수급정보를 재정지원당국과 공유하여, 재정지원당국이 이러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용자 명목상 사회보험료 부담이 낮아서 고용형태별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사후적’ 취약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지원하되, employee-employer matching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용장려금,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에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 중심이 바람직할 것임

자료: 저자 작성

### 3. 소득과약 인프라 검토

소득과약 인프라 차원에서의 정책 함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로서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과세당국이 지정한 업종을 통해서만 1차적으로 판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무행정 차원에서는 업종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기타자영업’이라는 업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경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도입 이후에 추가된 업종이다. 이 경우 과거 기타자영업 혹은 다른 업종으로 인적용역 사업자가 해당 분야로 새롭게 판별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노무제공플랫폼사의 경우, 그러한 플랫폼사가 직접 인적용역 사업자와 관련된 고용보험료도 직접 공제하고, 소득세도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관련 업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는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업종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업종체계나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예술인’과 관련된 업종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현재 예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궁극적으로 폐지되고, 예술인을 과세당국의 소득자료에 기반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흡수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정비 방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공단과 과세당국 간의 정보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회보험 징수·부과 수준은 소득세 제도, 특히 경비율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반대로, 사회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정보를 과세당국이 입수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인적용역 사업자를 포함한 경제 취약계층을 발굴 및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록 본고에서는 자영 사업소득자보다는 근로자에 더 가까운 인적용역 사업자를 상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실제로 그 둘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및 인적용역 사업자만큼이나, 자영 사업소득자의 소득과약 수준을 개선하고 소득과약 주기를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VII-4〉 소득파악 인프라 관련 정책 방향

구분	정책방향
업종 별도 추가	- ‘기타자영업’ 업종 세분화 - 과세자료 제출대상 노무제공플랫폼업종 확대
업종 내 소득파악 인프라 심화	- 1인 미디어 창작자 신고체계 정비
업종 체계·구조	- 예술분야 인적용역 사업소득 업종체계 정비
사회적 합의 필요	- 자영업자 인프라 매출 정보의 활용 방향 검토

자료: 저자 작성

---

## VIII 결론

---

본 연구에서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과세제도의 분석대상은 소득세와 4대 보험이며, 지원제도의 대상에는 고용보험 급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장려세제 등을 고려하였다.

본고에서 연구자가 검토할 때 분석의 관건은 인적용역 사업자 관점에서 고용형태 다변화를 어떻게 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고용형태 다변화)과 인적용역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적용 및 부과 측면에 문제가 존재하는지(근로자와의 적용-부과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었다. 어떠한 제도가 고용형태 다변화를 포용하지 못하면, 고용형태별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검토결과 소득세 제도의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관련된 매출을 과세당국이 적절히 포착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경비율 제도 및 관련 관행에서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제도는 다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소득파악이 무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소득파악은 사실상 매출 파악이며, 실질적인 비용(경비) 측면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보다 보편화된 현 시점에서, 인적용역 사업매출에 대한 관대한 경비율이 적용되면 근로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회보험 제도의 경우, 다양한 취업형태를 포용하여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 유연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그러한 소득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높은 수준의 소득금액인 경

우에만 반영하고 있다.

지원제도의 경우, 취약한 인적용역 사업자에의 포착 수준 및 제도 간 관련 기준의 정합성 측면을 검토하였다.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의 경우, 인적용역 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가구단위로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에서는 지원대상 인적용역 사업자를 개인단위에서 판별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관련 재산 및 소득의 기준이 서로 상이한데, 관련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한편 본 연구는 실시간 소득과약 인프라 및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대상 고용보험의 도입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정태적 이중차이법을 적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 효과가 존재하지만, 동태적 이중차이법을 적용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정태적 이중차이법 분석결과에 따르면, 실시간 소득과약 인프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대상 고용보험으로 인한 소득신고 및 고용보험 가입에의 순응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정책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세당국은 인적용역 사업 소득자 관련 경비율 수준을 현실화하고, 인적용역형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업종코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보험공단의 보험료 적용·부과 행정은 과세당국의 과세자료(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기반하는 만큼, 과세당국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비율 조정이 갖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업종코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과세당국 자체적으로 업종코드를 판별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 중에서도 인적용역 사업자 성격이 강한 경우를 판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경우, 개인의 취업소득의 합산소득에 기반하여 사회보험료가 부과·징수되던 고용형태 다변화를 가장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자격기준을 없애는 것이 어렵다면,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보험료 부과대상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보험에서는 별도의 유형(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대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보험제도 중 가장 유연한 편이다. 그러나 상용직 일자리에의 복수 취업이 여전히 금지되어 있고,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인적용역 사업업종이 일부 업종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미 월별 기준의 취업소득 과세자료를 과세당국으로부터 협조받고 있으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고용보험 적용 업종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경우, 현행 부과체계 개편의 방향대로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하고, 자산기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제도의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를 배타적인 고용형태로 간주하기 보다는, 다른 유형의 소득(특히 근로소득)의 동반 발생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개인의 합산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과세자료를 통하여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발생이 다른 소득과 결부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즉, 부수입의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인적용역 사업자'라는 고용형태를 배타적으로 간주하고 과세 및 지원제도를 설계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 참고문헌

---

- 강신혁·김문정·안종석·홍민기, 『조세 및 사회보험제도가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 고용노동부 학술연구용역, 2021.
- 고용노동부,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 2021. 2.
- \_\_\_\_\_,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2022. 5.
- \_\_\_\_\_,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5호」, 2023. 6. 30.
-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2020. 5.
- \_\_\_\_\_,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2020. 7.
- \_\_\_\_\_,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20. 12.
- \_\_\_\_\_,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2021. 6.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김강호·양지운·전용석·서현주·김태환·조성은·황기돈·정홍준·전승환, 『특고 종사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방안』, 고용노동부 학술연구용역, 2021.
- 김남중·정래용,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2014, pp. 285~318.
- 김문정, 『소득기반 사회보험 관련 쟁점사항과 정책제안』, 고용노동부 소득기반 제도개선 TF 6차 회의 발표자료, 2023a.
- \_\_\_\_\_, 「고용형태 다변화와 사회보험 제도 변화의 필요성」, 『재정포럼』, 통권 제327호, 2023b, pp. 34~59.
- 김문정·안종석·정다운,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연구』,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2022.
- 김문정·최인혁, 『비공식 취업소득 추정과 조세재정 정책함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2.
- 심혜정, 「고용형태의 변화와 개인소득 과세체계: 현행 과세체계가 고용형태 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가?」,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3호, 2020, pp. 187~215.
- 안중석,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주요국 사례와 정책 이슈』, 「소득기반 사회보험 혁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2022.
- 여나금·성재민·김문정·최인혁·문석준·이재은, 『비정형근로자의 소득과약을 통한 보험료 부과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한국노동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 이다혜, 「근로자 개념의 재검토: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의 부상에 따른 ‘중속노동’의 재조명」, 『노동법연구』, 제49호, 2020, pp. 1~50.
- 이병희·강신욱·김문정·성재민·강희정·류재린·박종식·고창수·김혜원·이승호·오상봉·이다미·송창길·고숙자·여나금·이재은, 『소득기반 사회보험 혁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
- 이병희·김문정·오상봉·정영훈·성재민·이시균·박은정,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기반 고용보험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2.
- 정재연, 「인적용역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제23권 제6호 2022, pp. 91~112.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6~2022년 마이크로 데이터』.
- Goodman-Bacon, Andrew, “Difference-in-Differences with variation in treatment timing,” *Journal of Econometrics*, 225(2), 2021, pp. 254~277.

## 〈웹 페이지〉

- 『경향신문』, 「플랫폼 알고리즘은 알고 계신대, 누가 ‘말 잘 듣는’ 라이더인지…」,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1021511001#c2b>, 검색일자: 2023. 11. 15.
- 고용노동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보도자료, 2021. 6. 30.,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431](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431), 검색일자: 2023. 6. 30.
- \_\_\_\_\_,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보도자료, 2021. 12. 29.,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126](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126), 검색일자: 2023. 6. 30.
- \_\_\_\_\_,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4.5.~5.16.)」, 보도자료, 2022. 4. 5.,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397](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397), 검색일자: 2023. 6. 30.
- \_\_\_\_\_,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3.16.~4.25.)」, 보도자료, 2023. 3. 16.,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800](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800), 검색일자: 2023. 6. 30.
- \_\_\_\_\_, 「고시 제2023-25호」,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30602643&bbs\\_seq=20230601615&bbs\\_id=19](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30602643&bbs_seq=20230601615&bbs_id=19), 검색일자: 2023. 12. 28.
- \_\_\_\_\_,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추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보도자료, 2022. 3. 4.,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307](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307), 검색일자: 2023. 6. 30.
- \_\_\_\_\_,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 ‘25만명’ 가입」, 보도자료, 2022. 4. 15.,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432](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432), 검색일자: 2023. 10. 24.
- 국가법령센터, 「2022년 귀속 경비율 고시」, <https://law.go.kr/LSW/admRulLs>

- InfoP.do?admRulSeq=2100000221192, 검색일자 2023. 5. 31.
- \_\_\_\_\_,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D%8F%89%EC%83%9D%EC%A7%81%EC%97%85%EB%8A%A5%EB%A0%A5%EA%B0%9C%EB%B0%9C%EB%B2%95%EC%8B%9C%ED%96%89%EB%A0%B9>, 검색일자: 2024. 1. 10.
- \_\_\_\_\_,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https://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 검색일자: 2022. 10. 14.
- \_\_\_\_\_,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https://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26%EC%A1%B0>, 검색일자: 2022. 10. 14.
- \_\_\_\_\_,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9조, <https://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검색일자: 2022. 10. 14.
- \_\_\_\_\_,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https://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 검색일자: 2022. 10. 14.
- \_\_\_\_\_,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https://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127%ec%a1%b0>, 검색일자: 2022. 10. 14.
- \_\_\_\_\_,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 <https://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ec%8b%9c%ed%96%89%eb%a0%b9>, 검색일자: 2023. 10. 1.
- \_\_\_\_\_,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D%8F%89%EC%83%9D%EC%A7%81%EC%97%85%EB%8A%A5%EB%A0%A5%EA%B0%9C%EB%B0%9C%EB%B2%95%EC%8B%9C%ED%96%89%EB%A0%B9>

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8B%9C%ED%96%89%EB%A0%B9, 검색일자: 2024. 1. 10.

국민건강보험, 「4대 보험료 모의계산기」,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검색일자: 2023. 7. 17.

\_\_\_\_\_, 「고용보험료 계산기」, <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chek3.jsp>, 검색일자: 2023. 7. 17.

\_\_\_\_\_,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검색일자: 2023. 7. 17.

국세청, 「(고용보험 적용 관련) 사업자등록형 특고 신설 업종코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방법 안내」,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40312&nttSn=1306790>, 검색일자: 2023. 12. 1.

\_\_\_\_\_,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검색일자: 2023. 10. 23.

\_\_\_\_\_, 「간편장부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검색일자: 2022. 8. 3.

\_\_\_\_\_,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8909b9bd1bc44b054b8174f47755c949&mi=2233>, 검색일자: 2023. 10. 1.

\_\_\_\_\_, 『국세통계연보』,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검색일자: 2023. 12. 10.

\_\_\_\_\_, 「근로소득」,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5&cntntsId=7871>, 검색일자: 2023. 10. 8.

\_\_\_\_\_,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검색일자: 2023. 10. 23.

- \_\_\_\_\_,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검색일자: 2023. 6. 1.
- \_\_\_\_\_,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검색일자: 2023. 5. 30.
- \_\_\_\_\_, 「분야별 해석 책자(2019년 귀속 업종분류 코드 책자)」,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70&nttSn=74406>, 검색일자: 2022. 10. 15.
- \_\_\_\_\_, 「「실시간 소득파악」(RTI) 시행 1년, 복지세정의 한 축으로」, 보도 자료, 2022. 9. 2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검색일자: 2023. 10. 24.
- \_\_\_\_\_, 『2022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검색일자: 2023. 12. 20.
- 국세통계포털, 「14-2-17. 자영업자 유형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현황(총급여액 등)(1/2)(2021년 귀속년도)」,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2&sttsMtaInfrId=20211203N012022N8891>, 검색일자: 2023. 10. 23.
- \_\_\_\_\_, 「14-2-18. 업종별 조정률별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현황(총급여액 등)(1/2)(2021년 귀속년도)」,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3&sttsMtaInfrId=20230103N01202347753>, 검색일자: 2023. 10. 23.
- 근로복지공단,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https://www.comwel.or.kr/comwel/paym/spec/mean2.jsp>, 검색일자: 2023. 10. 25.
- \_\_\_\_\_,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 및 부과」, <https://www.comwel.or.kr/comwel/paym/spec/spec3.jsp>, 검색일자: 2023. 12. 17.
- \_\_\_\_\_, 「산재·고용보험 적용특례-정의 및 적용범위」, <https://www.comwel.or.kr/comwel/paym/spec/mean.jsp>, 검색일자: 2023. 12. 17.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http://ins>

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검색일자: 2023. 10. 23.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업근로자 추이 및 특징 분석」, 보도자료, 2022. 12. 20.,  
[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4809&category=ST](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4809&category=ST), 검색일자: 2023. 10. 13.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 및 모바일사용자 매뉴얼-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훈련 진단·상담, 온라인 수강신청」, [https://www.hrd.go.kr/images/HRD-Net\\_Menual.pdf](https://www.hrd.go.kr/images/HRD-Net_Menual.pdf), 검색일자: 2023. 10. 1.

취업이름-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검색일자: 2023. 10. 1.

\_\_\_\_\_, 「지원 대상」,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SporTrgt.do>,  
검색일자: 2023. 10. 1.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https://kostat.go.kr/statDesc.es?act=view&mid=a10501010000&str\\_cd=S003003](https://kostat.go.kr/statDesc.es?act=view&mid=a10501010000&str_cd=S003003), 검색일자: 2023. 12. 10.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https://keis.or.kr/user/extra/main/4081/publication/reportNewList/jsp/LayOutPage.do?categorySel=&checkAll=Y&checkSubject=Y&checkList=Y&checkContents=Y&checkWriter=Y&subjectSel=&sDate=&eDate=&realEDate=&targetSel=&kwd=%EA%B3%A0%EC%9A%A9%ED%96%89%EC%A0%95%ED%86%B5%EA%B3%84&xx=-1265&y=-543>, 검색일자: 2023. 6. 5.

# 부 록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기존 연구 표 인용

〈부표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주요 지원 정책(2020년 이후)

지원 정책	주요 내용
관계부처 합동 (202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특수형태근로 권리 강화</li> <l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조건의 공정성 강화</li> <l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li> <l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권 관련 해석기준 명확화</li> </ul>
관계부처 합동 (202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li> <li>- (고용보험)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li> <li>-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직종 확대(9→14개)</li> <li>* (現)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등 9개 직종 → (改)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인,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추가('20. 7.)</li> </ul>
관계부처 합동 (202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별 고용보험 확대 계획 수립</li> <li>• (1단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21. 7.~)</li> <li>-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에 대해 우선 검토</li> <li>• (2단계) 플랫폼종사자('22. 1.~)</li> <li>• (3단계) 기타 특수형태근로 및 플랫폼 직종('22. 7.~)</li> </ul>
고용노동부 (202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안정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70만명, 3,750억원(기수혜자 50만명, 신규 100만명)</li> <li>•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우선적용 직종 선정 등 하위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21년 7월 적용 준비 및 초기 가입 확대 노력</li> <li>•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특고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 필요·가능한 직종 지속 발굴 등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노력</li> <li>* ('20. 7.) 9→14개, ('21)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22) 마트·물류 유통기사, 간병인 등 검토</li> </ul>
관계부처 합동 (202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맞춘 고용서비스 체계 구축</li> <l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방안 마련</li> <li>- 연구용역 등을 통해 특고 직종별 수요·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21 下), 「특고 취업전담반」 운영 추진('22~)</li> </ul>

원자료: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2020. 5.;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2020. 7.;

관계부처 합동,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20. 12.;

고용노동부,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 2021. 2.;

관계부처 합동,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2021. 6.

자료: 김강호 외(2021), p. 61, 〈표 3-1〉

〈부표 2〉 요구조사 결과 종합 및 시사점

구분	주요 내용
직업 이력 및 현재 일자리 특징	• 대부분 임금근로 형태의 일자리 경험 존재
	• <b>(여성 중심 직종*)</b> 자유로운 시간 활용, 육아 및 가사병행 용이로 인해 입직 * 방과후강사,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여자품 점검원 • <b>(남성 중심 직종*)</b> 당장의 수입 필요 및 특별히 원하는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입직 *택배기사, 쿼서비스기사,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운전  <b>주요 입직 이유(직무 자율성, 임금 수입 필요) 수준에 따른 특고 직종 분포</b> 
	• <b>(전체)</b> 대부분 업종에서 업무시간 선택의 자율성 및 권한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단, <b>이직 목표 유형에 따라 차이</b> 존재 • <b>(동종 특고)</b> '자신의 적성, 흥미와의 일치'에서 상대적 만족도가 높음. • <b>(타종 특고)</b> '일의 자율성과 권한, 일하는 시간대 선택가능'에서 상대적 만족도가 높음 • <b>(임금근로 및 창업)</b>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작업환경의 안정성, 고용 안정성'에서 상대적 만족도가 낮음
• 대부분 지인의 소개, 인터넷 및 지면광고를 통해 정보 습득 → 취업 후, 기대와 다른 임금수준, 업무환경으로 인한 애로사항 발생(FGI 분석 결과)	
향후 재취업 계획	• 대부분 업종에서 70~90% 수준(동종 특고 포함) <b>특고 직종별 이직의향차 비율</b> 

〈부표 2〉의 계속

구분	주요 내용
이직목표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체)</b> 임금근로자로의 이직 의향 비율이 가장 높음(단, IT 분야는 동종 특고 비율이 가장 높음)</li> <li>• <b>(모빌리티 직종)</b>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고자 하는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li> <li>• <b>(모집원, 교육, 방문서비스 직종)</b> 코로나로 인한 대면활동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근로 및 창업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음(FGI 분석 결과)</li> <li>• <b>(기계·화물 직종)</b>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고자 하는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이직의향이 있더라도 동일 직종으로의 이직을 희망하는 사람 다수, 건설·기계 및 화물차 소유주의 경우, 기회비용으로 인해 타 직종 이직 의향이 낮은 편임(FGI 분석 결과)</li> <li>• <b>(IT 직종)</b> 동종 특고 직종으로 이직하고자 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성   업종의 경우, <b>‘특수형태근로업종의 경력’</b>을 활용한 유사업종 창업이나 별도의 사업소를 차리는 형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존재</li> <li>* 금융지식 및 IT분야 지식 등</li> </ul>
취업 지원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요구 전반)</b> 건강 및 금융 관련 지원, 일자리 정보에 대한 요구가 전반적으로 높음</li> <li>• <b>(동종 및 타종 특고)</b> 사업주와의 계약과 관련한 법률 정보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준계약서가 존재하는지, 자신의 업무를 위해 계약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다수 존재(FGI 분석 결과)</li> <li>• <b>(임금근로)</b> 일자리 정보 제공(관심 기업의 채용정보 포함)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음</li> <li>• <b>(창업)</b> 금융, 재무 관련 지식 및 마케팅, 홍보 관련 지식에 대한 요구가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업종에서 과반 이상이 공공기관(고용센터 등)과 온라인(웹사이트)을 통한 서비스 희망</li> <li>• 단, IT종사자는 공공기관보다 온라인을 통한 지원을 더 많이 희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별도의 일자리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포털 필요성 인식</li> <li>• 온라인 포털을 통한 서비스 요구는 일반적 서비스 요구와 동일(관련 일자리 정보, 계약 및 근로 관련 법률상식 또는 계약관련 문제발생 시 법률지원 등)</li> <li>• 온라인 포털을 통한 <b>경력증빙 요구</b> 존재, 특고→특고 이직 시 경력증빙이 중요하지만,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의견 존재(FGI 분석 결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영업자 속성이 있다는 측면에서의 <b>역량강화 교육(예: 영업역량)</b>, 특수형태근로 특성 이해를 기반한 <b>상담 지원</b>, 활용 가능한 제도의 <b>적극적 안내 및 홍보</b>에 대한 요구가 높음</li> </ul>

자료: 김강호 외(2021), p. xxxvii, 〈표 요약-3〉

## 2. 경제활동인구조사 미시자료에 기반한 정량분석

### 가. 분석 자료

〈부표 3〉 기초 통계량

(단위: 명, %, 시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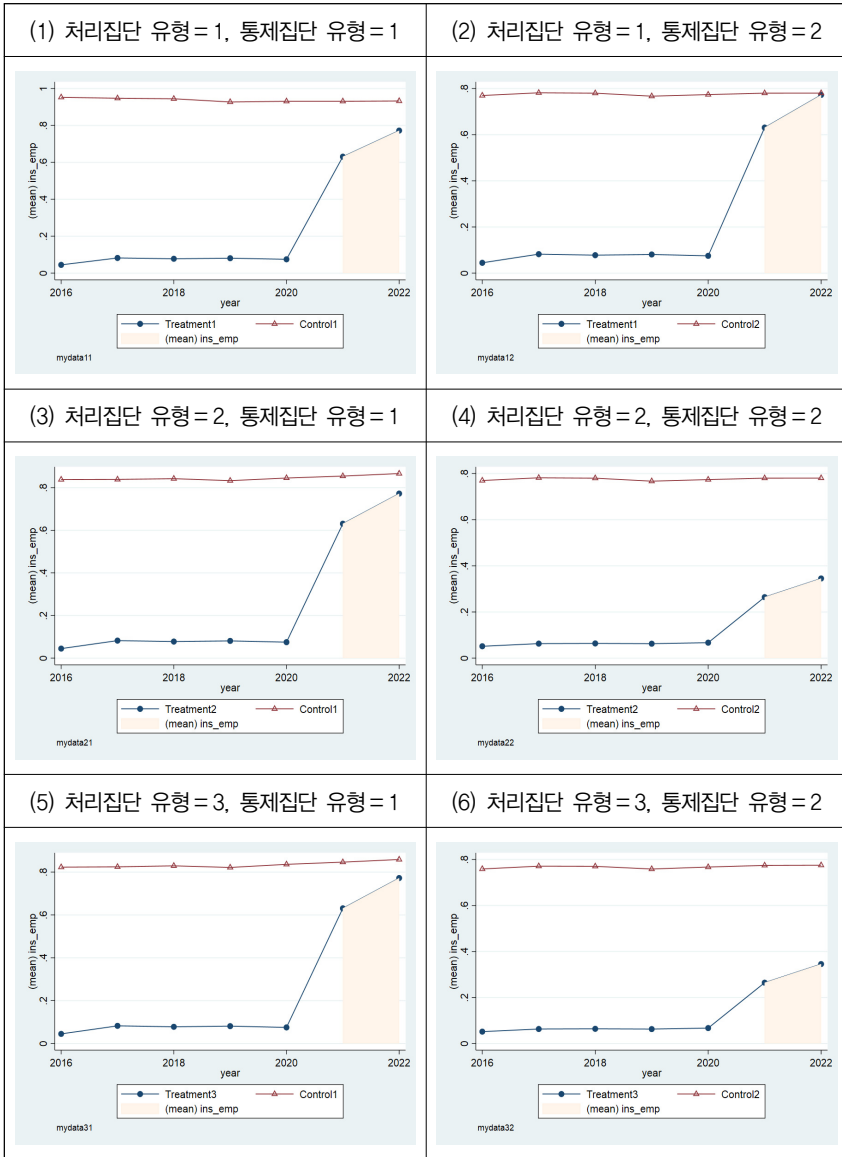
연도	종사상 지위	표본수	고용보험 가입률	주당 취업시간	월급여	종사자 규모 코드
2016	1 상용직	15,619	0.95	40.71	287.79	3.68
	2 임시직	6,723	0.29	36.18	132.50	2.29
	3 일용직	2,053	0.05	33.24	120.47	1.85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	2,082		49.30		1.35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6,252		43.55		1.00
	6 무급가족종사자	2,082		43.37		1.07
2022	1 상용직	17,327	0.93	38.06	329.54	3.59
	2 임시직	5,961	0.37	27.27	144.11	2.35
	3 일용직	1,428	0.14	29.92	171.45	1.85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	1,661		46.41		1.33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6,193		41.01		1.00
	6 무급가족종사자	1,749		40.79		1.04

- 주: 1.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값임. 가중치를 적용해도 통계량에 큰 변화가 없었음  
 2. 종사상 지위 4~6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이나 평균급여 변수가 존재하지 않았음  
 3. 종사자규모는 1:1~4명, 2:5~9명, 3:10~29명, 4:30~99명, 5:100~299명, 6:300인 이상 등으로 정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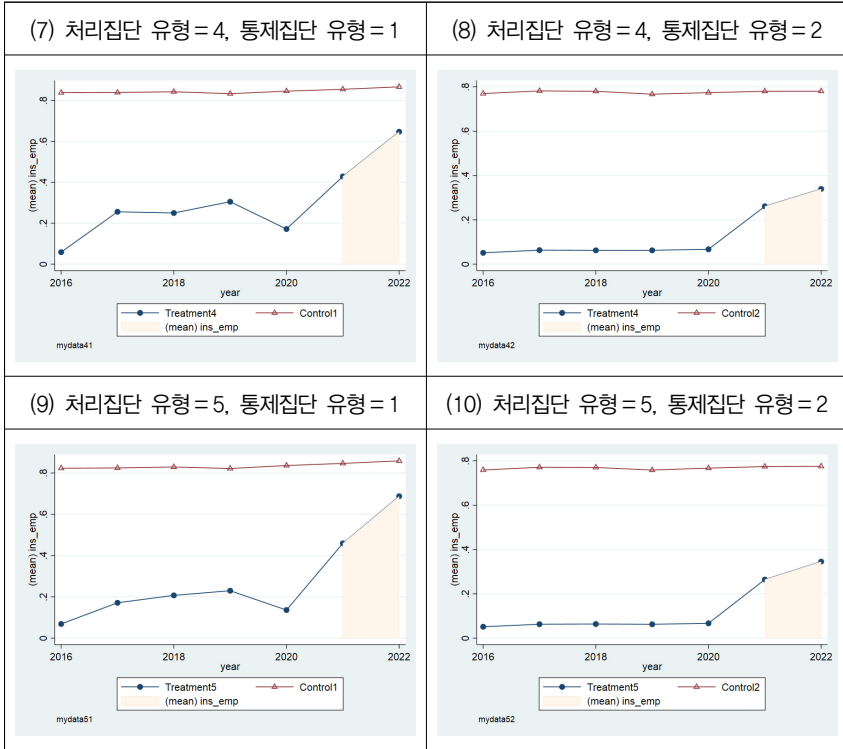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6~2022년 각 연도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부도 1] 처치 이전과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률의 집단별 비교

(단위: %)



[부도 1]의 계속



주: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유형별 고용보험 가입률의 2016~2022년 기간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종속변수가 1이면, 해당 집단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100% 가입된 것을, 종속변수가 0이면 고용보험에 0% 가입된 것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6~2022년 각 연도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부표 4〉 결과1: 통제집단 유형 = 1, 통제변수 유형 A

VARIABLES	(1)	(2)	(3)	(4)	(5)
	R11 ins_emp	R21 ins_emp	R31 ins_emp	R41 ins_emp	R51 ins_emp
treatP	0,641*** (0,00810)	0,252*** (0,00478)	0,232*** (0,00464)	0,0790*** (0,00536)	0,0817*** (0,00511)
Observations	107,560	119,848	121,858	115,539	117,746
R-squared	0,277	0,564	0,571	0,548	0,558
Hours	NO	NO	NO	NO	NO
INC	NO	NO	NO	NO	NO
INDcat	NO	NO	NO	NO	NO
JOBcat	NO	NO	NO	NO	NO
ESize	NO	NO	NO	NO	NO

- 주: 1.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를 제외하면서 총취업시간 변수가 존재하는 표본에 국한함  
 2.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함  
 3. 종속변수는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상정한 변수임  
 4. treatP는 2021년 이후를 나타내는 더미와 처리집단을 나타내는 더미의 교차항임.  
 5. treatP의 계수는 실시간 소득파악(전 국민 고용보험)의 정책효과로 해석될 수 있음  
 6. 모든 회귀식에서는 연도별 고정효과가 통제되었음  
 7. 추가적으로 고려한 잠재적 통제변수로는 주별근로시간(Hours), 최근 3개월 평균급여(INC), 10차 산업대분류(INDcat), 7차 직업대분류(JOBcat), 종사자규모(Esize) 등이 있음  
 8. R11, R21, R31, R41 등에서 앞의 숫자는 처리집단의 유형을, 후자는 통제집단의 유형을 나타내며,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음

처리집단유형	정의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근로자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근로자, "S" 산업의 임시직근로자
4	일용직근로자
5	일용직근로자, "S" 산업의 임시직근로자
통제집단유형	
1	상용직근로자
2	상용직근로자, "S" 산업 제외 나머지 임시직근로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6~2022년 각 연도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부표 5〉 결과1: 통제집단 유형 = 2, 통제변수 유형 A

VARIABLES	(1)	(2)	(3)	(4)	(5)
	R11 ins_emp	R21 ins_emp	R31 ins_emp	R41 ins_emp	R51 ins_emp
treatP	0,626*** (0,0136)	0,237*** (0,00757)	0,217*** (0,00725)	0,0449*** (0,00900)	0,0475*** (0,00840)
Observations	144,832	157,120	159,130	156,923	159,130
R-squared	0,061	0,204	0,213	0,168	0,179
Hours	NO	NO	NO	NO	NO
INC	NO	NO	NO	NO	NO
INDcat	NO	NO	NO	NO	NO
JOBcat	NO	NO	NO	NO	NO
ESize	NO	NO	NO	NO	NO

주: 표 주는 〈부표 4〉와 동일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6~2022년 각 연도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부표 6〉 결과1: 통제집단 유형 = 2, 통제변수 유형 B

VARIABLES	통제집단 유형 = 1				
	(1)	(2)	(3)	(4)	(5)
	R11 ins_emp	R21 ins_emp	R31 ins_emp	R41 ins_emp	R51 ins_emp
treatP	0,641*** (0,00810)	0,251*** (0,00478)	0,231*** (0,00464)	0,0790*** (0,00536)	0,0817*** (0,00511)
Observations	107,560	119,848	121,858	115,539	117,746
R-squared	0,277	0,565	0,571	0,548	0,558
Hours	YES	YES	YES	YES	YES
INC	NO	NO	NO	NO	NO
INDcat	NO	NO	NO	NO	NO
JOBcat	NO	NO	NO	NO	NO
ESize	NO	NO	NO	NO	NO
VARIABLES	통제집단 유형 = 2				
	(1)	(2)	(3)	(4)	(5)
	R11 ins_emp	R21 ins_emp	R31 ins_emp	R41 ins_emp	R51 ins_emp
treatP	0,615*** (0,0130)	0,222*** (0,00726)	0,206*** (0,00695)	0,0308*** (0,00865)	0,0392*** (0,00807)
Observations	144,832	157,120	159,130	156,923	159,130
R-squared	0,144	0,268	0,276	0,233	0,242
Hours	YES	YES	YES	YES	YES
INC	NO	NO	NO	NO	NO
INDcat	NO	NO	NO	NO	NO
JOBcat	NO	NO	NO	NO	NO
ESize	NO	NO	NO	NO	NO

주: 표 주는 〈부표 4〉와 동일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6~2022년 각 연도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부표 7〉 결과1: 통제집단 유형 = 2, 통제변수 유형 C

VARIABLES	통제집단 유형 = 1				
	(1)	(2)	(3)	(4)	(5)
	R11 ins_emp	R21 ins_emp	R31 ins_emp	R41 ins_emp	R51 ins_emp
treatP	0,641*** (0,00808)	0,251*** (0,00476)	0,231*** (0,00462)	0,0783*** (0,00534)	0,0812*** (0,00508)
Observations	107,560	119,848	121,858	115,539	117,746
R-squared	0,283	0,568	0,575	0,551	0,562
Hours	YES	YES	YES	YES	YES
INC	YES	YES	YES	YES	YES
INDcat	NO	NO	NO	NO	NO
JOBcat	NO	NO	NO	NO	NO
ESize	NO	NO	NO	NO	NO
VARIABLES	통제집단 유형 = 2				
	(1)	(2)	(3)	(4)	(5)
	R11 ins_emp	R21 ins_emp	R31 ins_emp	R41 ins_emp	R51 ins_emp
treatP	0,620*** (0,0123)	0,219*** (0,00690)	0,204*** (0,00661)	0,0282*** (0,00823)	0,0371*** (0,00769)
Observations	144,832	157,120	159,130	156,923	159,130
R-squared	0,228	0,338	0,344	0,305	0,313
Hours	YES	YES	YES	YES	YES
INC	YES	YES	YES	YES	YES
INDcat	NO	NO	NO	NO	NO
JOBcat	NO	NO	NO	NO	NO
ESize	NO	NO	NO	NO	NO

주: 표 주는 〈부표 4〉와 동일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6~2022년 각 연도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부표 8〉 결과1: 통제집단 유형 = 2, 통제변수 유형 D

VARIABLES	통제집단 유형 = 1				
	(1)	(2)	(3)	(4)	(5)
	R11 ins_emp	R21 ins_emp	R31 ins_emp	R41 ins_emp	R51 ins_emp
treatP	0,645*** (0,00780)	0,247*** (0,00461)	0,226*** (0,00449)	0,0771*** (0,00517)	0,0790*** (0,00494)
Observations	107,560	119,848	121,858	115,539	117,746
R-squared	0,333	0,596	0,600	0,581	0,587
Hours	YES	YES	YES	YES	YES
INC	YES	YES	YES	YES	YES
INDcat	YES	YES	YES	YES	YES
JOBcat	YES	YES	YES	YES	YES
ESize	YES	YES	YES	YES	YES
VARIABLES	통제집단 유형 = 2				
	(1)	(2)	(3)	(4)	(5)
	R11 ins_emp	R21 ins_emp	R31 ins_emp	R41 ins_emp	R51 ins_emp
treatP	0,625*** (0,0113)	0,214*** (0,00637)	0,198*** (0,00611)	0,0257*** (0,00756)	0,0338*** (0,00707)
Observations	144,832	157,120	159,130	156,923	159,130
R-squared	0,356	0,437	0,441	0,414	0,419
Hours	YES	YES	YES	YES	YES
INC	YES	YES	YES	YES	YES
INDcat	YES	YES	YES	YES	YES
JOBcat	YES	YES	YES	YES	YES
ESize	YES	YES	YES	YES	YES

주: 표 주는 〈부표 4〉와 동일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6~2022년 각 연도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3. 노무제공자 경비 설문조사

#### 노무제공자 경비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노무제공자의 경비 유형과 규모 등을 파악하여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될 예정입니다. 본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 자료로 이용되오니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 연구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조사기관 : (주)엠브레인퍼블릭

QA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남성      ② 여성

QA2. 귀하의 **출생년월**은 어떻게 되십니까?

(            )년 (            )월 [PROG: 만 2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조사 중단]

QA3.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1개 선택]

- |         |           |         |
|---------|-----------|---------|
| ① 서울특별시 | ② 부산광역시   | ③ 대구광역시 |
| ④ 인천광역시 | ⑤ 광주광역시   | ⑥ 대전광역시 |
| ⑦ 울산광역시 | ⑧ 세종특별자치시 | ⑨ 경기도   |
| ⑩ 강원도   | ⑪ 충청북도    | ⑫ 충청남도  |
| ⑬ 전라북도  | ⑭ 전라남도    | ⑮ 경상북도  |
| ⑯ 경상남도  | ⑰ 제주특별자치도 |         |

#### ◆ 노무제공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

◆ 본 설문에서 노무제공자는 배달/택배/퀵서비스 업종의 노무제공자를 의미합니다.

QA4. 귀하께서는 노무제공자(배달/택배/퀵서비스) 업무를 위해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1개 선택]

- ① 예 [PROG: 조사 중단]                      ② 아니오

QA5. 귀하께서는 노무제공자(배달/택배/퀵서비스) 업무를 위해 업무장소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계십니까? [1개 선택]

- ① 예 [PROG: 조사 중단]                      ② 아니오

QA6. 귀하께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노무제공자(배달/택배/퀵서비스)로 3개월 이상 종사하고 계십니까? [1개 선택]

- ① 예                      ② 아니오 [PROG: 조사 중단]

QA7. 귀하께서 2023년 10월 기준 노무제공(배달/택배/퀵서비스)하시는 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십니까? [1개 선택]

- ① 예                      ② 아니오 [PROG: 조사 중단]

QA8. 2023년 노무제공자(배달/택배/퀵서비스) 업무에 대한 주당 업무일수 및 일평균 업무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주 ( [RANGE: 1~7] )일 일 ( [RANGE: 1~24] )시간

QA9. 귀하께서는 노무제공자(배달/택배/퀵서비스) 업무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하셨습니까? [1개 선택]

- ① 예                      ② 아니오

#### <현재 노무제공 활동 경제상황>

※ 다음에서는 귀하의 노무제공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B1. 귀하는 2023년 10월 기준 노무제공과 관련된 업종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모두 선택]

- ① 택배기사                      ② 퀵서비스 기사  
③ 플랫폼 라이더                      ④ 기타(                      )



[PROG: QB4 ① 응답자만]

QB4-1. 2023년 10월 기준 귀하는 어떤 분야의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택배 플랫폼(쿠팡플렉스 등) [PROG: Q4-1-1로 이동]
- ② 퀵서비스 플랫폼(고고엑스 등) [PROG: Q4-1-2로 이동]
- ③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등) [PROG: Q4-1-3로 이동]

[PROG: QB4-1 ① 응답자만]

QB4-1-1. 2023년 10월 기준 다음 중 택배서비스 제공시 주로 사용하시는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쿠팡플렉스      2) 비박스      3) 운수대통      4) 기타(    )

[PROG: QB4-1 ② 응답자만]

QB4-1-2. 2023년 10월 기준 다음 중 퀵서비스 제공시 주로 사용하시는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고고엑스                      2) 로지                      3) 리드콜
- 4) 바로고                      5) 베스트콜              6) 보르조
- 7) 빠름                      8) 생각대로              9) 손자
- 10) 알고퀵                      11) 인성1                      12) 인성2
- 13) 인성데이터              14) 카카오                      15) 카카오티픽커
- 16) 퀵커스                      17) 퀵톡                      18) 토스퀵
- 19) 통합콜                      20) 티맵                      21) 핑퐁
- 22) 기타(                      )

[PROG: QB4-1 ③ 응답자만]

QB4-1-3. 2023년 10월 기준 다음 중 배달서비스 제공시 주로 사용하시는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공유다                      2) 국민라이더스              3) 김집사
- 4) 나눔콜                      5) 남남박스                      6) 달리고
- 7) 도보60                      8) 딜버                      9) 따봉콜
- 10) 땡동                      11) 런투유                      12) 리드콜
- 13) 만나플러스(런, 이어드림 공유다, 날라가, 로드파일럿, 체트콜, 윈윈파트너)
- 14) 모아콜                      15) 바로고                      16) 배달시대
- 17) 배달캠프                      18) 배달히어로              19) 배민라이더스
- 20) 배민커넥트              21) 베테랑                      22) 부릉(메쉬코리아)
- 23) 비온드달리버리              24) 생각대로(로지울)              25) 영웅배송스파이더

- 26) 오늘의픽업                      27) 요기요                      28) 우리동네딜리버리우친  
 29) 우버잇츠                      30) 제트콜                      31) 쿠팡이츠  
 32) 한국배달대행연합(슈퍼히어로, 예스런, 배달의전설, 런투유, 딜리온, 순간이동, 푸드딜리버리코리아)  
 33) 기타(                      )

[PROG: QB4 ① 응답자만]

QB4-2. 2023년 10월 기준 주로 활용하시는 플랫폼(QB4-1-1~QB4-1-3 응답값)의 경우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① 비용 없다 [PROG: QB4-3으로 이동]                      ② 비용 있다

[PROG: QB4-2 ② 응답자만]

QB4-2-1. 2023년 10월 기준 주로 활용하시는 플랫폼(QB4-1-1~QB4-1-3 응답값)에 지불한 비용 유형을 다음 중에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모두 선택]

- ① 가입비                      ② 서비스 건당 수수료  
 ③ 정보 열람비                      ④ 기타 비용(                      )

[PROG: QB4 ① 응답자만]

QB4-3. 2023년 10월 기준 귀하가 현재 활용하시는 ‘모든’ 플랫폼(앱, 웹)에 지불하시는 비용은 월평균 어느 정도이십니까?  
 \_\_\_\_\_ 만원

QB5. 2023년 10월 기준 월평균 기준 귀하의 소득을 유형별로 말씀해주십시오. (세전 기준 개인의 월평균 소득)

구분	해당 여부	금액
노무제공과 관련된 소득 (매출에서 비용을 제한 값)	-	(                      )만원
상용직, 일용직, 임시직 등 임금근로와 관련된 소득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만원
기타 나머지 소득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만원
합계	-	합계 자동계산

[PROG: ‘노무제공과 관련된 소득’ 0 응답 불가]

QB6. 2023년 10월 기준 귀하의 건강보험 가입자격은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 ① 피부양자    ② 직장가입자    ③ 지역가입자

QB7. 2023년 10월 기준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자격은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 ① 임금근로자, 노무제공자 동시 가입    ② 임금근로자 단독 가입  
 ③ 노무제공자 단독 가입    ④ 자영업자 가입  
 ⑤ 가입되어 있지 않음

[PROG: ①~④ 응답 시 QB8로 이동]

[PROG: QB7 ⑤ 응답자만]

QB7-1. 2023년 10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② 고용보험 제도를 잘 모른다  
 ③ 비용이 많이 든다    ④ 사업주의 요청사항이다  
 ⑤ 기타(            )

QB8. 2023년 10월 기준 귀하의 산재보험 가입자격은 어떻게 되십니까? [모두 선택]

- ① 임금근로자    ② 자영업자(사업주)  
 ③ 노무제공자    ④ 산재보험 미가입

[PROG: ①~③ 응답 시 QC1로 이동]

[PROG: QB8 ④ 응답자만]

QB8-1. 2023년 10월 기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산재보험 가입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② 산재보험 제도를 잘 모른다  
 ③ 비용이 많이 든다    ④ 사업주의 요청사항이다  
 ⑤ 기타(            )

〈노무제공 비용사항〉

QC1. 2023년 10월 기준 노무제공자(배달/택배/퀵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항목	금액
총 수입(매출) 금액 [PROG: 0원 응답 불가] ※ 총 수입 금액은 매출액(계약 업체와 맺은 계약 금액) 등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이며, 주유비, 인건비 등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 )원
총 비용 금액		합계 자동계산
<b>유형1. 사회보험료</b>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 )원
	국민연금 납부 금액	( )원
	고용보험 납부 금액(노무제공자 고용보험)	( )원
	산재보험 납부 금액(노무제공자 산재보험)	( )원
<b>유형2. 이동 관련</b>		
	업무 관련 자산 구입 비용 (휴대폰, 오토바이 등의 구입 비용)	( )원
	업무용 이동수단 유지비 (일반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 포함; 보험료, 주유비, 수리비, 통행료 등)	( )원
<b>유형3. 플랫폼 관련 (사용하시는 모든 플랫폼 관련)</b>		
	가입비(월 기준)	( )원
	건당 수수료(월 기준)	( )원
	정보열람비	( )원
	기타( )	( )원
<b>유형4. 교육, 훈련비</b>		
	교육훈련비 (정기적, 비정기적 훈련비용)	( )원
<b>유형5. 기타</b>		
	도서구입 및 인쇄비	( )원
	광고선전비(판촉물 제작, 오프라인, 온라인 광고 마케팅)	( )원
	의상비(프리랜서 아나운서 등 방송 출연시 착용한 의상)	( )원
	접대비(업무관련된 지출)	( )원
	경조사비	( )원
	대출이자(노무제공과 관련된 대출 이자비용)	( )원
	기타(기타 항목 구체적으로 응답: )	( )원

QC2. '연간 기준' 노무제공자(배달/택배/퀵서비스) 업무에 대한 총수입 금액과 총 비용의 비중을 연도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 해당 연도에 노무제공자(배달/택배/퀵서비스)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없음' 체크, 수입 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0원'을 입력해 주십시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수입(매출) 금액	( )만원	( )만원	( )만원
수입 대비 비용의 비중(%)	( )%	( )%	( )%
-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조세제도에 대한 인지도>

QD1. 귀하께서는 **경비율제도(매출 대비 경비의 비중을 추정하는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개 선택]

- ① 전혀 알지 못한다
- ②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
- ③ 잘 알고 있다

QD2. 만일 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하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전체 수입(매출액) 대비 비용을 추정한다면, **전체수입(매출액) 대비 비용 추정 비율**은 어떠한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PROG: 응답 범위 1~99]

QD3. 만일 국세청에서 귀하가 속한 노무제공 업종에서 일정 유형의 경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준다면, **다음 항목의 경비인정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별 1개 선택]

구분	필요성 매우 낮다	필요성 낮다	필요성 보통	필요성 높다	필요성 매우 높다
1) 업무 공간 대여(임대료)	①	②	③	④	⑤
2) 인건비	①	②	③	④	⑤
3) 매입비(물품 구매비)	①	②	③	④	⑤
4) 플랫폼 수수료	①	②	③	④	⑤
5) 교통수단 관련 보험비용	①	②	③	④	⑤
6) 유류비용	①	②	③	④	⑤

QD4. 귀하께서는 **노무제공과 관련한 소득이 세법상 어떠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근로소득      ② 사업소득
- ③ 기타소득      ④ 이자소득 혹은 배당소득



QD8. 귀하의 **학력 이수상태**는 어떠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재학중      ② 휴학      ③ 졸업

QD9. **2023년 10월 기준 (생계를 같이하는) 귀댁 가구의 가구원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귀하 포함) \_\_\_\_\_ 인

QD10. **2023년 10월 기준 귀댁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합계, 세전기준)**은 얼마입니까? [1개 선택]

※ **개인 소득이 아닌 가구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⑧ 700~800만원 미만      ⑨ 800~900만원 미만  
⑩ 900~1,000만원 미만      ⑪ 1,000~1,100만원 미만  
⑫ 1,100~1,200만원 미만      ⑬ 1,200~1,300만원 미만  
⑭ 1,300~1,400만원 미만      ⑮ 1,400~1,500만원 미만  
⑯ 1,500만원 이상

〈부표 9〉

업종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 경비율 (일반율)	단순 경비율 (초과율)	기준 경비율 (일반율)
602110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통학버스(「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및 제52조에 해당하는 것)를 이용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교육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운송하는 산업활동</li> <li>* 운전기사가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구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940928)</li> </ul>	85.6	0.0	14.0
602314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컨테이너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의 수출입을 위하여 화주와 항만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산업활동</li> </ul> </li> <li>○ 시멘트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멘트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시멘트를 운송하는 산업활동</li> </ul> </li> <li>○ 철강재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강재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철강재를 운송하는 산업활동</li> </ul> </li> <li>○ 위험물질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탱크로리 등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류가스, 유해화학물질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산업활동</li> </ul> </li> <li>○ 택배지·간선택배 화물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물류센터 간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li> </ul> </li> <li>○ 자동차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자동차사용자가 원하는 장소 등에 자동차를 운송하는 산업활동</li> </ul> </li> <li>○ 곡물가루, 곡물사료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거래처 등으로 밀가루 등 곡물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산업활동</li> </ul> </li> </ul>	90.8	0.0	24.7

〈부표 9〉의 계속

업종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 경비율 (일반율)	단순 경비율 (초과율)	기준 경비율 (일반율)
602315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전제품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등 가전제품을 소비자의 가정 또는 사무실 등에 운송하는 산업활동(운송물품을 설치하는 업무가 결합되어 수행될수 있음)</li> </ul> </li> </ul>	91.6	0.0	24.2
602316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통물류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자·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의 사업주·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산업활동</li> <li>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자·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식당으로 배송하는 산업활동</li> </ul> </li> </ul>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통산업 내 물류 운송(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에 운송,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대형 마트, 편의점 등에 운송 등)</li> </ul> <p>〈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화물 택배 서비스(630901) 및 늘찬배달업(630904)</li> </ul>	91.1	0.0	23.9

주: 각 업종의 대분류는 '운수 및 창고업'이고, 중분류는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 해당함

자료: (국세청, 「(고용보험 적용 관련) 사업자등록형 특고 산설 업종코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방법 안내」, <https://www.nts.go.kr/nts/na/nt/selectNtlInfo.do?mi=40312&ntSn=1306790>, 검색일자: 2023. 12. 1.

##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및 지원에 대한 연구

---

김문정·정다운

고용보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괄하여 노무제공자로 정의하고 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세법상 노무제공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근로자와 자영자 중간에 위치한 취업형태에 놓여있다. 취업 이후 정년이 보장되는 평생일자리 감소, 온디맨드(on-demand) 플랫폼 경제 활성화 등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전보다 흔해졌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전통적인 전일제·상용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과세 및 지원제도에 도전과제를 안긴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향후 정책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세당국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관련 경비율 수준을 현실화하고, 인적용역형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업종코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보험제도 관련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보험료 부과 대상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미 월별 기준의 취업소득 과세자료를 과세당국으로부터 협조받고 있으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경우, 현행 부과체계 개편의 방향대로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지원제

도의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를 배타적인 고용형태로 간주하기보다는, 다른 유형의 소득(특히 근로소득)의 동반 발생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개인의 합산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Research on the Taxation and Support System for Non-Typical Workers

---

Moon Jung Kim and Dawoon Jung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defines ‘workers’ as a comprehensive concept referring to special-type workers, freelancers, or platform workers. Personal Service Income (PSI, hereafter) Providers, in Tax Acts, correspond to workers in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PSI Providers are generally situated between wage and salary employees and entrepreneurs. The decline of lifetime jobs with guaranteed retirement ages and the rise of on-demand platforms have led to an increase in the prevalence of PSI. This change in the labor market poses challenges to the government’s taxation and support systems, which are usually designed to target typical workers such as full-time wage and salary employees. In this policy report, we review current policies and institutions and provide policy suggestions. A summary of the policy suggestions is given as follows. First, tax authorities need to reform the current expense rate systems applied to PSI providers and enforce the reporting of sectors in the detailed statement of the disbursement of income of others. Policy suggestions for social insurance are as follows. For the national pension, PSI should be included in the target income to

which national pension premiums are imposed for wage and salary employees. For 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should be imposed on the individual-level sum of all types of work-related incomes. In the cas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uthorities should narrow down the scope of 'dependents' and reduce the heterogeneity in the way of premium imposition between wage and salary employees and others. Finally, in the case of support systems, if the government desires to support disadvantaged PSI Providers, the means-tested policy should be based on the summed incomes of the PSI providers rather than the PSI itself.

## 저자약력

### 김문정

고려대학교 영문학, 경제학 학사  
미국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정다운

서강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재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3-01

##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및 지원에 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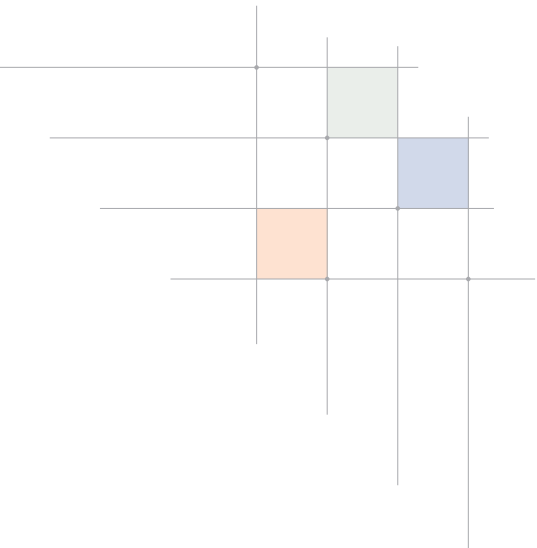
---

발행	행	2023년 12월 29일
저자	자	김문정·정다운
발행인	인	김재진
발행처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지	www.kipf.re.kr
등록	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가	가	24,000원
조판 및 인쇄	쇄	고려씨엔피
I S B N		979-11-6655-242-7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http://www.kipf.re.kr)



9 791166 552427 93320  
ISBN 979-11-6655-242-7